

北韓의 人權實態 研究

1993. 10.

全賢俊 (北韓研究室 研究委員)

民族統一研究院

- 이 報告書는 民族統一研究院의 研究計劃에 依據한 自體 研究 結果임.
- 收錄된 內容은 統一問題研究 및 政策開發의 參考資料로 提供되는 것으로 刊行處의 意見을 반드시 反映하는 것은 아님.

民族統一研究院 北韓研究室

要 約

第 I 章 序 論

본 연구의 목적은 첫째, 동구 사회주의 국가들의 변화와 관련하여 이들 국가에서 인권운동이 가능했던 이유는 무엇이었으며 서구 국가들이 동구의 인권개선을 위해 어떤 방안을 강구했는가를 고찰하고 인권운동이 구소련 및 동구 사회주의의 변화에 미친 영향을 분석한다. 둘째, 북한 인권문제와 관련하여 북한이 현재와 같은 인권 통제정책을 실시한 배경이 무엇인가를 분석하며 셋째, 인권통제 정책이 북한내 법·정치·경제·사회 등 제분야에 어떤 실태로 구현되어 있는가를 고찰한 후 넷째, 인권운동 활성화가 북한체제의 변화에 어떤 영향을 미칠 것인가를 전망해 보는데 있다.

한편 본 연구에서 사용하는 인권개념은 첫째, 인권은 개인으로서의 인간에게 최고가치를 부여하는 개인주의적 가치관을 그 전제로 한다. 둘째, 인권은 그 권리가 국가에 의해 창설된 것이 아니라 국가라 할지라도 그 본질적 내용을 침해하지 못한다는 의미를 갖는다. 셋째, 이와 관련하여 내포는 정치적 자유와 경제적 평등이지만 정치적 자유가 우선시 되어야 한다는 점 등이다.

第 II 章 舊蘇聯 및 東歐 社會主義 體制와 人權問題

1. 社會主義의 人權 概念

사회주의 국가들은 자유주의 국가들과는 달리 집단주의 정신과 국가권리 및 집단적 경제평등이 인권의 주요 내용이 되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2. 社會主義 國家의 人權統制 實相

가. 舊蘇聯의 人權問題

구소련의 정치체제는 서구의 개방적 체제와는 달리 다양한 정치적 규범과 가치의 공존이나, 이견과 반대의 자유로운 표출을 허용하지 않는 전체주의 체제였다. 레닌은 사회혁명당과 멘세비키의 강한 반대에도 불구하고 전시공산주의 정책을 채택하여 식량을 강제 매입하고 이에 반항하는 자들에 대해서는 ‘인민의 적’으로 간주하여 혁명법정에 세웠다. 이로 인해 1921~1922년 사이 기아로 인해 300만명이 죽고 600만명이 기아로 인한 질병으로 사망하였다.

한편 스탈린은 스탈린주의로 철저히 무장한 당을 이용, 그의 1인독재체제와 공포정치를 합리화시켰다. 비밀경찰을 조직하여 감

시와 동원을 제도화하고 정보를 독점하면서 시작된 스탈린의 공포 정치는 테러와 숙청의 연속이었다. 이 기간에 있었던 정치적 항거 결과 2천만명이 생명을 잃었고, 1953년 스탈린이 사망하였을 때 1천5백만명의 소련시민이 여전히 투옥되어 있었다고 한다. 1953년 스탈린 사후 해빙과 함께 인권운동이 활성화 되었다. 특히 이 시기는 흐루시초프에 의한 스탈린비난이 전개되고 있었기 때문에 정치권력의 독재화와 1인전제에 대한 비난 등이 자유화운동을 자극 하였으며 이것은 동구의 폴란드, 헝가리 등에서 일어난 자유화운동의 기폭제가 되었다.

나. 東歐 社會主義 國家들의 人權問題

제2차 세계대전 후 대부분의 동구 제국은 소비에트화 과정을 통해 구소련의 위성국이 되었다. 그러나 동구 제국은 스탈린식 통치 방식에 대해 1953년 스탈린의 사망과 함께 반성하고 비판하는 민족주의적 징조를 보이기 시작하였다. 스탈린 사후 동독에서의 대규모 유혈사태와 유고슬라비아에서의 집단농장화 포기 및 동구 여러국가에서의 소련어 교육개편 등은 동구 제국들이 각기 자기 나라의 조건에 알맞는 체제로의 전환을 시도하고 있었던 증거였다.

동구 제국의 정부들은 구소련군의 힘을 업고 인권운동 주창자들에게 대한 탄압을 계속하였지만 한편으로는 부분적이긴 하였지만 정치적·경제적 제도개선을 병행하였다.

3. 社會主義 國家에서의 人權運動

구소련, 헝가리·폴란드·체코슬로바키아·동독 등 동구 사회주의 국가에서는 억압기구를 통한 철저한 탄압에도 불구하고 인권운동은 계속되었다. 이처럼 인권운동이 가능했던 이유는 정치문화적 전통, 민족주의적 특성, 리더쉽의 성격, 지정학적 위치 등이었다.

4. 「헬싱키協定」과 人權運動의 伸張

1954년 이후 구소련에 의해 추진되어 왔던 CSCE(유럽안보협력회의)는 1972년 9월부터 3년간의 협상 결과 1975년 8월 1일 4개 「Baskets」에 걸친 소위 「헬싱키협정」(Helsinki Accord) 도출에 성공하였다. 이 선언 중 제1바스켓의 7항은 사상, 양심, 종교, 신념의 자유를 포함한 기본적 자유와 인권의 존중이었고, 제3바스켓은 「인도 및 기타분야에 관한 협력」이었다.

결국 1975년 서명된 「헬싱키협정」은 참가국간 자유로운 통신 및 사람들의 이동, 인권추구, 그리고 안보측면에서의 동서블럭간 경쟁완화, 신뢰구축 틀을 마련하는데 이바지해 왔다고 할 수 있다.

第 Ⅲ 章 北韓體制의 特性과 人權統制

1. 首領論的 唯一支配體制

주체사상은 사람중에서도 부르조아를 제외한 근로인민대중만을 세계의 주인으로 한정하고 있고 나아가 진정한 주인은 '수령의 교시'를 충실히 이행하는 근로인민대중 뿐이라고 규정함으로써 수령론을 그 기본핵심으로 귀결시키고 있다. 즉 주체사상은 세계의 주인인 주체적 인간을 통해 공산사회를 건설하겠다는 의도와는 달리 김일성만을 '유일신'으로 숭배하도록 함으로써 북한인민들의 인권을 최악의 상태로 만드는 이론적 기반이 되고 있다.

2. 리더쉽의 性格

북한 정치체제의 특징인 수령론적 유일지배체제는 김일성·김정일이라는 자연인과 밀접한 관계에 있다고 할 수 있다. 김일성은 타고난 권력지향적 성격의 소유자로서 항일빨치산 운동을 통해 목적을 위해서는 몰인간적 수단도 동원해야 한다는 논리를 터득하였다. 따라서 그는 반대자들을 비인간적으로 숙청하였고 인민들까지 맹종적인 인간으로 변화시키고 있다.

김정일 또한 후천적이긴 하지만 김일성처럼 「전부 아니면 전무」식의 좌편향적 업무행태를 취함으로써 반대자에 대한 인권을 무시

하여 왔다.

3. 家父長制的 政治文化

유교적 정치문화는 상하간 의리와 위계질서의 중시, 관존민비사상, 순종의 미화, 국가와 지도자의 동일시, 가족주의의 중시, 사대주의 등을 특징으로 한다. 이러한 정치문화적 속성은 김일성에 의해 프롤레타리아 독재론과 접목되었다. 김일성은 가정의 부모를 상징하는 아버지 용어를 원용하여 그를 ‘국가의 아버지’로 섬기도록 하였다. 즉 그는 자식이 부모에게 절대복종해야 하는 것처럼 ‘국가의 아버지’인 자신에게도 절대복종하도록 의식화하고 있다.

또한 김일성은 가부장적 정치문화를 이용하여 세습까지 정당화하고 있다. 그는 조선조 사대부들의 지배윤리였던 ‘의리’를 매우 중시하고 있고 ‘사회주의 대가정’론을 주장하여 국가를 하나의 대가정으로 규정하고 있다. 이것은 가장인 김일성이 장남인 김정일에게 가업을 물려주는 것은 당연한 것으로 합리화하는 기제로 사용되어지고 있다.

4. 分斷構造

북한은 자본주의 체제인 남한과 경쟁하여 사회주의 체제 우월성을 입증함으로써 한반도내의 정통성을 획득하려고 노력해 왔다. 따라서 대남 군사·경제·외교적 우위의 확보는 김일성 정권의 최대

현안이었다. 김일성은 인민들에게 남한과의 경쟁에서 ‘완전’ 승리할 때까지 정치적 부자유와 경제적 궁핍을 인내하도록 강요하였다.

第Ⅳ章 北韓人權統制의 實相

1. 法的 統制와 抑壓機構의 發達

가. 社會主義 國家에서의 法機能

사회주의 헌법기능은 형식적 기능과 실제적 기능으로 구분해 볼 수 있는 바, 형식적 기능은 국가권력의 조직, 개인의 법적 지위 규정, 사회생활에서의 정치적·도덕적 가치 확립 등 세가지를 들 수 있고, 실제적 기능은 이데올로기 선전, 규범질서유지 등이 있다.

나. 北韓法の 非人道性

북한의 법체제는 「김일성교시」를 최고 상위규범으로 하고 다음으로 「노동당의 결정」이 있으며 헌법은 노동당 결정보다 하위규범으로 되어 있다고 할 수 있다. 이러한 이유로 북한 형법 등 일반 법률은 물론 헌법까지도 프롤레타리아 독재체제 나아가 김일성 1인독재체제 유지를 위한 도구에 지나지 않는다고 볼 수 있다. 특

히 북한 형법은 사회주의 제도를 부정하는 '계급적 원썩'들에 대해서는 무자비한 탄압을 실시하고 김일성 부자의 권위와 위신을 훼손하는 행위는 사소한 요소에 대해서도 가장 단호한 징벌을 가하여야 함을 강조하고 있다.

다. 抑壓的 黨機構와 國家機關

(1) 黨機構

당기구중 당간부와 당원들을 감시·통제하는 기구는 당비서국 조직지도부이다. 즉 조직지도부는 김정일의 직접 관장하에 관료들에 대한 물리적 감시와 통제 및 「비준제도」에 의한 인사관리를 통해 충성과 효성을 도출시키는 역할을 한다. 이렇게 충원된 관료들은 인민들의 인권탄압 전위대가 되고 있다.

(2) 國家保衛部

국가보위부는 반당, 반체제음모자 색출, 검거 및 특정지역내에 잠입한 간첩의 색출과 간부들과 인민들의 동태감시, 국내외 정보 수집·분석, 남한정보수집·분석, 국경경비와 치외법권 지역 감찰, 정치범 동태과악 등을 통해 체제유지를 그 주요임무로 하고 있다.

(3) 社會安全部

사회안전부의 주요임무는 프롤레타리아독재를 강화하고 사회건설에 방해가 되는 일체의 반체제적 요소를 적발·제거하고 전인민

을 김일성유일체제하로 동원하는 임무를 맡고 있다.

(4) 收容所制度

(가) 特別獨裁對象區域

북한의 인권탄압 표본은 「특별독재대상구역」이다. 주로 정치사상범을 수용하기 위해 설치된 독재구역은 적어도 14개소에 이르고 있고 수용인원은 약 20만명에 이른 것으로 보인다. 「특별독재대상구역」에서는 인간이하의 탄압이 지속되고 있다.

(나) 勞動敎化所

북한 형법 제21조에는 ‘노동교화형’이 있는 바, 노동교화형은 6개월부터 15년까지로 규정되어 있고 노동 그 자체가 형벌로 되어 있다. 노동교화소에서는 본래 취지와는 달리 노동 이외에도 비인간적인 고문과 탄압이 지속되고 있다.

2. 出身成分 區別에 의한 統制

가. 派閥에 대한 非人間的 刑罰

김일성은 항일빨치산 시절부터 ‘종파’에 대해 과민한 거부반응을 보였고 타파벌에 대해 철저한 숙청을 단행하였다. 그는 정책적 반대자들까지 종파로 몰아 숙청하였다. 이의 피해자들이 현재 해외에서 반체제그룹을 결성하고 있다.

나. 成分別 差別待遇

북한은 1958년 12월부터 전인민을 3계층으로 분류하기 시작하였고 1970년 9월에 종결된 주민성분 분류사업에서는 북한주민 전체를 3계층 즉 핵심, 동요, 적대계층과 51개 성분으로 분류하고 각 성분에 대한 당의 시책을 구체화시켰다. 이후로 이러한 계층분류는 보다 체계화 되었고 현재는 일종의 신분제화 되었다고 볼 수 있다. 한편 적대계층으로 분류된 자들은 잠재적 불만자로 분류될 수 있을 것이다.

다. 「黨的 指導」

김일성 우상화정책을 통해 후계자 지위 공고화를 계획한 김정일은 1인독재체제 완성과 대내외의 조직화 역량확대를 위하여 1974년 4월 14일 「유일사상체계확립의 10대원칙」을 수립하였다. 이것은 많은 폐해를 양산하였는 바, 사소한 언동일지라도 유일사상체계 10대원칙 위반으로 당에 고발되어 「당적 지도」를 받은 후 출당·철직 등 책벌은 물론 산간벽지로 강제 이주당하였다. 특히 김일성은 1960년대 산업화과정에서 두각을 나타낸 전문관료들을 견제하기 위한 수단으로 당관료에 대한 「당적 지도」의 중요성을 역설하고 있다.

이후 김정일은 당권을 장악한 입장에서 후계체제에 반대하는 요소들에 대해 「당적 지도」를 강화하였다. 이러한 「당적지도」는 친·

인척들에게도 예외는 아니었다. 특히 1980년대 후반부터 90년대에는 정무원 총리들에 대한 경질·등용의 반복정책을 통해 전문관료들을 통제해 나갔다. 한편 당적지도를 받은 친·인척과 핵심측근들은 잠재적 불만세력으로 볼 수 있다.

3. 服從誘導를 위한 食·衣·住 統制

가. 食糧配給制

북한은 1952년 이래로 식량배급제를 실시하고 있는 바, 이것은 첫째, 절대공급부족 상태의 식량을 효율적으로 통제, 분배하고 둘째, 식량통제를 통한 주민통제 즉 순응적 인간을 육성하고 셋째, 배급자에 대한 감사심 즉 지배자에 대한 충성심을 제고하며 넷째, '무노동 무임금'식으로 무위도식자를 배제하고 노동의 신성함을 양양시키는데 목적을 두고 있다. 또한 대부분의 인민에게는 15일마다 식량배급을 하게 되어 있으나 북한은 1973년부터 '전쟁비축용' 식량이란 명목으로 전인민들로부터 매월 4일 분량의 양곡을 공제함으로써 최소한의 인간생활 영위도 곤란한 실정이다.

나. 集團主義的 衣服生活

의류에 대한 통제는 사실상 일반주민들의 의생활 획일화를 불가피하게 하였고 지배층은 이를 통해 인민들을 통제하고 있다. 즉 각

종 생산품의 양·질적 통제를 통해 주민들의 욕구수준을 계획적으로 관리하고 있다고 볼 수 있겠다.

다. 非文化的 住居生活

주거생활면에 있어서 주민통제정책을 보면 북한에서는 건물의 개인소유도 또한 개인건축도 인정되지 않으며 이러한 조건하에서 개인의 취향이나 개성에 알맞는 설계는 존재하지 않는다. 따라서 북한의 주생활양식은 통제에 적합한 집단거주중심의 아파트형 또는 연립주택형의 집단주의적인 생활양식만이 인정되고 있다.

4. 人間改造와 情報·社會 統制

가. 人間改造 事業

주체사상의 기본원칙중의 하나가 인간개조의 문제이다. 즉 공산주의적 ‘품성’을 갖춘 인간을 주조하기 위해 인위적으로 인간의 성질을 개조하자는 것이다. 북한은 인민의식을 개조하여 김일성·김정일이라는 용어만 나오면 자동반사적으로 찬양과 칭송을 하는 파블로프(Pavlov)류의 일차원적 인간들만 양성하고 있다.

나. 情報의 劃一化

김일성·김정일 체제유지에 불필요한 정보의 차단을 위해 텔레비전이나 라디오의 채널은 고정되어 있다. 결국 북한 신문이나 방송은 개인생활의 질을 향상시킬 수 있는 정보제공기능, 개인보호기능, 정부감시기능, 문화전달자적 기능, 오락·광고기능을 수행하기 보다는 김일성·김정일 노선의 정당화 기능, 인민감시·고발 기능만을 수행함으로써 인권침해의 주역이 되고 있다.

다. 社會生活 規制

북한은 인간의 자유로운 활동을 최대한 제한함으로써 정보교환으로 인한 체제부정적 일탈행위를 방지하고 있다. 따라서 당국 허가없이 인민들은 자의로 주거지를 이동할 수 없다. 만일 주거지를 허가없이 이동하였을 경우 주거등록을 할 수 없고 공민증이 없으면 어디에서도 직장을 구할 수가 없을 뿐만 아니라 식량배급도 받을 수 없다. 한편 국가의 필요에 의한 해외여행자, 유학생, 외향선원 등은 잠재적 체제일탈자일 가능성이 높다.

第 V 章 北韓 人權問題와 體制變化

1. 北韓體制 變化要因으로서의 人權問題

북한의 인권 피억압자들이 인권통제에 대한 불만을 외부로 표출시키지 못하고 잠재화시키고 있는 이유는 무엇인가? 첫째, 북한은 단일민족일 뿐만 아니라 ‘신계급’이라 할 수 있을 정도의 계급갈등이 심화된 상태는 아니라는 점이다. 둘째, 철저한 폐쇄·통제정책이다. 북한에는 당기구, 국가보위부, 사회안전부 등 억압 및 정보통제기구가 발달되어 있다. 셋째, 인권통제의 범위가 법률적·정치적·경제적·사회적·문화적 제분야에 걸쳐 총체적이라는 점이다. 넷째, 지리적 특수성이다. ‘원썩’관계인 남한, 사회주의 국가인 중국, 혼란중인 러시아 등은 북한 인권에 대한 문제제기의 여력을 갖지 못함으로써 「헬싱키협정」과 같은 동구에 대한 서구의 정치적 지원 기대를 무망하게 만들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다섯째, 북한에서는 최고지도자의 교체경험이 없었고 이에 따른 노선변경이나 갈등이 부재하였다. 또한 공산화 이전시기에도 지배자에 대한 조직적 저항경험이 없었다.

인권통제에 의해 불이익을 당한 부류는 첫째, 김일성과 권력투쟁에서 희생당한 해외망명자나 김정일과의 권력투쟁에서 소외된 친·인척, 둘째, 「당적 지도」를 당한 당·정·군에 걸친 소외엘리트 또는 비친·인척, 셋째, 대부분이 적대계층으로 분류된 약 400

만 인민과 「특별독재대상구역」 수감자 약 20만명 등으로 구분해 볼 수 있다.

이러한 잠재적 불만은 체제유지 규제력이 약화되면 외부로 자연 발생적으로 표출될 수밖에 없다. 즉 이러한 규제력은 첫째, 김일성·김정일, 둘째, 강압기구, 셋째, 외부정보통제 등을 들 수 있는 바, 규제력이 약화되면 인민들의 불만이 외부로 표출되어 북한도 변화될 수 밖에 없을 것이다.

2. 北韓 人權運動 活性化와 體制變化

북한의 인권 활성화를 위한 자유세계의 노력이 실현되어 진다면 북한내 피억압자들의 사기는 상승될 것이고 궁극적으로는 북한체제 변화의 주역이 될 것이다. 따라서 한반도 상황이 「헬싱키협정」 체결 당시의 유럽정세와는 제 측면에서 다르다 할지라도 향후 북한 인권 활성화를 통한 체제변화를 유도하기 위해서는 유럽식 인권개선 방안을 비롯한 제방안이 적극 도입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第 VI 章 結 論

연구의 결과 북한 인권실태는 구소련, 동구 등과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저급한 수준이었다. 정치적 권리는 물론 경제적 권리 즉

의·식·주 권리조차도 보장받지 못하고 있다. 특히 정치적 권리는 전무한 상태로 체제유지에 필요한 집회 이외에는 집회·결사의 자유는 물론 김일성·김정일에 대한 불평조차 허용되지 않는 암흑 상태이다.

그러나 당·정·군에 걸친 소외엘리트와 감시 및 통제에 의해 불이익을 당하고 있는 적대계층 중심의 인민들은 어떤 계기가 주어지면 반체제운동은 아니라 할지라도 인권개선운동을 전개할 가능성이 있다. 그렇다면 어떤 계기는 무엇인가? 그것은 내부적으로는 김일성·김정일의 사망과 외부적으로는 자유세계의 압력이다.

따라서 우리는 북한내부의 변화를 기다리기 보다는 북한내 인권운동이 활성화되도록 지원해야 할 것인 바, 제반수단을 동원하여 북한정부에 대해 인권개선을 촉구하여 인권피억압자들의 인권이 신장되도록 함으로써 중국에는 이들이 북한내 민주정부 수립과 점진적 통일의 주체가 되도록 하여야 할 것이다.

目 次

| | |
|-------------------------------|----|
| 第 I 章 序 論 | 1 |
| 1. 研究 目的 | 1 |
| 2. 研究 範圍 | 3 |
| 第 II 章 舊蘇聯 및 東歐 社會主義 體制와 人權問題 | 7 |
| 1. 社會主義의 人權 概念 | 7 |
| 2. 社會主義 國家의 人權統制 實相 | 11 |
| 가. 舊蘇聯의 人權問題 | 11 |
| 나. 東歐 社會主義 國家들의 人權問題 | 17 |
| 3. 社會主義 國家에서의 人權運動 | 33 |
| 4. 「헬싱키協定」과 人權運動의 伸張 | 37 |
| 第 III 章 北韓體制的 特性과 人權統制 | 45 |
| 1. 首領論的 唯一支配體制 | 45 |
| 2. 리더쉽의 性格 | 52 |
| 3. 家父長制的 政治文化 | 55 |
| 4. 分斷構造 | 57 |

第Ⅳ章 北韓人權統制的 實相·····62

1. 法的 統制와 抑壓機構의 發達·····62
 - 가. 社會主義 國家에서의 法機能·····62
 - 나. 北韓法の 非人道性·····66
 - 다. 抑壓的 黨機構와 國家機關·····75
2. 出身成分 區別에 의한 統制·····89
 - 가. 派閥에 대한 非人間的 刑罰·····89
 - 나. 成分別 差別待遇·····92
 - 다. 「黨的 指導」·····103
3. 服從誘導를 위한 食·衣·住 統制·····108
 - 가. 食糧配給制·····110
 - 나. 集團主義的 衣服生活·····113
 - 다. 非文化的 住居生活·····115
4. 人間改造와 情報·社會 統制·····119
 - 가. 人間改造 事業·····119
 - 나. 情報의 劃一化·····122
 - 다. 社會生活 規制·····125

第Ⅴ章 北韓人權問題와 體制變化·····130

1. 北韓體制 變化要因으로서의 人權問題·····130
2. 北韓 人權運動 活性化와 體制變化·····134

第 VI 章 結 論.....138

參考文獻.....142

第 I 章 序 論

1. 研究 目的

발전노선의 차이로 인한 파벌간의 논쟁이 지속되고는 있지만 구 소련, 동구, 중국 등 ‘현존 사회주의’ 국가들의 탈사회주의화는 역사적 필연으로 귀결되는 듯하다. 물론 국가간 약간의 상이성은 존재하지만 사회주의 국가들의 변화는 생산력 발전을 위한 상부구조의 개혁에 역점이 두어지고 있다. 즉 법, 권력구조, 의식, 이데올로기 분야의 개혁을 통해 개인자유 확대가 끊임없이 진행되고 있다. 특히 생산력 발전을 위한 개인이익 추구에 대한 중요성 인정은 집단주의에 근거한 사회주의 생산양식의 혁명적 변혁으로 평가될 수 있다.

‘현존 사회주의’ 국가들이 국부증대를 위해 개인 역할의 중요성을 인식하기 시작했다는 사실은 개인주의를 인정한 것이고 곧 개인의 자유로운 활동을 인정했다는 것을 의미한다. 역사발전의 두 가지 주요변수인 개인과 집단에 대한 선후문제는 철학·정치학·사회학 등의 주요 연구대상이지만 어느 분야든 집단구성원인 개인의 중요성 자체는 부정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개인이익의 극대화를 통한 집단이익의 극대화 실현이라는 논리는 그 이데올로기적 편견에도 불구하고 정치·사회발전의 공리로 받아들일 수 있을 것이다.

따라서 역사발전은 자유의 확대과정이라는 헤겔(Hegel)의 논리는¹⁾ 집단우선주의를 발전논리로 채택했던 사회주의 국가들이 개인 자유의 중요성을 인정하기 시작함으로써 보편타당성을 인정받은 것으로 간주할 수 있다. 이러한 맥락에서 개인자유에 대한 유보가 지속되고 있는 국가들은 최소한의 인권조차 박탈하고 있는 것으로 인정될 수 있고 인권빈곤국으로 분류할 수 있을 것이다. 결국 북한이 상부구조의 개혁, 즉 개인주의화의 징후를 보이지 않고 있고 오히려 집단주의에 근거한 ‘우리식 사회주의’의 고수를 위해 개인의 사상개조사업을 강화하고 있다는 측면에서 인권보장국으로 분류하기에는 난점이 있다.

한편 김일성은, 과장된 부분이 없지는 않지만, 항일빨치산운동을 하였고 국가건설과 한국전쟁의 ‘승리’, 사회주의 혁명 등을 통해 인민들에게 國父的 존재로 인식되어 지고 있기 때문에 자발적 복종에 의한 체제유지 측면이 없지는 않을 것이다. 그러나 김일성은 체제이념 즉 스탈린주의에 입각한 프롤레타리아 독재론에 의거 국가를 설립하였기 때문에 강제적 측면이 보다 강하였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 물론 강제적 수단이라 함은 심리적·물리적 폭력을 통한 인민들의 자유와 재산, 즉 인권의 구속·제한을 의미하는 바, 김일성은 생명, 자유, 재산 등의 가치통제를 통해 인권을 탄압하여 복종자를 확대시켜 왔다고 할 수 있다.

1) John Plamenatz, "History as the realization of freedom," in I. A. Pelczynski, ed., *Hegel's Political Philosophy* (London: Cambridge University press, 1971), p. 45.

그리고 북한 인권문제와 관련해 간과해서는 안될 점은 국민복지적 통일국가를 건설하기 위해서는 북한인권이 통일전에 반드시 개선되어야 한다는 당위론이다. 따라서 우리는 북한 인권개선을 위한 효율적 방안을 모색해야 할 것이고 이를 위해서는 구소련, 동구의 인권개선을 위해 서구 자유주의 국가들이 어떤 방안을 사용했는가를 고찰해 볼 필요가 있다.

따라서 본 연구의 목적은 첫째, 동구 사회주의 국가들의 변화와 관련하여 이들 국가에서 인권운동이 가능했던 이유는 무엇이었으며 서구국가들이 동구의 인권개선을 위해 어떤 방안을 강구했는가를 고찰하고 인권운동이 구소련 및 동구 사회주의의 변화에 미친 영향을 분석한다. 둘째, 북한 인권문제와 관련하여 북한이 현재와 같은 인권 통제정책을 실시한 배경이 무엇인가를 분석하며 셋째, 인권 통제정책이 북한내 법·정치·경제·사회 등 제분야에 어떤 실태로 구현되어 있는가를 고찰한 후 넷째, 인권운동 활성화가 북한체제 변화에 어떤 영향을 미칠 것인가를 전망해 보는데 있다.

2. 研究 範圍

인권이란 사람으로서 살아가기 위해 마땅히 누려야할 자유와 권리고 국가의 구성원인 시민(공민)으로서 행사해야 할 자유와 권리를 함께 의미하는 용어이다. 이것은 인간의 가장 기본적인 권리라는 의미에서 기본권 또는 기본적 인권이라고도 한다.²⁾

제2차 세계대전 이후로 구식민주의와 신식민주의를 청산하고 제

3세계 국민의 자유와 권리를 보장하는 문제들이 국제적 여론으로 등장하기 시작하였다.³⁾ 특히 인류는 제1, 2차 세계대전을 통하여 나치즘이나 파시즘에 의해 인권유린과 극도의 박해를 받았을 뿐만 아니라 전쟁의 참혹상을 체험하였기 때문에 2차 세계대전 이후 인권존중을 제국가의 공통된 과제로 제기하였다. 집단안전보장 유지를 위해 탄생한 유엔(UN)은 유엔헌장에서 인권존중을 위한 국제협력을 유엔목적의 하나로 규정하였으며 헌장의 인권존중 정신을 구체화하기 위하여 1948년 12월 10일 제3차 유엔총회에서 「세계인권선언」을 채택하였다. 이 선언에 의하여 천명된 기본적 인권의 내용을 국제적으로 보장하기 위하여 1966년 12월 16일 제21차 유엔총회는 「국제인권규약」을 채택하였다. 이 규약은 「경제적·사회적·문화적 제권리에 관한 국제규약」(A규약)과 「시민적·정치적 제권리에 관한 국제규약」(B규약) 및 「B규약에 관한 선택의정서」의 3자로 구성되어 있는데 이들은 모두 1976년에 각각 발효되었다.⁴⁾

문제는 체제와 이념적 특징에 따라 「규약 A, B」에 대한 강조점이 달랐다는 것이다. 즉 자본주의 국가와 사회주의 국가로 대별된

2) 韓相範, 「人權」(서울: 教育科學社, 1991), p. 17. 인권의 종류에 관해서는 R. J. Vincent, *Human Rights and International Relations* (London: Cambridge University Press, 1986), pp. 11~13 참조.

3) 인권확립 과정에 관한 자세한 역사는 한상범, 「기본적 인권」(서울: 정음사, 1985), pp. 26~50 참조.

4) 평화문제연구소, 「북한의 인권백서」(서울: 평화문제연구소, 1991), p. 9.

현대사회에서는 「집단인권」과 「개인인권」에 대한 논쟁이 계속되고 있다. 집단이익을 우선시하는 사회주의 국가는 개인권리를 철저히 억제하고 집단권리만을 강조한다. 또한 자본주의 국가에서는 시민적·정치적 권리의 우선을 강조하는 반면 사회주의 국가에서는 경제적·사회적·문화적 권리의 우선을 강조한다. 그리고 자본주의 국가들은 인권침해에 대한 국제적 규제를 강조하는 반면 사회주의 국가들은 국가주권을 강조한다.⁵⁾ 이러한 맥락에서 김일성·김정일도 북한에는 인권문제가 전무하다고 주장하고 있다.⁶⁾ 이처럼 인권 개념은 특정시대와 특정사회에 따라 달라진다는 점에서 역사적 성격을 띄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그러나 인간의 자유와 권리를 신장시키는 결정적 계기가 되었던 부르주아 혁명이래 인권의 가장 중요한 내용은 전제권력을 제한하고 개인과 시민의 자유와 평등을 보장하는 것이었다는 점에서 인권개념에 대한 역사적·이데올로기적 해석과는 관계없이 본 연구에서 사용하는 인권개념은 본질적으로 다음의 세가지 요소를 내포(connotation)시키려 한다. 첫째, 인권은 개인으로서의 인간에게 최

5) Peter R. Baehr, "Human Rights: A Change in Performance," Edited by Ronald J. Hill and Jan Zielonka, *Restructuring Eastern Europe* (Vermont: Edward Elgar, 1990), p. 185. 지난 6월 25일 빈에서 폐막된 제2차 유엔세계인권회의에서도 동일한 논란이 있었다. 「한겨레신문」, 1993.6.27.

6) 김정일, "인민대중중심의 우리식 사회주의는 필승불패이다," 「친애하는 지도자 김정일동지의 문헌집」 (평양: 조선로동당출판사, 1992), pp. 350~51.

고 가치를 부여하는 개인주의적 가치관을 그 전제로 한다. 둘째, 인권은 그 권리가 국가에 의해 창설된 것이 아니라 인간이 인간이기 때문에 당연히 향유해야 하는 前國家的 權利로서 인권은 국가라 할지라도 그 본질적 내용을 침해하지 못한다는 의미를 갖는다. 셋째, 이와 관련하여 인권의 내포는 정치적 자유와 경제적 평등이지만 정치적 자유가 우선시 되어야 한다는 점 등이다.

第 II 章 舊蘇聯 및 東歐 社會主義 體制와 人權問題

1. 社會主義의 人權 概念

인권문제는 역사적으로 정치권력과의 관계에서 발생하였다. 정치권력이 1인이나 소수 또는 특정계급에게 장악되어 행사될 때 피 지배계급의 인권은 매우 취약하였다. 권력이 1인이나 소수에게 집중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시도는 이미 영국에서 13세기 부터 시작되었다. 영국 귀족들은 왕권을 제한하기 위해 1215년 「대헌장(마그나 카르타)」을 제정하였다. 이후 영국은 청교도혁명(1646)과 명예혁명(1689)을 통해 국왕의 권한을 제한하고 국민의 대표기관인 의회의 지위를 공고화하였다.

이러한 영국식 제도는 저항권을 인정한 로크(J. Locke)의 「시민 정부론(1689)」에 의해 이론적으로 합리화되었다. 이후 로크의 사상은 미국독립선언(1776)과 프랑스대혁명(1789)에 지대한 영향을 미쳤다. 특히 미·불혁명은 시민혁명으로서 국가적 자유(Liberty)와 개인적 자유(Freedom)의 중요성을 강대국과 지배자들에게 각성시켜준 중요한 역사적 사건이었다. 그러나 이러한 혁명은 부르주아의 권리를 확보하기 위한 부르주아 혁명이었기 때문에 왕권을 제한하고 다수의 권리를 보장받기 위해 탄생한 부르주아 정권은 노동자들을 억압하고 착취하는 기구로 전락하였다. 따라서 부르주아

국가에서는 권력의 자의성을 억제·방지하는 것과 함께 부르조아의 일방적 지배를 억제하여 경제적 약자인 노동자계급의 자유와 권리를 보장하는 문제가 인권문제에서 주요한 비중을 차지하게 되었다. 결국 이것은 노동자들의 경제적 복지를 인권의 중요부분으로 제시한 이데올로기인 사회주의가 본격적으로 등장할 수 있는 원인을 제공하였다.

1848년 4월 프랑스혁명에는 각종 사회주의 유파에 속하는 인물과 세력이 참여하였고 역사상 최초로 노동계급의 권리를 명문화한 「1848년 헌법」이 탄생하였다. 1848년 프랑스혁명은 독일, 오스트리아 등으로 확산되어졌고, 맑스와 엥겔스는 「공산당선언」(1848)을 발표하였다. 비록 1848년 프랑스혁명은 밑으로부터의 혁명으로서 실패하였으나 노동자의 권익을 보장한 입헌주의 헌법(1850)을 도출하는 데는 성공하였다.

한편 러시아에서는 1861년에 농노해방운동이, 1863년에는 미국에서는 노예해방운동이 각각 발생하였다. 러시아에서의 농노해방운동은 실패로 돌아갔으나 1917년 사회주의 혁명은 성공하였다. 부르조아 민주주의가 아닌 프롤레타리아 민주주의를 주장한 레닌(Lenin)은 「근로하고 착취받는 인민의 권리선언」과 「평화에 대한 포고」에서 사회주의 국가에서의 기본권을 제시하였다. 레닌은 기본권의 주체는 근로인민이며 근로인민은 생산수단의 국유·공유화를 통한 계획경제하에서 근로와 휴식 및 그 밖의 사회보장권을 누려야 하며 그것은 소비에트 권력체제에 의해서만 보장된다고 주장하였다. 레닌의 이러한 주장은 초기 공상적 사회주의와 맑스-엥겔

스(Marx-Engels)의 類的 개념을 근간으로한 공산주의 이념 및 실천강령으로서의 프롤레타리아 독재론에 근거한 것임은 재론의 여지가 없다.⁷⁾

공산주의의 창시자인 맑스는 계급론적 입장에서 인간사회를 지배와 피지배관계로 2분화시켰다. 맑스의 사적유물론은 역사발전법칙에 의하여 피지배자인 노동자에 의해 지배자인 자본가가 타도되어 자본주의는 필연적으로 몰락하고 무계급사회인 공산주의가 도래한다는 것이 주요 논리였다.⁸⁾ 그리고 공산사회가 되면 자본주의 하에서 존재했던 일체의 비인간적인 의식이나 인물, 제도 등은 배제된다는 것이다. 물론 그는 이러한 공산사회는 자연법칙적으로 도래되는 것은 아니고 프롤레타리아 독재국가라는 ‘짧은’ 과도기를 통해 성취된다고 하였다.⁹⁾

더 나아가 맑스의 동료였던 엥겔스는 프롤레타리아 독재국가도 역시 국가인만큼 국가로서의 속성 즉, 한 계급이 다른 한 계급을 억압하기 위한 도구로서의 속성을 계속 지닌다고 주장하였다. 다만 부르주아 국가와 구별되는 점이 있다면 그것은 무산계급에 대한 유산계급의 억압이 아니라 유산계급에 대한 무산계급의 억압이라는 것이다. 즉 프롤레타리아 혁명을 통해 정치권력을 장악한 무

7) 자세한 내용은 韓相範, 「人權」, pp. 31~57 참조.

8) Max Mark, *Modern Ideologies* (New York : St. Martin's Press, 1973), pp. 38~52.

9) Lyman T. Sargent, 鄭然植 譯, 「現代 政治이데올로기」 (서울: 以文出版社, 1985), p. 120.

산계급이 모든 생산력을 국가로 이전하고 이데올로기, 법, 통치기구 등 모든 상부구조를 장악, 유산계급의 반항을 억제하기 위하여 프롤레타리아 계급독재를 행한다는 것이다.¹⁰⁾

한편 레닌은 두개 국가론을 주장하였는데 부르쥬아 국가론과 프롤레타리아 국가론이 그것들이다. 그는 특히 프롤레타리아 독재국가를 半國家라 하여 본질적으로 부르쥬아 국가와는 다른 것으로 규정하였다. 반국가는 폭력혁명에 의하여 타도된 재래의 부르쥬아 국가를 대신하며 설립된 순간부터 자체의 점진적인 ‘死滅’(withering away)을 준비하는 국가라고 하였다.¹¹⁾

국가에 관한 고전적 맑시즘은 레닌에 이어 스탈린에 의해 재수정되었다. 레닌의 경우에 있어서는 프롤레타리아 독재국가 즉 사회주의 국가는 존립 즉시 스스로 ‘사멸’하기 시작하는 半國家라고 하였으나 스탈린은 이와는 달리 사회주의 국가는 사멸하는 순간까지 더욱 강고해지는 인류역사상 가장 강력한 국가체제를 지닌다고 하였다. 스탈린시대는 주지하듯이 전체주의 국가였다고 할 수 있다. 국가통제 영역이 극대화되고 이에 따른 국가 기능이 최대한 확대되었다.¹²⁾ 즉 사회와 독립적으로 존재하는 국가의 확대에 의해 야기되는 부작용에 대한 우려는 사라지고 국가 자체가 노동자 국가

10) 張明奉, “共產主義 憲法の 概觀,” 漢陽大學校 中蘇問題研究所, 「中蘇研究」, 제9권 제3호 (1985 가을), p. 95.

11) V. I. Lenin, *State and Revolution*, 김영철 역, 「국가와 혁명」(서울: 논장, 1988), p. 30.

12) 李容弼, 「共產主義 理論 批判」(서울: 大旺社, 1980), pp. 241~42.

이므로 노동자의 이익에 반하는 행위는 하지 않을 것이라는 논리였다. 한마디로 국가 기능이 확대되면 될수록 프롤레타리아 인권은 증대될 것이라는 논리였다.¹³⁾

결론적으로 사회주의 국가들은 집단주의 정신과 국가권리 및 집단적 경제평등을 인권의 주요내용으로 주장하고 있다.

2. 社會主義 國家의 人權統制 實相

본 절에서는 위와 같은 사회주의 인권개념이 구소련, 동구 사회주의 국가에서 구체적으로 어떻게 나타났는가를 고찰해 본다.

가. 舊蘇聯의 人權問題

사회주의 이론에서 제시한 유토피아적인 세계와는 대조적으로 현실적인 구소련 정치체제는 서구의 개방적 체제뿐만 아니라 유토피아적 사회주의 이론과도 맞지 않게 다양한 정치적 규범과 가치의 공존, 이견과 반대의 자유로운 표출 등을 허용하지 않는 전체주의 체제였다. 구소련 체제는 개인주의나 욕심과 같은 부르주아적 특질에서 벗어나 사회주의적 우애의 원칙을 수용하는 ‘모범적인 사회주의형 인간’을 개발하는데 총력을 기울였다.

레닌은 자기 정책의 합리화를 위해 ‘민주집중제’를 개발하여 인

13) 河龍出, “소련 國家論의 歷史的 展開,” 韓國政治學會 編, 「現代韓國政治와 國家」(서울: 法文社, 1987), pp. 75~77.

민의 권리를 억압하였다. 1917년 10월 혁명에 의해 정권을 장악한 레닌은 8시간 노동제, 노동자 보험제, 재산과 신분에 따른 전인민의 구분폐지령 등을 발표하였다. 그러나 이러한 초기 유토피아니즘은 지나친 급진성으로 인해 효과를 거두지 못하였고 국가는 오히려 '불법의 大海'로 변해 버렸다. 이로 인해 '사법제도에 있어서의 유토피아니즘'이 청산되고 1922년 형법 및 형사소송법, 민법 및 민사소송법이 제정되는 한편 당통제가 강화되는 등 강제정책이 채택되기 시작하였다.¹⁴⁾

또한 레닌은 사회혁명당과 멘셰비키의 강한 반대에도 불구하고 전시공산주의 정책을 채택하여 식량을 강제 매입하고 이에 반항하는 자들에 대해서는 '인민의 적'으로 간주하여 혁명법정에 세웠다. 부농, 중농에 대한 빈농의 계급투쟁을 정부가 인위적으로 강제하였고 이의 뒷받침을 위해 「빈농위원회」를 도처에 설치하여 밀고자들에 대해서는 혜택을 주는 등 비인간적 정책을 시행하였다. 이로 인해 1921~22년 사이 기아로 인해 300만명이 죽고 600만명이 기아로 인한 질병으로 사망하였다.¹⁵⁾

한편 스탈린은 스탈린주의로 철저히 무장한 당을 이용, 그의 1인독재체제와 공포정치를 합리화시켰다. 비밀경찰을 조직하여 감시와 동원을 제도화하고 정보를 독점하면서 시작된 스탈린의 공포정치는 테러와 숙청의 연속이었다. 스탈린시대의 공포정치를 살펴

14) 李常民, 「蘇聯官僚政治論」(서울: 法文社, 1986), pp. 172~182.

15) 金學俊·全寅永 共著, 「蘇聯 및 東歐共產主義」(서울: 서울大學校 出版部, 1984), pp. 39~43.

보면 「내무성」, 「국가안보성」, 「내무성 내의 특별위원회」 등의 억압기구가 있었는데 특히 국가안보성은 정권안정에 위협을 줄 수 있다고 생각되는 모든 요소들을 색출하여 조사하는 임무를 전담하는 기관이었다. 1934년 법령에 의해 이 기구는 사회적으로 위험하다고 생각되는 사람들을 궤석재판하고, 사형선고를 포함하여 벽지나 강제수용소에 5년간 유배하는 결정을 내릴 권한을 부여받고 있었다.¹⁶⁾

스탈린의 숙청은 초기에 트로츠키, 지노비예프, 카메네프와의 권력투쟁에서 시작되었다. 특히 1935~1938년 사이에 그의 추종자를 포함하여 수백만명을 희생시킨 이른바 「예조프의 대숙청사건」은 소련사람들을 공포에 떨게 하였다. 경험자들에 의하면 당시는 정치적 반대자들이 공개재판 후 또는 재판절차도 없이 처형되었고, 수백만의 사람이 사소한 문제로 비밀경찰에 의하여 투옥되었으며 단지 혐의만으로 직장에서 쫓겨나거나 가정 내에서 타살되었다고 한다. 서방의 평가에 의하면 이 기간에 있었던 정치적 항거 결과 2천만명이 생명을 잃었고, 1953년 스탈린이 사망하였을 때 1천5백만명의 소련시민이 여전히 투옥되어 있었다고 한다.¹⁷⁾

1953년 스탈린 사후 해빙과 함께 인권운동이 활성화 되었다. 특히 이 시기는 흐루시초프에 의한 스탈린비판이 전개되고 있었기

16) 宋澤龜·趙範淳 共著, 「現代 蘇聯政治論」 (서울: 螢雪出版社, 1988), pp. 46~47.

17) George Von Rauch, *A History of Soviet Russia* (New York: Praeger Publishers, 1972), pp. 238~53.

때문에 정치권력의 독재화와 1인전제에 대한 비난 등이 자유화운동을 자극하였으며 이것은 동구의 폴란드, 헝가리 등에서 일어난 자유화운동의 기폭제가 되었다. 이 기간 동안에 지하간행물인 「사미즈다트」(Samizdat)¹⁸⁾가 발간되었고 반체제적 문학씨클만도 7개나 나타났다. 대학생과 작가를 비롯한 젊은 인텔리층들이 인권운동에 적극적이었다. 그들은 인간성을 강조하거나 소비에트정치를 비판하는 소설들을 발표하기 시작했다.¹⁹⁾

그러나 이러한 인권운동은 브레즈네프 (Brezhnev)가 등장함으로써 위축되기 시작하였다. 브레즈네프는 비밀경찰을 통해 첫째, 형사소추와 이에 따른 강제노동, 혹은 지로의 유형, 불충분한 급식, 둘째, 정신병동으로의 강제입원, 셋째, 외국으로의 추방 또는 해외이주의 허용(예, 솔제니친) 등 3가지 방법으로 이들을 탄압하였다.

브레즈네프는 1977년에 헌법을 개정하였다.²⁰⁾ 1936년 제정된 이후 41년만에 개정된 1977년 헌법은 전문에 소비에트 국가의 성격을 ‘전인민국가’로, 소비에트 사회를 ‘발전된 사회주의 사회’로 규정하고 있다. 1977년 헌법은 이때까지의 헌법보다 더 광범한 사회생활 원칙을 규정하고 있다. 즉 제1장에서 사회의 정치체제에 관한 제원칙, 이 시스템에 관련한 소연방 공산당, 국가 및 사회단체

18) 이에 대해서는 趙政男, 「蘇聯反體制論」(서울: 大旺社, 1983), pp. 149~61 참조.

19) 위의 책, pp. 50~51.

20) 1977년 헌법 全文은 安澤源, 「新蘇聯政治論」(서울: 博英社, 1987), 附錄 1 참조.

의 지위, 역할, 기능 등을 규정하고 있고, 제2장에서는 경제의 제 원칙, 제3장에서는 사회발전과 문화에 관한 것 등을 규정하고 있다.

개정된 헌법 제50조에는 시민의 정치적 자유와 관련된 주요 사항인 자유로운 언론·출판·집회의 권리 등과 같은 광범위한 시민들의 자유가 보장되어 있었다. 즉 노동자는 임의대로 공공건물, 거리, 광장, 각종 기구들을 사용할 수 있고 신문, 텔레비전, 라디오 등을 통해 정보를 여러 사람에게 알릴 수 있는 기회가 보장되었다. 그러나 이러한 권리들중 대부분은 여러 면에서 제한되고 있었다. 예를 들어 자유로운 언론·출판·집회의 권리는 그것이 '인민의 이익과 부합되고 사회주의 체제를 강화하고 발전시키기 위한 범위내에서만' 보장되었다.

그런데 인민의 이익과 부합되는 것이 무엇인가에 대한 기준은 애매하였다. 사실 그러한 기준을 결정하는 곳은 공산당이었기 때문에 실제로 언론·출판·집회 등의 권리들은 집단주의 원칙에 의거하여 공식조직인 노동조합, 콤포스물, 협동농장 등에만 주어졌다. 또한 제39조에는 더 많은 제한들이 포함되어 있었는데, 이 조항은 시민들이 그들의 권리나 자유를 누림에 있어서 '사회나 국가의 이익을 해치는 것이 되어서는 안된다'고 규정되어 있었다.

한편 서구 자유민주주의에서와는 달리 구소련에서는 재판소가 정부로부터 독립되어 있지 않았고 통합된 국가체계의 일부분을 이루고 있었다. 본래 헌법규정으로는 재판과정은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 모두 인민들에게 공개되어야 하고 형사사건의 피고인은 법

적 변호를 받을 권리를 가질 수 있으며 재판관과 그를 보좌하는 인민의 배심원들은 ‘독립성을 가지고 오직 법에 따라서’ 판결해야 한다(155조)고 되어 있다.

그러나 실제로는 이러한 보장에는 많은 제한들이 가해 졌다. 모든 당·정·군 부서의 담당자들에 대한 선출이 위로부터 통제되어 이루어지고 있는 것처럼 재판관과 인민배심원들의 선출도 노멘클라투라를 통해 통제받고 있었고, 당지배의 원칙을 수용하지 않으려고 하는 사람은 그가 누구이든 관계없이 후보가 될 수 없었다. 재판관들도 상위 법정관리들과 검찰의 지시에 따라야 했고, 상위직에 있는 사람들의 의사에 부합되지 않는 결정은 무효가 되었다. 더구나 공산당이 재판과정을 세밀하게 감시하고 있었으며 그들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언제든지, 특히 정치적으로 민감한 사건이 포함될 때에는 사사건건 개입하고 있었다는 사실은 분명하다.²¹⁾

구소련의 인권탄압정책을 몇가지 유형으로 분류해 보면 다음과 같다. ① 검열제도의 보편화, ② 증형제도, ③ 비사법적 탄압, ④ 부당한 사법판결, ⑤ 노동수용소, ⑥ 정신병동 강제입원, ⑦ 해외 추방 등이다.²²⁾ 그런데 인권운동가들의 해외추방은 아이러니컬하게도 ‘부메랑효과’를 내어 해외에서의 인권운동을 활성화시켰고 구소

21) Stephen White, John Gardner, George Schopflin, *Communist Political Systems: An Introduction* (New York : St. Martin's Press, 1987), 서규선·박재주 역, 「공산주의 정치체제」(서울: 인간사랑, 1989), pp. 230~34.

22) 趙政男, 「蘇聯反體制論」, pp. 318~31.

련정부를 곤경에 빠뜨렸다.

나. 東歐 社會主義 國家들의 人權問題

제2차 세계대전 후 대부분의 동구 제국은 소비에트화 과정을 통해 구소련의 위성국이 되었다.²³⁾ 구소련은 단일지도체제에 의해 정치외교적·경제적·이데올로기적으로 동구를 복속시켰다. 따라서 동구 제국은 구소련의 제도와 경험을 모델로 하여 사회주의사회를 건설하여 갔다. 그러나 동구 제국은 스탈린식 통치방식에 대해 1953년 스탈린의 사망과 함께 반성하고 비판하는 민족주의적 징조를 보이기 시작하였다. 스탈린 사후 동독에서의 대규모 유혈사태와 유고슬라비아에서의 집단농장화 포기 및 동구 여러국가에서의 소련어 교육개편 등은 동구 제국들이 각기 자기 나라의 조건에 알맞는 체제로의 전환을 시도하고 있었던 증거였다.

1950년대 중반이후 구소련내에서 전개된 스탈린 격하운동은 스탈린식 통치에 억눌렸던 동구 제국에게 경직된 제도의 변화를 추진할 수 있도록 하는 요인으로 작용하였다.²⁴⁾ 즉 동구 제국 정부들은 구소련군의 힘을 업고 인권운동 주창자들에 대한 탄압을 계속 하였지만 한편으로는 부분적이긴 하였지만 정치적·경제적 제도개선을 병행하였다. 아래에서는 동구 제국의 인권실태를 간략하게 고

23) 물론 유고, 알바니아는 예외다.

24) 申正鉉·李命植 共編, 「現代 共產體制의 比較分析」(서울: 日新社, 1987), p. 204.

찰해 본다.

(1) 폴란드

폴란드 공산주의자들은 1945년 이후 공산주의 운동에 극도로 적대적인 사회분위기하에서 공산당 조직을 확대해 나갔다. 1948년까지 계속된 시민전쟁과 흡사한 내란이 보여주듯이 폴란드 국민의 압도적 다수가 공산주의 특히 소비에트화를 거부하였다. 이같은 국민들의 명백한 적대감때문에 공산주의 정당인 「통합노동당」은 오직 잔혹한 탄압정책을 사용할 수 밖에 없었다.

한편 공산당 지도부내에서는 국민들에 대한 탄압방법을 중심으로갈등이 노정되었다. 즉 당서기장 고물카(Gomulka)를 중심으로한 민족공산주의자들은 국민들의 구소련에 대한 적개심을 고려하여 카톨릭교회와 유대를 강화하려한 반면 과격한 스탈린적 국제주의자들은 무조건적인 구소련식 방법의 이식을 주장하였다. 이 투쟁에서 고물카 등의 민족주의자들이 패배하여 고물카는 연금상태에 들어 갔고 고물카 추종자들은 중형을 선고받았으며 교회도 탄압을 받았다. 그후 고물카는 1956년에 복직되었다.

그러나 폴란드에서의 스탈린주의는 비교적 온건한 편이어서 공개재판도 시행되지 않았고 정치적 반대자들이 처형되지도 않았다. 스탈린 사후 스탈린주의자들은 오히려 대규모 국민적 저항을 두려워하여 가혹한 조치를 기피하였다. 어쨌든 스탈린시대의 국민억압적 통치는 통합노동당 통치를 거부하는 폴란드 민족주의를 강화시

켰다.

한편 폴란드 자유노조는 1970년 대규모파업과 1980년 8월부터 시작된 동맹파업으로 당의 통제를 받지 않는 최초의 단체가 되었고 단기간내에 회원이 1천만명에 이르게 되었다. 그러나 정부는 1981년 계엄령을 선포하고 군총사령관 야루젤스키(Jaruzelski)를 정부의 수반과 당서기장에 임명함으로써 군부지도체제에 당의 고유 권한을 위임하였다. 자유노조는 해체되고 간부들은 감금되었으며 시민의 자유는 자연히 제한되었다. 1982년말 계엄령이 해제되기는 하였으나 정부는 국민탄압을 하는데 필요한 전권을 장악하고 있었다.

이와 같이 폴란드에서 1947년 이래 당의 통치 및 정치노선에 대하여 국민들은 주기적으로 대규모 항거를 하여 왔으며 반대로 당과 정부는 계속 억압적 태도를 고수하였다. 이와 같은 상황의 계속은 역으로 국민들 마음속에 일체감을 형성, 당과 권력층에 대하여 혐오감을 형성하도록 하였으며 내적인 거부반응을 존속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하였다.²⁵⁾

(2) 헝가리

헝가리 역시 1945년 이후 구소련에서 훈련 받은 헝가리 망명객들을 중심으로한 「민족독립전선」 또는 모스크바파들이 구소련군대

25) 金達中外, 「폴란드·동독: 政治·經濟·社會·文化構造와 政策」 (서울: 法文社, 1989), pp. 23~29.

와 함께 귀국하여 아직 미성숙한 공산당과 노동조합의 요직을 점거하였다. 그러나 공산당은 1945년 실질적인 자유선거를 실시한 결과 17%의 지지만을 획득하였다. 이에 공산당은 반대세력을 제거하기 위해 음모사건을 조작하여 반공세력을 축출하였다. 공산당의 공작정치는 1949년 5월 선거까지 계속되었는 바, 단일후보제도를 도입 95.6%의 지지율을 확보하는 편법을 사용하였다.²⁶⁾

헝가리의 독재자 라코시(Rakosi)는 1949년부터 1953년에 이르기까지 5년 동안 스탈린주의적 전체주의 정권을 구축하였다. 이에 따라 정치적 통제권은 국민의 모든 생활영역에 깊숙히 침투하였고 소비에트모형을 답습한 경제발전정책 또한 과도한 동원화에 따르는 제반 문제를 노정시켰다. 특히 농업의 강제적 집단화, 극단적 중공업우선정책 등은 농민들을 소외시켰고 실질임금의 저락, 대중적 소비욕구의 억압 등은 체제에 대한 저항심리를 크게 확산시켰다. 1953년 스탈린의 사망으로 라코시는 실각하였고 후임으로 게뢰(Gerö)가 등장하였다.²⁷⁾

이후 헝가리에서는 폴란드의 고물카가 제1서기로 선출되던 날인 1956년 10월 19일에 부다페스트 공대학생 5천여명이 모여 16개항목의 대정부개혁안을 발표하였다. 이것을 빌미로 1956년 11월 4일 구소련군이 부다페스트에 진주하여 무자비한 탄압을 하였고 이후

26) 安啓春 外, 「東歐諸國의 社會와 文化」(서울: 法文社, 1988), pp. 108~11.

27) 金達中 編, 「헝가리·유고슬라비아: 政治·經濟·社會·文化構造와 政策」(서울: 法文社, 1988), pp. 29~30.

로 6만 3천여명의 헝가리인들이 시베리아로 축출되었으며 사면조치후에도 1965년에 수백명이나 감옥에 있었고 18세미만인 143명은 나이가 찬 후에 처형되었다. 또한 20만명이 오스트리아 등으로 피난하였다.

그러나 1956년 이후 20년 이상 정권을 장악한 카다르(Kadar)의 전향적 정책에 힘입어 생활수준이 향상되고 개방적·화해적 사회 분위기가 조성되었다. 따라서 헝가리에서의 인권탄압은 여타 동구 국가들 보다는 상대적으로 극심하지 않았다.²⁸⁾

(3) 체코슬로바키아

체코슬로바키아 공산당은 전후 1946년 실시된 선거에서 38%를, 그외의 정당은 62%를 획득함으로써 유일집권당이 되지 못하고 공산당 서기장 고트발트(Gottwald)를 중심으로 연립정부가 구성되었다. 그러나 공산당은 1948년 2월 정권을 장악하였다. 이를 계기로 공산당은 어느 다른 동구보다도 철저히 스탈린식의 일당체제에 입각한 프롤레타리아 독재정치체제를 구축하였다.²⁹⁾

스탈린체제 구축에 필수적인 숙청은 체코슬로바키아에서도 예외는 아니었다. 1949년에 시작된 숙청은 주로 구소련에 대하여 자주

28) 위의 책, pp. 31~32.

29) 崔禎鎬, “체코슬로바키아의 政治와 文化,” 尹德熙 外, 「체코·루마니아: 政治·經濟·社會·文化構造와 政策」(서울: 法文社, 1990), p. 93.

적인 노선을 강조하던 제2차 대전 중의 서유럽 망명자들에게 집중되었으며 이후 1950년, 1951년 2차에 걸친 대숙청을 통해 후사크, 슬란스키 등이 숙청되었다. 1954년경에는 스탈린 사후 동구 제국에 붙었던 정치범에 대한 명예회복 운동에도 불구하고 체코슬로바키아에서만은 정치재판이 계속되었다.

이후 체코슬로바키아 공화국은 1960년 헌법에 사회주의 국가로 명시된대로 사회주의 발전노선을 견지해 갔다. 그러나 1963년 슬로바키아 지식인들은 체제비판을 지속하였고 당원작가 므냐츠코(Mnacko)의 활약이 두드러졌다. 특히 슬로바키아 작가동맹 기관지가 1963년 5월부터 과거의 개인숭배, 인권침해, 법질서 침해 등을 폭로함으로써 파란을 일으켰다. 그러나 무엇보다 1963년의 의의는 ‘프라하의 봄’의 주동자인 두브체크(Dubcek)가 슬로바키아 공산당 제1서기가 되었다는 사실일 것이다.

1967년 1월 1일에는 언론통제를 위한 신문법이 발효되었고 이것은 언론인들의 심한 반발을 야기시켰는 바, 그해 10월 31일에는 대규모 학생시위가 벌어졌다. 국가적 난국에 처한 공산당은 보수파와 개혁파로 양분되어 권력투쟁을 벌였고, 1968년 1월 5일에는 두브체크가 체코슬로바키아 공산당 제1서기로 취임하여 보·혁갈등은 일단락 되었다. 두브체크는 4월 5일 ‘자유화의 현장’을 채택하는 것을 필두로 자유화를 시작하였다. 그러나 그의 개혁정책도 소련의 武力으로 인해 無力하게 되었다. 두브체크는 8월 21일 소련으로 납치되었고 그동안 소련 군사개입 후 1주일 사이에 프라하 시내에 서만 24명이 피살되고 356명이 부상당하였다.³⁰⁾ 결국 ‘프라하의 봄’

은 무산되었다.

1969년 4월에 후사크(Hustak)가 당 제1서기에 취임하였고 당연히 개혁파에 대한 숙청을 계속하고 엄격한 통제정책을 실시하였다. 그러나 1977년 1월 1일 242명의 작가, 언론인, 과학자, 정치인, 종교인 등이 1948년의 「유엔인권선언」, 1975년의 「헬싱키협정」, 「인권과 정치적 권리 등에 관한 유엔규약」, 그리고 「체코슬로바키아 헌법」을 정부가 준수하도록 호소하는 선언문인 「77헌장」³⁰⁾에 서명하였다. 회원수는 1천여명 정도였는데 이들중 많은 사람들이 체포되거나 투옥되었으며 불법성명이나 출판혐의로 경찰의 박해를 받았다. 이후로도 경찰은 「77헌장」의 지도자들과 이들의 지지자들에 대해서만이 아니라 1978년 5월에 조직된 「불법적인 피박해자를 위한 변호위원회」에 대해서도 박해를 가했다.³²⁾

(4) 동독

1945년부터 약 4년동안 구소련점령기를 거친 후 동독에서는 1949년 5월 8일 아데나워(Adenauer)하에서 임시헌법을 가결시키고 5월 23일 본(Bonn)에서 독일연방을 선언하였다. 독일사회주의통일당

30) 위의 글, pp. 94~110.

31) 이 헌장에 대한 분석은 Gale Stokes, ed., *From Stalinism to Pluralism* (Oxford: Oxford University Press, 1991), pp. 163~66 참조.

32) White, Gardner, Schopflin, *Communist Political Systems*, 서규선·박재주 역, 「공산주의 정치체계」 pp. 249~54.

(SED)은 1949년 이후로 소비에트화에 박차를 가하였다. 즉 이 당은 사회주의 반대당에 대한 투쟁 강화와 민주집중제, 구소련의 지도력을 인정하는 레닌주의 정당임을 선언하고 농업집단화를 시도하였다. 그러나 인민들은 소비에트화에 반대하였고 1950년대 초반까지도 이에 대한 반발을 계속하였으며 울브리히트(Ulbricht)는 비밀경찰을 창설하여 테러를 시행하는 등 인권탄압을 계속하였다.

사회주의통일당은 국민들의 이데올로기적 교화를 위해 사회주의 도덕을 옹호할 ‘새로운 인간’(New Man)양성을 선언하였다. 물론 이것은 인간을 강제로 사회주의적 인간으로 개조하기 위한 방책의 하나였다. 동독인들은 공산당의 강제를 피해 서방으로 집단탈출을 하게 되었고 1961년까지 탈출자는 270만명을 기록하였다. 결국 독일사회주의통일당은 1961년 8월 ‘베를린 장벽’을 설치하여 인민의 탈출을 막았다.³³⁾

한편 울브리히트는 정치적 독재를 합리화하기 위해 경제발전에 주력한 결과 동독을 동구 사회주의 국가중 제1경제대국으로 성장시켰으나 경제적 성장이 정치적 독재를 합리화시켜 주지는 못하였다. 1968년의 체코사태와 관련하여 울브리히트는 인권운동가들에 대해 많은 탄압을 가하였다. 1971년 호네커(Honecker)가 등장한 이후 인권탄압은 더욱 강해졌다. 친소적 경향이 강했던 그는 폴란드 사태에 대한 우려와 함께 서독으로부터의 분리를 더욱 강화하면서 이데올로기 강화를 위해 당원교육에 비중을 두는 한편 사회주의

33) 金達中外, 「폴란드·동독」, pp. 119~26.

인간 창조를 위해 ‘혁명적 열정’으로 노력을 계속하였다. 그 일환으로 호네커는 1972년 서독과 「동·서독 기본조약」을 체결하였고 그 결과 1973년부터는 서독 TV시청이 허가되었으며 결국 이것은 동독인들의 서독에 대한 열등감을 형성시키는 계기가 되었다. 물론 동독인들의 80%가 서독의 TV와 라디오를 시청할 수 있을 정도로 동독에서의 인권은 여타 동구 제국과 비교하여 보장되고 있는 편이었다.³⁴⁾

그러나 시인이자 가수인 비에르만은 1976년 외유공연중에 자본주의를 비판하면서 동시에 동독에서의 사회주의적 관료주의에 대한 비판을 하였기 때문에 시민권을 박탈당하였다. 또한 1979년 5월 「동독작가동맹」에서 9명이 축출되었다. 동독당국은 사회주의 사회에서 규칙을 어긴 사람들에게는 물리적인 힘을 사용할 수 있다고 경고하였으며, 그후로 적지않은 문인과 예술인들이 경찰의 수색과 체포를 감수해야 했다.

일반적으로 동독지식인들은 공산주의를 선호하고 있었고 호네커는 1988년 1월에 인권데모 참가죄로 30명을 체포하고 100여명을 추방하였다.³⁵⁾

34) White, Gardner, Schopflin, *Communist Political Systems*, 서규선·박재주 역, 「공산주의 정치체계」 p. 250.

35) Elie Abel, *The Shattered Bloc*, 이근달 역, 「동구의 붕괴」(서울: 국제언론문화사, 1991), p. 151.

(5) 루마니아

루마니아는 슬라브내의 '라틴 孤島'라 불리울 정도로 동구 공산권내에서 가장 강압적이고 보수적인 체제로 알려져 있다. 루마니아에서는 소련 붉은 군대의 절대적 엄호하에 1945년 3월 6일 그로자(Groza) 정권이 생성되었다. 이후 1946년 11월 선거에서 공산당이 이끄는 「민족민주전선」이 승리함으로써 공산정권 수립이 완성되었다. 물론 공산정권의 순조로운 출발 이면에는 국민들의 정치적 무관심과 무기력이 있었다고 할 수 있다.

정부는 철저히 소비에트화 정책을 시행하여 루마니아어 철자법을 개정하고 역사를 개편하였다. 또한 공산당은 러시아 문화승배를 강요하고 루마니아문화 말살을 위해 테러까지 감행하였다. 이미 1944년 겨울부터 스탈린식 테러를 위한 제도적 장치가 마련되었고 사회와 당에 대한 테러가 만연되었다. 새로운 법체제에 의하여 반사회적 행위자들은 흑해의 강제수용소로 보내졌고 10만명 이상씩 죽어 갔다.

또한 농촌에서는 강제집단화 캠페인으로 부농에 대해서 뿐만 아니라 일반 농민들을 상대로 동구에서는 유례가 없는 테러가 자행되었다. 당내에서는 1948년에 시작된 조사작업으로 당원중 30만명을 축출하는 거대한 숙청작업이 있었다. 그리고 1955년부터 당은 스탈린 사망과는 관계없이 스탈린식 사회주의 건설의 기본정책과 당과 사회관계에 있어서의 변화가능성에 대한 논란의 여지를 불식시키기 위해 농업집단화에 반대하는 농민들과 반체제 활동 위험이

있는 국민들을 상대로 테러 캠페인을 재개하였다.³⁶⁾

루마니아에서는 1960년대 동구의 대소 자유화운동 기간에도 국내적 탄압이 계속되었다. 특히 1965년 게오르규-데즈(Cheorghiu-Dej)를 이은 초우세스쿠(Ceausescu)는 대외적으로는 대소 자주노선을 추구하였지만 대내적으로는 중공업을 중시하는 산업정책을 강행하고 국민들의 요구를 무시하는 억압정책을 지속하였다. 모든 권력은 초우세스쿠 1인에게 집중되었다.³⁷⁾

1977년초 루마니아에서는 「77헌장」회원들에 대한 지지서한이 나타났으며 이어서 「헬싱키협정」의 준수를 요구하는 ‘8인의 편지’가 나오게 되었다. 이에 대해 정부당국은 노동자들의 권익을 위한 구체적인 언급이 되어 있지 않다고 비난하는 한편, 권고출국조치를 겸하여 취했다. 또한 1977년 7~8월에 「지우계곡」에서 수천의 광부들이 연금문제, 불충분한 음식, 강요된 작업연장 및 빈약한 장비 등의 문제를 제기하자 많은 광부들을 해고시키고, 주동자들을 체포하였으며, 그들을 고향으로 추방하였다. 1979년 2~3월에 설립된 「루마니아 자유노조」의 지도자들은 구소련에서처럼 정신병동에 감금되거나 수감된 것으로 알려졌다.³⁸⁾

36) 尹德熙 外, 「체코·루마니아」, pp. 124~30.

37) 金學俊·全寅永 共著, 「蘇聯 및 東歐共產主義」, p. 206.

38) 위의 책, p. 237.

(6) 유고슬라비아

유고슬라비아는 하나의 정당, 두개의 알파벳, 세개의 종교, 네개의 언어, 다섯 민족, 여섯 공화국 및 일곱 접경국으로 특징지어지는 복잡한 국가였다.³⁹⁾ 이 복잡한 국가는 대독투쟁을 전개하여 국민적 지지를 받고 있었던 티토(Tito)를 수상으로 영입하게 된다. 티토는 구소련모델을 적용하여 농업의 집단화를 추진하며 산업을 국유화하고 중앙집권화된 경제계획을 추진하며 정적들을 제거하는 등 단일 전체주의 체제를 강화시켰다.⁴⁰⁾

물론 유고슬라비아는 초기부터 대소종속을 극소화 시켰기 때문에 동구 국가들중에 가장 개방된 체제를 유지했던 것도 사실이다. 즉 공업과 산업분야는 개인기업활동이 제한되었지만 기술적으로는 국가소유가 아니었으며 제형태의 농업관리도 농민 자신이 하였고 계획경제이기는 하였지만 지시보다는 노동자들 스스로가 관리하는 형태를 취하였다. 그러나 유고가 자랑하는 「노동자평의회」도 역시 당의 지시를 받는 것은 마찬가지였다.

유고 지도자들은 어느정도의 자유는 허용하였지만 체제에 대한 도전에 대해서는 강경하였다. 1970년초 티토는 당의 역할과 단결 및 사상적인 정화를 강조하였다. 이후 그는 1972년 9월 당과 국가의 단결력 부족을 공격하면서 혁명정신의 강화와 당의 숙청을 요

39) 자유평론사 편집부, 「동구권국가의 변혁과 갈등」 (서울: 自由評論社, 1989), p. 303.

40) 金學俊·全寅永 共著, 「蘇聯 및 東歐共產主義」, pp. 208~09.

구하였다. 그후 모든 공화국내의 독자적인 성향의 지도자들이 숙청당하였다. 1951년의 '인민과 정부에 적대적인 사실의 전파를 금지하는 법'과 1968년의 '시민들에 해로운 출판물을 금지하는 법'이 엄격하게 적용되었을 뿐만 아니라 1975년에 개정된 법은 국가에 대한 사적인 비판까지 범법행위로 규정하였다.⁴¹⁾

예를 들면 1965년에 관대한 대우를 받았던 미하일로프는 계속해서 괴롭힘을 당하다가 1975년에는 「뉴욕타임즈」에 글을 기고한 죄로 7년형을 언도 받았는데 죄목은 유고에 언론자유가 없다고 비방했다는 것이었다. 같은 시기에 크로아치아 분리운동을 추진한 혐의로 교수 및 학생 등 15명이 최고 13년의 형을 선고 받았다. 베오그라드대학 철학교수 8명이 마르크스주의에 충실하지 못하다는 이유로 추방되었고, 국제적 명성이 있는 학술지 「프락시스」마저도 1975년 2월에 폐간되고 말았다. 진보주의자, 소수민족 분리주의자 및 친소파들을 포함하는 정치범들은 어느 동구 국가 못지않게 수천명에 이르렀다. 1972~1976년에 걸친 이러한 티토의 숙청은 친소파 및 민족주의자들을 소탕하여 독재체제를 확고히 하려는 것이었다. 1980년 티토사망 이후에도 인권탄압은 계속되었다.⁴²⁾

41) 金達中 編, 「헝가리·유고슬라비아」, p. 170.

42) 金學俊·全寅永 共著, 「蘇聯 및 東歐共產主義」, pp. 240~41.

(7) 알바니아

알바니아의 공산화는 동구에서는 예외적으로 유고슬라비아와 함께 구소련군의 직접적 지원없이 자력에 의해 성취하였다. 알바니아 의회는 1946년 인민공화국을 선포하고 공산주의운동 통합에 공이 큰 호자(Hoxa) 정권을 출범시켰다. 그리고 1946년 3월 헌법은 ‘인민민주주의 체제하에서 생산수단의 사유를 유지하고 사회주의 부분의 확대를 기하는 프롤레타리아 독재’를 선언하였다.⁴³⁾

그러나 알바니아 노동당은 단결하지 못하였고 당내분은 스탈린주의를 강화하는 계기를 마련해 주었다. 우선 1950년 2월에 숙청작업이 벌어져 당원의 8%가 숙청되었다. 이후 알바니아의 호자 정권은 외부로부터의 항구적인 위협을 내세우면서 민족주의를 공산정권의 정통성을 위한 대체이데올로기로 삼았으며 동시에 이를 공산당의 권력독점 유지 및 사회에 대한 스탈린식 통제강화를 정당화하는 수단으로 이용해 왔다. 사실상 알바니아는 1948년 유고슬라비아와 1961년 구소련, 그리고 1978년 중공과 차례로 결별하면서 극도의 폐쇄사회를 유지하였다.

알바니아는 경찰국가로서 보안기구들을 통하여 시민을 통제하였으며, 경찰은 거의 완벽하게 그들의 도전을 봉쇄하였다. 1965년 말부터 알바니아는 외부인들에게는 ‘小문화혁명’이라고 통칭되는 「국가의 모든 생활의 혁명화」 운동을 벌였으며 이는 시기적으로 중공

43) 金達中外, 「불가리아·알바니아: 政治·經濟·社會·文化構造와 政策」(서울: 法文社, 1991), pp. 14~115.

의 문화대혁명과 일치하였다. 이 혁명화운동은 일종의 사상개조를 통해 부르조아 이데올로기를 제거하는 것이었다.⁴⁴⁾

이러한 숙청은 문화분야에서 시작하여 1974년에는 방위기구로 확대되고 경제관료들에게까지 영향을 미쳤다. 이것은 호자 개인 주도의 관료주의에 대한 공격에 있었던 바, 각료의 2/3와 정치국의 1/3이, 그리고 당중앙위원의 1/2이 영향을 받았는데 1만명 정도의 관료가 산업전선과 농촌으로 밀려간 것으로 보도되었다.⁴⁵⁾

(8) 불가리아

불가리아의 공산화는 전형적인 인민전선전술과 구소련의 무력침공을 통해 이루어졌다. 제2차 세계대전이 종결되기 직전 1944년 9월 5일 구소련은 불가리아에 선전을 포고하고 3일후 구소련군은 불가리아로 침공하였다. 이와 함께 공산당을 주축으로한 「조국전선」은 쿠데타를 일으켜 무라비에프(Murabiev) 정권을 타도하고 연립정부를 수립하였다. 연립정부내에서 내무성을 장악한 공산당은 정부내 부르조아적 성향을 지닌 공직자 및 인사들을 숙청하기 시작하였다. 이어서 1946년 7월 「軍에 있어서 지도력과 통제에 관한 포고령」이 선포됨으로써 군내부의 숙청도 시작되었다. 경찰을 대신한 인민대가 시민생활에 침투하여 공포분위기 조성, 정치적 태

44) 위의 책, p. 122.

45) Richard F. Staar, *Communist Regimes in Eastern Europe*, 3rd ed. (Stanford: Hoover Institution Press, 1977), pp. 14~15.

러, 대중선전, 자발적 결사체의 정치참여 억제 등을 담당하였다. 1946년 국회의원 총선거가 실시되었고 공포선거에 의해 다수당이 된 공산당에 의하여 군주제가 폐지되고 불가리아 공화국이 탄생하였다. 10월에는 「대국민의회」가 구성되고 소위 ‘디미트로프 헌법’이 제정되었고 디미트로프(Dimitrov) 정권이 탄생하였다.

그러나 디미트로프는 1949년에 사망하였고 ‘小스탈린’이라 불렸던 체르벤코프(Chervenkov)가 정권을 장악하였다. 그는 1954년 퇴임 때까지 강압과 테러에 의한 지배를 계속하였다. 그의 지배기간 동안 총 46만명의 공산당원중 약 10만명이 숙청되어 강제수용소로 보내졌다. 그 가운데는 13명의 중앙위원회 위원, 6명의 정치국원, 10명의 장관도 포함되어 있었다. 이러한 탄압은 비공산당원이나 종교계 인사들에게도 예외는 아니었다.⁴⁶⁾

이후 1954년부터 권력을 장악하기 시작한 지프코프(Zhivkov)는 1인독제를 강화하였고 여타 동구 국가들의 자유화운동에도 크게 영향을 받지 않았다. 특히 1968년 ‘프라하의 봄’ 영향도 받지 않고 오히려 숙청을 계속하였다. 그는 전적으로 구소련에 충성을 다하였고 ‘소련학교의 우등생’이라는 별명까지 얻었다. 그러나 구소련에서 개혁파인 고르바초프가 등장함으로써 구소련과 마찰을 일으키는 상황으로 변전하였다. 그는 1989년에 실각하였다.⁴⁷⁾

46) 金達中外, 「불가리아·알바니아」, pp. 25~30.

47) 위의 책, pp. 31~36.

3. 社會主義 國家에서의 人權運動

앞 절에서 고찰한 바대로 구소련·헝가리·폴란드·체코슬로바키아·동독 등 동구 사회주의 국가에서는 억압기구를 통한 철저한 탄압에도 불구하고 인권운동⁴⁸⁾은 계속되었다. 그렇다면 왜 이들 국가에서는 인권운동이 가능하였을까? 사회주의 국가에서 인권운동이 가능하였었던 이유는 다음 몇가지로 분류해서 설명할 수 있을 것이다.

첫째, 정치문화적 전통이다. 구소련은 제정러시아 시기부터 민주화운동 경험이 있었다. 러시아의 니콜라스 1세는 1825년 「12월 장교단의 반란」이 실패로 종결된 직후인 1825년 즉위하였다. 니콜라스 1세는 그리이스정교 사상, 독재정치 사상, 민족주의 사상 등을 통치이념으로 하여 서구 자유주의 운동과 역행되는 독재정치를 실시하였다. 이에 대해 푸쉬킨, 고골, 뜨르게네프, 토스토예프스키, 차아다에프 등 진보적인 지식인들이 반발하였다.

이들이 반전제적 운동을 할 수 있었던 것은 첫째, 러시아 학자들이 서구를 견학할 수 있는 기회가 많았을 뿐만 아니라 이들은 자유주의 정신이 담긴 서적을 소지한 채 귀국할 수 있었고 둘째, 이러한 서적들이 러시아 국내에서 다량으로 인쇄·배포되었으며 셋째, 나폴레옹 전쟁시에 러시아군들이 서구로 출정하여 서구 문

48) 여기에서 사용하는 인권운동은 논란은 있겠지만 반체제운동의 하위개념으로서 법의 범위내에서 폭력이 아니라 언어로, 비밀적이 아니라 공개적으로 인권신장을 위해 활동하는 것을 의미한다.

물을 직접 접함으로써 러시아와의 비교가 가능하였기 때문이다. 넷째, 「12월 장교단 반란」에 가담하였던 사람들에 대한 비인도적 처사에 지식인들의 실망이 너무 지대했기 때문이고 다섯째, 1755년부터 모스크바에 새로운 대학이 설립되어 서구 특히, 독일에서 수많은 교수들이 초빙됨으로써 기존의 프랑스로부터의 반항분위기에 독일의 합리주의가 접목되어 러시아적 반항문화를 형성하였기 때문이다.

이후 이러한 사상적 영향은 1870년대 「narod」⁴⁹⁾운동으로 발전하였다. 이 운동은 바쿠닌과 라브로프 등에 의해 주도되었던 바, 당시 젊은 청년들에게 대학을 자퇴하고 농촌으로 들어 가라고 선동하였다. 물론 이 운동은 농민들의 지지를 받지 못하였고 폭력화 되고 말았지만 이후 이것은 레닌의 폭력혁명론의 이론적 바탕이 되었다. 이러한 서구 자유주의적 전통은 헝가리, 폴란드를 중심으로 한 동구 국가들에게도 비슷하게 잔존해 있었다.

결국 구소련, 동구는 비록 공산화 이전이었기는 하지만 인권운동 경험이 있었을 뿐만 아니라 서구적 자유주의 사상의 면면이 지식인을 통해 잔존해 있었다는 점이 후일 공산체제에 대항할 수 있는 정치문화적 기반이 되었다.

둘째, 민족주의적 요인이다. 동구권 국가들은 사회주의 체제를 선택하고 그것을 유지·발전시키는 일련의 과정이 내부적 논의가 아닌 구소련의 국가이익과 맑스-레닌주의의 스탈린적 해석에 따라 공산당 주도하에 일률적으로 일당독재체제와 중공업위주의 통제경

49) 인민과 농민들 속에서 활동하는 것을 이상으로 삼는 사상.

체제제를 수용하였다. 따라서 동구는 체제내에 많은 모순을 내포하고 있었지만 냉전논리에 입각한 구소련의 대동구정책에 의해 계속 억제되어 왔을 뿐이었다.

한편 동구는 사회주의 등장 이전부터 민족주의 운동이 활발하였던 바, 강력한 규제력이었던 스탈린의 사망과 함께 등장한 흐루시초프가 스탈린 격하운동을 시작하자 동구 민족주의는 재발되었다. 따라서 동구의 인권운동은 반소 민족주의에 그 토대를 두었고 1953년 동독의 자유화운동을 비롯하여 1956년 폴란드의 「포즈난사태」, 헝가리에서의 자유화운동 등이 대표적 사건이었다. 물론 이러한 운동들은 구소련의 군사개입으로 인해 좌절은 되었지만 지도자들은 국민들의 반소감정을 무마하기 위해 전술적으로나마 개혁을 하지 않을 수 없었다.

셋째, 리더쉽 요인이다. 구소련, 동구에서는 민주적 선거에 의하지는 않았지만 최고권력자가 교체되었다. 이를 통해 스탈린, 초우세스크, 호자 등 특정한 인물을 제외하고는 비교적 민주적 성격의 소유자였다. 레닌은 이미 1921년에 「신경제정책」을 수립하여 수정주의를 채택하였고, 흐루시초프는 평화공존을 내세워 서구와의 관계개선에 주력하였다. 브레즈네프는 1977년 헌법을 개정하여 보다 개혁적인 방향으로 나갔다. 고르바초프는 페로스트로이카를 실시하여 ‘고르바초프 효과’를 발생케 하였으며 구소련, 동구변화에 주요한 역할을 하였다. 한편 동구에서는 헝가리의 카다르, 폴란드의 고몰카, 체코슬로바키아의 두브체크, 동독의 울브리히트 등이 경제개혁을 위한 노력을 계속하였을 뿐만 아니라 최소한 정적을 죽이

지는 않았다.

따라서 이러한 관행은 인권운동가들에게 최소한 목숨은 보존할 수 있다는 신념을 주었다고 볼 수 있을 것이다.

넷째, 지정학적 요인이다. 동구는 지리적으로 서구와 인접함으로써 사회심리적으로 상대적 박탈감을 포함한 욕구불만의 증대 및 빈곤의식의 증대로 인해 반항심리를 가속화시킬 수 있는 환경에 놓여 있었다. 즉 지리적 인접성으로 인해 서구의 라디오나 TV전파를 직접 접할 수 있었을 뿐만 아니라, 인적 교류를 통해 상호 정보를 교환할 수 있었기 때문에 체제불만자들이 증가할 수밖에 없었다. 한편 역사적으로 동구는 유럽이라는 영역에 속하였고 특히 나폴레옹전쟁 이후 「비인체제」내에서 유럽의 평화를 구가한 역사도 있었기 때문에 동질성이 강하였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서구는 유럽의 일원인 동구의 인권개선을 위해 노력하였고 그 결과는 「헬싱키협정」으로 나타났다. 이것은 구소련, 동구의 인권운동가들에게 심리적 자신감을 제공함으로써 인권운동이 보다 활성화되는 계기를 제공하였다고 할 수 있다. 또한 지배자들은 문화·종교분야에 대한 효율적 통제에 실패함으로써 총체적 독재에 실패하였고 반항자 탄압정책 일환이긴 하였지만 해외추방정책을 채택함으로써 대외적으로 인권탄압사실이 공개되는 계기가 되었다. 즉 적어도 사회주의 국가들은 반대자들에 대한 처절한 숙청은 가하지 못하였다.

4. 「헬싱키協定」과 人權運動의 伸張

1954년 이후 구소련에 의해 추진되어 왔던 CSCE(유럽안보협력회의)는 1972년 9월부터 3년간의 협상 결과 1975년 8월 1일 4개 「Baskets」에 걸친 소위 「헬싱키협정」(Helsinki Accord)⁵⁰⁾ 도출에 성공하였다. CSCE는 독일통일을 두려워한 구소련이 2차 세계대전 이후 그들이 얻은 성과 즉, 동구권의 사회주의 체제와 두개의 독일을 인정받기 위해 1954년부터 꾸준히 추진해온 작품이었다.⁵¹⁾ 구소련은 이 CSCE를 통해 유럽에서 미국의 세력을 밀어냄으로써 유럽의 필란드화를 기도했다. 반면 서구는 이 CSCE의 인권규정을 통해 동구에 자유화바람을 불어 넣고자 하였다.

이 선언 중 제1바스켓의 7항은 사상, 양심, 종교, 신념의 자유를 포함한 기본적 자유와 인권의 존중이었고, 제3바스켓은 「인도 및 기타분야에 관한 협력」으로서 첫째, 인적 교류에 대한 참가국들은 사람, 시설, 관련기관의 보다 자유로운 이동과 접촉을 쉽게 하기 위해 ① 이산가족의 접촉과 정기적인 방문, ② 가족재회의 적극 지원, ③ 이국시민간의 결혼시 출국신고서에 대한 인도적 배려, ④ 개인적 및 직업상의 여행편의 제공, ⑤ 개인 및 집단의 관광 편의제

50) 이 협정에는 알바니아를 제외한 NATO 16개국, 바르샤바 조약기구 7개국, 비동맹 및 중립국 12개국 등 총 35개국이 참가하였다.

51) Michael R. Lucas, *The Conference on Security and Cooperation in Europe and the Post-Cold War Era* (Hamburg: Hamburg University, 1990), p. 12.

공, ⑥ 청소년교류, ⑦ 스포츠교류, ⑧ 인적 접촉의 확대 등의 원칙에 합의했다. 둘째, 정보에 관해서는 ① 외국기자에 대한 취재활동완화와 외국인의 초청강연, ② 세미나·원탁회의참가 편의제공, ③ 외국간행물 배포확대, ④ 방송필름 등 정보배포의 개선에 합의했다. 셋째, 교육과 스포츠분야에서의 협력교류를 다루었다.⁵²⁾

서방측은 제1바스켓의 7항과 제3바스켓의 인권조항을 통해 언젠가 사회주의 국가들에 자유화바람을 일으킬 수 있을 것이라는 희망을 가졌다. 특히 서독은 이를 원용하여 동서독간의 인적 교류를 강조하고 동독내 주민의 인권보장을 요구했다. 인적 교류와 민족통일을 연계시켰던 서독에게는 인권조항 실현은 매우 중요한 문제였다. 결국 동독은 CSCE의 국제적 약속때문에 인권과 인적 교류에 협조적으로 완화된 신속한 조치를 취해왔다. 제3바스켓은 서방측의 제안에 기초한 것이었다. 물론 구소련은 CSCE의 의사일정이나 최종결의선언에서 인권에 비중이 부여될 것이라고는 생각지도 않았다. 따라서 제1바스켓의 인권과 기본적 자유존중의 원칙과 인도적 교류협력에 관한 제3바스켓에 대한 서방측과 구소련측의 해석 차이는 상호 접근이 어렵고 불가능할 것으로 간주된 시기도 있었다.

이 제3바스켓의 사상, 사람, 문화의 자유로운 교류는 동구권의 사회주의 체제에 기반을 흔들어 놓을 우려로 인해 구소련은 이 제3

52) 자세한 내용은 Thomas Buergenthal, ed., *Human Rights, International Law and the Helsinki Accord* (New York: Universe Books, 1977), pp. 171~76 참조.

바스켓을 「트로이의 목마」, 「판도라상자」라고까지 비난하면서 양보를 거절하다가 결국 서방측의 전체적인 협정서명 불응태도 고수에 항복하고 말았다. 서방측의 이 제3바스켓의 합의안 고수는 사람, 문화 등 인도적 차원의 교류를 통한 파급효과가 구소련을 비롯한 동구권을 폐쇄사회에서 개방사회로 변화시킬 수 있다는 확신에서 연유하였다.

이를 간파한 구소련 또한 「문화교류와 정보교류의 강화는 주권 존중과 불간섭의 원칙에 따라 행하여 각국의 법률, 습관, 전통을 엄중히 지키는 것으로부터 출발하지 않으면 안된다」는 당초의 주장을 바꾸지는 않았다. 그러나 구소련은 어쩔 수 없이 이 제3바스켓의 인도적 분야에 관한 협의를 할 수밖에 없었고 이로 인해 다른 사회체제를 가진 국가들과 정상적인 국제관계를 유지하였지만, 내부적으로는 그들의 사회체제에 도전하는 세력들을 예방하고 무마해야 하는 딜레마에 빠지게 되었다.

따라서 구소련은 다른 동맹국들의 이탈을 막고 결속을 다지기 위해 불간섭의 원칙을 강조하고 이 원칙을 가능한 한 넓게 해석했다. 그리고 이를 통해 구소련은 서방과의 협력형태 및 범위를 제한하고 서구측이 개별적 인권존중이란 명분으로 동구의 사회체제와 국가안보 및 안정을 파괴하려는 면밀한 음모라고 비판을 가하기 시작했다. 이것은 구소련이 서구의 인권개념에 대해 근본적인 의심을 갖고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와 같은 인권에 대한 동서간의 개념차이는 계속되는 중간전문가모임, 재검토회의 등에서 논의의 초점이 된다.⁵³⁾

이 인권에 관한 제3바스켓은 당시 미국 카터대통령의 인권외교에 의해 관심이 더욱 고조되었다. 즉 「헬싱키협정」은 1977년 1월 카터 행정부의 출범과 함께 새로운 계기를 맞이하게 되었는데, 카터 행정부는 인권정책을 미국 외교정책의 기본 구상에 포함시키려 했다. 이러한 노력은 주권국가로서 독립성을 가진 동구 국가들간의 차이 뿐만 아니라 동구와 구소련간의 차이를 부각시키는데 영향을 끼쳤다. 이전에는 동구 국가들과 구소련과의 차이는 중요한 문제가 아니었는데, 폴란드 태생 국가안보보좌관인 브레진스키의 영향하에 있었던 카터 행정부는 동구 국가들이 국내문제에 있어서 「헬싱키협정」에 명시된 최소한의 원칙들은 지켜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면서 차별성이 부각되기 시작하였다.

한편 카터 정부는 점점 더 억압적이 되어가는 루마니아 보다도 당시에 인권 상황이 가장 좋았던 헝가리와 폴란드에 더 많은 관심을 가졌다. 즉 당시 카터 대통령의 바르샤바 방문, 그리고 스테판 경(卿)의 헝가리 귀환은 변화를 기대한 의도된 행동이었다.

물론 카터 정부는 처절한 인권유린국들인 동구의 여타 구소련 동맹국들에 대해서도 무관심하지 않았다. 미국은 1979년 3월 경제 발전으로 자신감이 증가하고 있었던 구소련 동맹국인 동독과의 협상을 통해 차후 관계확대를 위한 기반을 마련하기도 하였다. 또한 미국은 구소련의 가장 충실한 위성국가였던 불가리아와도 이와 비슷한 협상을 했다. 그러나 미국은 구소련 위성국가로서의 지위를

53) 李長熙, “Helsinki 「人權協定」이 分斷國家에 주는 意味,” 國土統一院, 「統一問題研究」 제1권 3호 (1989 가을), pp. 43~44.

확고히 하고 있었던 체코슬로바키아와의 관계만은 아주 나쁜 상태였다. 체코슬로바키아는 구소련 다음으로 강하게 「헬싱키협정」을 무시하였는 바, 러시아어로 연설한 체코슬로바키아 CSCE대표들의 비난은 욕설 바로 그것이었다.⁵⁴⁾

인권조항을 통해 동구권에 자유화바람을 불어 넣고자 했던 서방측의 당초 기대는 적중했다. 결국에는 1989년 헝가리가 오스트리아국경 사이의 철조망을 걷고 혼합시장경제체제 도입을 선언했으며 폴란드에서도 비공산정부가 들어서는 등 코페르쿠스적 전환을 보였기 때문이다. 그리고 헝가리 국경의 허물어진 철조망을 통해 동독인들은 서방으로 탈출할 수 있었다.⁵⁵⁾

결국 1975년 서명된 「헬싱키협정」은 참가국간 자유로운 통신 및 사람들의 이동, 인권추구, 그리고 안보측면에서의 동서 불력간 경쟁완화, 신뢰구축의 틀을 마련하는데 이바지해 왔다고 할 수 있다. 특히 제3바스켓은 오늘날 시점에서 볼 때 동구권 와해에 이바지하였다고 할 수 있다. 즉 이 선언은 국경불가침 등 전후 유럽의 현상유지를 승인했다는 점에서 구소련외교의 성과였지만 구소련이 다자간 합의를 도출하기 위해 어쩔 수 없이 인권조항을 받아들임으로써 그 성과를 희석시키는 결과를 가져왔다. 1976년 당대회에서 브레즈네프는 국경불가침성 등 CSCE의 성과를 높이 평가하면서 “자본주의 국가내 영향력있는 자들이 여전히 냉전적 사고를

54) Vojtech Mastny, *Helsinki, Human Rights and European Security* (Duke: Duke University Press, 1986), pp. 14~15.

55) 李長熙, “Helsinki 「人權協定」이 分斷國家에 주는 意味,” p. 65.

소지한 채 타국에의 내정불간섭 원칙을 무시하고 있다”는 발언을 하였다.⁵⁶⁾

구소련에서의 정치적 저항을 분석한 초기 연구자인 바군(Barghoorn)은 저항유형을 당파적, 분파적, 전복적 유형의 3가지로 나누고 있다.⁵⁷⁾ 구소련에 적실성이 있는 유형인 분파적 저항은 서구적 의미의 이익집단적 반대로서, 근본적으로는 구소련 체제에 충성적이거나 또는 최소한 이 체제를 받아 들이기는 하지만 기존 정치지도자들이 추구하는 정책에 반대하는 유형이다. 이 유형은 구소련의 자연과학자, 사회과학자, 법률가, 작가, 예술인 등의 전문적 집단, 직능집단, 기능집단 구성원들이 그들의 직업적 기능수행과 사생활에 대한 통제나 개입을 거부하는 요구, 주장이었다. 이와 같은 분파적 정치저항은 초기에는 서구에서의 이익집단적 활동의 성격을 띠었으나 1960년대와 1970년대에는 인권운동을 강조하는 성격이 강해졌다.

특히 1976년 5월에 물리학자인 리올로프에 의해 조직된 「헬싱키 협정 감시단체」(Moscow Group to Promote the Implementation of the Helsinki Accord)는 구소련에서의 인권운동에 영향을 미쳤다. 즉 이 운동이 ‘매우 제한적’이긴 하였지만 인민들로 부터 호응을 얻고 있

56) 鄭銀淑, 「多者安保 및 協力の 한 事例로서 CSCE: 亞太地域 多者安保協力 構想에 즈음하여」 世宗分析 93-05 (서울: 世宗研究所, 1993), pp. 5~6.

57) 申命淳, “소련에서의 정치적 저항분석,” 漢陽大學校 中蘇問題研究所, 「中蘇研究」, 제9권 3호 (1985 가을), p. 122.

었다. 여러가지 반체제성명서나 호소문에 서명한 인사들은 약 1000여명이나 되었다.⁵⁸⁾ 이 단체는 1982년 해체될 때까지 17차에 걸쳐 인권사항과 양심수 재판에 관한 문서와 보조자료를 발간하였다. 여기에 포함된 내용은 불공정한 재판, 우편, 전화 등의 검열과 도청, 양심수에 대한 학대, 가족의 분산, 이민권리의 박탈, 종교인과 소수민족에 대한 박해 등에 대한 고발이었다. 이 단체는 구소련이 조인한 국제협약을 인권운동에 이용함으로써 국제적 여론과 외국정부가 구소련내의 인권위반사항에 관심을 갖고 또 영향력을 행사하도록 만들었다. 또한 이 단체는 1970년대 중반에 쇠퇴해 가던 구소련에서의 인권운동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 넣었으며 각 단체와 종교, 인종집단 등과의 연계를 통해 인권운동을 조직화하는 역할을 하였다.⁵⁹⁾

구소련 당국자들은 비공식정기간행물 <시사연대기> (A Chronicle of Current Events)와 같은 지하유인물을 줄이고 「헬싱키협정」에 대한 소련의 위반사례를 기록하려했던 헬싱키감시단체와 같은 비공식집단과 조직을 해체시키려고 각종 노력을 다할 정도로 구소련에서의 인권운동은 구소련당국을 곤란하게 만들었다. 즉 구소련은 「헬싱키협정」에 서명함으로써 1970년대 후반 국내인권운동가들과 충돌을 해야만 했다. 그리고 카터 행정부의 인권중점외교정책과 레이건 행정부 초기 3년간 구소련국가의 적법성문제 거론은 구소련

58) White, Gardner, Schopflin, *Communist Political Systems*, 서규선·박재주 역, 「공산주의 정치체계」 p. 240.

59) 위의 글, pp. 132~133.

이 전후 유럽질서의 국제적 승인을 획득한데 대한 당연한 댓가였다.

「헬싱키협정」의 영향은 체코, 폴란드, 헝가리의 상황에도 그대로 적용된다. 즉 체코슬로바키아에서는 「UN인권선언」, 「헬싱키협정」 등의 영향으로 지식인들이 중심이 되어 1977년에 「77헌장」을 제정하였다. 물론 이 헌장은 공식기구는 아니었다. 즉 규율이나 항구적인 조직, 공식회원 등은 존재하지 않았다. 상호 다른 생각과 신념, 직업을 가진 사람들이 정치적 반대행위를 하기 위한 목적이 아닌 단지 공공이익을 증진시키기 위해 자유스럽고 공개적으로 만든 임의단체였다.⁶⁰⁾ 그러나 이를 계기로 인권운동이 확장되어 갔고 특히 중요한 사실은 정치영역으로 활동이 확장되어 나갔다는 점이다. 물론 그 헌장이 발표되기 이전에도 준정치적, 문학적, 역사적, 사회학적 저작물들이 유통되고 있었으나 「77헌장」은 인권운동에 새로운 초점과 정치적 목적성을 부여해 주었다. 폴란드, 헝가리 등 여타 대부분의 동구 국가들도 「77헌장」의 영향을 받아 인권운동 기운이 활성화되었다.

결국 「헬싱키협정」은 구소련, 동구국가들의 인권탄압을 약화시키는 역할을 하였고 결국 고르바초프와 같은 ‘신사고’ 지식인을 등장케 하는 遠因을 제공하였다고 평가할 수 있을 것이다.

60) Gale Stokes, ed., *From Stalinism To Pluralism*, pp. 165~66.

第 Ⅲ 章 北韓體制的 特性과 人權統制

본 장은 구소련, 동구와 유사한 사회주의를 지배이데올로기로 채택하고 있는 북한에서는 왜 동구에서처럼 인권운동이 활성화 되지 못하고 오히려 인권통제가 보다 강화되고 있는가에 대한 이유를 북한체제의 특성을 중심으로 고찰한다.

1. 首領論的 唯一支配體制

맑스-레닌주의는 인간을 2분법적으로 분류하고 있다. 즉 맑스-레닌주의는 인간사회를 계급론적 시각에서 소수의 지배자와 다수의 피지배자로 분류하고 공산주의 사회가 되면 다수의 피지배자였던 프롤레타리아가 소수인 부르주아를 타도하고 무계급사회를 도래시킨다는 논리이다. 따라서 맑스-레닌주의는 이러한 무계급사회의 완성을 위한 과도기로 「프롤레타리아 독재」를 상정하고 이 기간동안 부르주아적 인간에 대한 억압은 필연적인 것으로 정당화하고 있다. 즉 맑스-레닌주의는 폭력을 사회발전의 기본동력으로 채택하고 있다.⁶¹⁾ 예를 들면 모택동도 “권력은 총구로부터 나온다”고 말하여 프롤레타리아 정권수립을 위한 폭력을 합법화시키고 있다.⁶²⁾ 맑스-레닌주의에서는 서구식 자유민주주의가 존재하지 않는다.

61) Max Mark, *Modern Ideologies*, p. 45.

62) 金河龍, 「中國政治論」(서울: 博英社, 1990), p. 51.

서구 민주주의에서 정치행동 방향을 설정하는 기준은 인간적 인격의 회복을 위한 인권보장과 권력에 대한 통제라 할 수 있다.⁶³⁾ 이러한 기준에서 본다면 사회주의 국가에는 민주주의의 부재는 물론 서구적 의미의 민주사회주의도 존재하지 않는다고 할 수 있다. 사회주의는 인간의 정신적 구조와 가치는 무시한 채, 인간의 국가화 즉 인간을 공산주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수단으로 간주한다.

개인의 권리는 집단주의라는 명분으로 공산당의 자유의지에 따라 해석된다. 개인은 당이 제시하는 진리에 일치하는 행동을 하여야 됨으로 맑스적 사회주의는 인간정신을 화석화시킨다. 혁명적인 계급투쟁과 계급없는 공산사회의 전단계로 불리어지는 맑스적 사회주의는 개인의 모든 생존영역, 즉 물질적 영역외에 사회적·정신적 영역까지 지배의 범위를 장악하고 조종한다. 개인생활의 바람직한 형성, 정치·경제·사회 질서에 대한 창의적이고 독립적인 사고의 과정과 자율적인 사상의 형성은 맑스적 사회주의 아래서는 금지되어 있다.⁶⁴⁾

북한 김일성은 정권초기 위와 같은 이념적 속성을 지닌 맑스-레닌주의를 북한내에 이식시키기 위해 투쟁하였고 결국 승리하였다. 이후 그는 스탈린식 프롤레타리아 독재론을 원용하여 반항자들을 제거하였다.⁶⁵⁾ 또한 그는 브르쥬아 뿐만 아니라 사회주의자들까지

63) Leon P. Baradat, *Political Ideologies* (N. J.: Prentice Hall, 1984), p.

80. 아울러 보다 자세한 내용은 이동희 역, 「현대정치이념」(서울: 法文社, 1980), p. 170 참조.

64) 梁好民 外, 「共產主義批判」(서울: 極東問題研究所, 1981), p. 29.

도 충성하지 않으면 부르조아적·개인주의적 ‘품성’의 소유자로 규정하여 제거하였다.⁶⁵⁾ 즉 그는 개인적 의견차이까지도 맑스-레닌주의에 반대하고 자본주의로 회귀하려는 반동주의자로 규정, 제거하였다.⁶⁷⁾

또한 맑스-레닌주의는 인간은 유적 존재로서 근본적으로 집단생활을 하도록 구조화되어 있다고 보고 집단주의를 기본 이념으로 삼고 있다.⁶⁸⁾ 결국 맑스-레닌주의는 김일성의 강제정책을 이론적으로 합리화시켜 주었고, 주체사상이 체계화될 때까지 인민들을 억압할 수 있는 이론적 기초가 되었다.

한편 맑스-레닌주의는 1950년대부터 김일성에 의해 자의적으로 수정되어지기 시작하였다. 소위 ‘북한식 실용주의’ 논리인 주체가

65) 김일성, “우리 나라에서의 맑스-레닌주의 당건설과 당의 당면과업에 대하여,” 「김일성 저작집 1」 (평양: 조선로동당출판사, 1979), p. 309. 여기에서 김일성은 “혁명적 당을 건설하려면 반드시(주: 밑줄은 인용자) 맑스-레닌주의적 당건설원칙에 튼튼히 기초하여야 합니다”고 강조하였다.

66) 대표적인 사례는 오기섭의 비판이었다. 김일성은 오기섭의 노선을 비판하면서 그를 소부르조아적 근성을 소유한자로 매도하였다. 김일성, “대중지도방법을 개선하며 올해 인민경제계획수행을 성과적으로 보장할데 대하여,” 「김일성 저작집 3」 (평양: 조선로동당출판사, 1979), p. 188.

67) 대표적인 사건이 정달현, 이주하 숙청사건이었다. 자세한 내용은 김일성, “당중앙위원회사업에 대하여,” 「김일성 저작집 4」 (평양: 조선로동당출판사, 1979), pp. 137~38 참조.

68) 칼-맑스, 김태경 옮김, 「경제학-철학 수고」 (서울: 이론과 실천, 1987), pp. 60~68.

등장하였다. 김일성은 1955년 ‘맑스-레닌주의를 창조적으로 적용한’ 주체라는 용어를 사용하여 김일성과 이외에는 ‘주체주의자’가 아닌 ‘사대주의자’로 지목, 제거하기 시작하였다.⁶⁹⁾ 이후 이것은 주체사상과 김일성주의로 더욱 정교화되었고 당규약 전문과 헌법⁷⁰⁾에 지배이데올로기로 명시되었다. 김일성은 필요에 따라 다양한 주체의 기준을 제시하였다. 즉 주체와 반대되는 입장은 사대주의외에도 개인주의, 종파주의, 가족주의, 좌·우 편향주의, 모험주의, 교조주의, 수정주의, 형식주의, 지방제일주의, 연고주의 등 다양하였고 이것은 그의 ‘左手右手論’(왼손이든 오른손이든 밥만 먹으면 된다는 실용주의론)에 입각하여 제거 대상의 ‘실정에 맞게⁷¹⁾ 적용되었다.⁷²⁾

주체사상은 사람을 세계의 주인으로 규정하고 있다.⁷³⁾ 그러나 주

69) 김일성은 박영빈을 예를 들어 비난하고 있다. 김일성, “사상사업에서 교조주의와 형식주의를 퇴치하고 주체를 확립할데 대하여,” 「김일성 저작집 9」(평양: 조선로동당출판사, 1980), p. 475.

70) 지난 1992년 4월 9일 북한 최고인민회의 제9기 제3차회의에서 채택된 신헌법에는 정권수립이후 최초로 맑스-레닌주의가 삭제되었다. 신헌법 제3조 참조.

71) 김일성은 정치현실주의자적 측면이 있었다. 그는 6.25때의 정치사업방법에 대한 허가이·박일우간의 노선논쟁을 비판하면서 “밥을 먹는데 바른손으로 먹든 왼손으로 먹든 또는 숟가락으로 먹든 젓가락으로 먹든 상관할 바가 아닙니다. 어떻게 먹든지간에 입에 들어가는 마찬가지로 아니겠습니까”라고 말하여 형식에 구애받지 않고 ‘실정에 맞게’ 문제를 해결하려는 의지를 표명하였다. 김일성, “사상사업에서 교조주의와 형식주의를 퇴치하고 주체를 확립할데 대하여,” 「김일성 저작집 9」, p. 477.

72) 양성철, 「분단의 정치」(서울: 한울, 1987), p. 183.

체사상은 사람중에서도 브루조아를 제외한 근로인민대중만을 세계의 주인으로 한정하고 있고 나아가 진정한 주인은 ‘수령의 교시’를 충실히 이행하는 근로인민대중 뿐이라고 규정함으로써 수령론을 그 기본핵심으로 귀결시키고 있다.⁷³⁾ 또한 맑스-레닌주의에서 주장된 집단주의는 사회정치적 생명체론에 의해 집단의 의사 즉, 수령의 의사에 의해 행동하는 것으로 논리적 비약을 이룩하고 있다.

즉 김정일은 1986년 「주체사상교양에서 제기되는 몇가지 문제에 대하여」에서 사회정치적 생명체론에 대해 다음과 같이 설명하였다.

인민대중은 당의 령도하에 수령을 중심으로 조직사상적으로 결속하게 되고 영생의 자주적 생명력을 지닌 하나의 사회정치적 생명체를 이루게 됩니다. 개별적인 사람들의 육체적 생명은 끝이 있으나 자주적인 사회정치적 생명체로 결속된 인민대중의 생명은 영원합니다... 개별적인 사람들의 생명중심이 뇌수에 있듯이 사회정치적 집단의 생명중심은 그 집단의 최고뇌수인 수령입니다. 수령을 사회정치적 생명체의 최고뇌수로 삼는 것은 바로 이 생명체의 생명활동을 통일적으로 지휘하는 중심이기 때문입니다. 수령은 인민대중의 자주적 요구와 이해관계를 분석·종합하여 하나로 통일하는 중심임과 동시에 그것을 실현시키기 위한 인민대중의 창조적 활동을 통일적으로 지휘하는 중심입니다.⁷⁵⁾

73) 주체사상의 인간론에 대한 자세한 설명은 현원석, 「주체의 인간론」(東京: 구월서방, 1992)과 한중모, 「주체의 인간학」(평양: 사회과학출판사, 1987) 참조.

74) 사회과학출판사, 「위대한 주체사상총서 9: 령도체계」(평양: 사회과학출판사, 1985), p. 27.

75) 김정일, “주체사상교양에서 제기되는 몇가지 문제에 대하여,” 조선중앙통신사 편, 「조선중앙년감 1987」(평양: 조선중앙통신사,

사회정치적 생명체론은 집단주의에 근거한 것으로 여기에서의 집단은 사회, 국가, 당을 지칭하고, 결국에는 수령(김일성)으로 귀결된다. 북한의 주장에 의하면

집단주의는 사회적 존재인 사람의 본성적 요구이며 당과 혁명, 조국과 인민을 위해 모든 것을 다바쳐 싸우는 주체형의 혁명가의 중요한 품성입니다. 사람은 사회적 집단속에서만 자기 운명을 자주적으로 창조적으로 개척해 나갈 수 있으며 사회의 정치적 생명을 빛내이면서 보람있는 삶을 누릴 수 있습니다. 집단주의는 노동계급의 본질적 특성의 하나이며 자주적 인간, 주체형의 공산주의 혁명가들의 활동원칙이다. 집단주의는 노동계급을 비롯한 근로인민대중의 자주적인 지향과 요구를 훌륭히 실현할 수 있는 것으로 해서 주체형의 혁명가들이 지녀야 할 고상한 혁명정신으로 됩니다.⁷⁶⁾

또한,

개인주의적 인생관은 개인의 안일과 향락을 최고의 목적으로 여기는 인생관이라면 집단주의적 인생관은 자기의 운명을 집단의 운명과 결부시키고 집단을 위한 투쟁에서 삶의 보람과 행복을 찾는 인생관이다. 개인주의적 인생관에서는 개인의 생명보다 더 귀중한 것이 없으며 인생은 개인의 한생으로 끝나는 것으로 된다. 그러나 집단주의적 인생관에서는 개인의 생명보다 집단의 생명이 더 귀중하며 인생은 개인의 한생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집단과 더불어 영생하는 것으로 된다. 개인의 안일과 향락을 최고 목적으로 여기는 개인주의적 인생관이 사람들을 자기 한몸의 안일만을 추구하게 하는 동물적인 삶을 누리게 한

1987), pp. 166~67.

76) 「조선중앙방송」, 1993.1.22.

다면 집단주의적 인생관, 주체의 인생관은 당과 수령의 영도밑에 인민 대중의 자주성을 실현하기 위한 공동위업에 몸바쳐 투쟁하는데서 보람찬 삶을 누리도록 고무추동합니다. 주체의 인생관은 육체적 생명보다 사회정치적 생명이 더 귀중하며 개인의 생명보다 사회적 집단의 생명이 더 귀중하다는 것을 밝혀 줍니다. 사회정치적 생명은 혁명하는 사람들이 지니게 되는 생명, 당과 수령을 중심으로 하나의 사회정치적 생명체로 결합될 때에만 가지게 되는 생명이다. 개인의 육체적 생명에는 한계가 있지만 혁명가가 지닌 사회정치적 생명에는 한계가 없습니다. 그것은 당과 수령을 중심으로하는 사회정치적 생명체와 더불어 영생하는 것입니다.⁷⁷⁾

라고 설명하고 있다.

결국 집단주의적 생활은 사회정치적 생명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필수이고 이것은 곧 '생명의 창시자'인 수령중심의 생활태도를 의미한다. 따라서 이러한 범주에서 이탈한 자들은 자유주의자로 규정되어 생명을 박탈당하게 된다. 즉 주체사상은 세계의 주인인 주체적 인간을 통해 공산사회를 건설하겠다는 의도와는 달리 김일성만을 '유일신'으로 숭배하는 몰인격화된 비주체적 인간만을 양산하는 결과를 초래하였다.⁷⁸⁾

77) 「조선중앙방송」, 1993.1.27.

78) 都興烈, “朝鮮勞動黨의 充員과 政治社會化,” 大陸研究所, 「北韓研究」, 제2권 제3호 (1991 가을), p. 86.

2. 리더십의 性格

북한 정치체제의 특징인 수령론적 유일지배체제는 김일성·김정일이라는 자연인과 밀접한 관계에 있다고 할 수 있다. 왜냐하면 북한이 오늘날과 같은 견고한 정치체제를 유지할 수 있었던 것은 김일성의 카리스마 창출과 김정일의 카리스마 운동이 결합된 결과라고 할 수 있기 때문이다.⁷⁹⁾ 주체사상의 수령론에서 고찰되듯이 수령, 즉 김일성은 ‘신’으로, 김정일은 ‘신의 아들’로 추앙되고 있다. 따라서 김일성·김정일은 국가와 동일시되고 인민들은 이들의 언어행동을 무오류성을 지닌 ‘성서’로 받아들이고 이를 준수하지 않았을 때는 ‘천벌’을 받을 것으로 생각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즉 김일성·김정일은 존경의 대상이자 외경의 대상이라 할 수 있다.

그렇다면 김일성은 구체적으로 어떤 인물인가? 김일성은 권력에 대한 의지가 강하고 권력쟁취에 필요한 권모술수와 관용을 소유한 자로 알려져 있다.⁸⁰⁾ 권력에 대한 의지는 인간의 기본적 욕구중 하나지만 김일성의 그것은 일상적 차원을 초월한 것으로 보인다. 즉 그는 카리스마적 지배자가 소유해야 할 요건인 대담성, 예측능력, 추진력, 조직력 등을 균형있게 갖추고 있다고 할 수 있다.⁸¹⁾ 더불어

79) 朴漢植, “김일성시대 이후의 김일성 카리스마,” 朴漢植 編, 「北韓의 實相과 展望」 (서울: 동화연구소, 1991), p. 124.

80) 양성철, 「분단의 정치」, p. 182.

81) Suh Dae-sook, *Kim Il Sung: The North Korean Leader* (New York: Columbia University Press, 1988), p. 107.

그의 항일빨치산 운동을 통한 위기타개 경험⁸²⁾은 목적달성을 위한 효율적 수단의 동원방법을 터득시켜 주었다.

빨치산식 위기타개 방식은 「先大後小」, 「先公後私」 논리를 덕목으로 하고 있고 사활적 문제해결 방식만이 최선이라는 인식을 갖도록 하였다.⁸³⁾ 이러한 김일성의 개인적 성격과 경험은 인간관 형성에 중요한 역할을 하였고 이것은 권력장악후 정권유지를 위한 인권탄압정책으로 구체화되었다고 할 수 있다. 즉 그의 빨치산경험은 개인적 욕망을 국가적 목표로 동일시하도록 하였을 것이고 결과지향적인 그의 성격을 더욱 공고화시켜 수단에 대한 가치판단을 유보하도록 하였을 것이다.⁸⁴⁾

82) 와다 하루끼, 이종석 역, 「김일성과 만주항일전쟁」 (서울: 창작과 비평사, 1992), p. 97.

83) 이와 같은 추론은 김일성의 다음 연설에서 증명되어 진다. “항일 무장투쟁의 불길속에서 자라난 우리 공산주의자들은 1920년대 우리나라 공산주의 운동의 고질로 되어 있던 종파주의를 철저히 극복하였을 뿐만 아니라 … 그 어떤 역경속에서도 동요없이 조선혁명의 정당한 로선 관철을 위하여 자신의 청춘과 생명을 서슴없이 바쳐싸워온 가장 철저한 혁명가들입니다. … 우리 공산주의자들은 그 어떤 벼슬이나 개인의 공명과 출세를 바라며 부귀영화를 누리기 위하여 혁명을 하는 것이 아니라 조국의 자주독립과 인민의 자유행복을 위하여 … 투쟁하는 것입니다.” 김일성, “해방된 조국에서의 당, 국가 및 무력건설에 대하여,” 「김일성 저작집 1」, pp. 252~67.

84) 이것은 다음과 같은 김일성의 연설에서 유추할 수 있다. “우리는 항일무장투쟁의 시련속에서 단련육성된 혁명투사들을 골간으로 하고 로동자, 농민을 비롯한 근로인민의 아들딸로 혁명군대를 창건 하여야 합니다. 혁명무력을 건설함에 있어서 우리는 항일무장투쟁

김정일 또한 후천적 노력의 결과이긴 하지만 인민들의 욕망과 욕구를 감지하는 능력,⁸⁵⁾ 문제점에 대한 저돌적 해결능력,⁸⁶⁾ ‘통이 큰’ 결정능력, 예술에 대한 탁월한 감각 등을 소유한 자로서 일상적인 문제를 전투, 투쟁 등으로 전화시켜⁸⁷⁾ 김일성처럼 「전부 아니면 전무」식의 좌편향적 업무행태를 취함으로써 반대자에 대한 인권을 무시하여 왔다. 물론 김정일은 혁명후세대로서 김일성의 강경정책대신 상징조작과 구호에 의한 동원수단을 창안해내는 등의 강온양면책을 사용, 2중 성격적 측면을 보이고 있다.⁸⁸⁾

김정일의 구호중심정책은 인간개조와 사상개조를 중요시하도록 하였고 주체사상을 유일사상으로 믿도록 함으로써 인민들을 우민화하였다.⁸⁹⁾ 결국 김정일은 북한을 주체사상의 기본논리인 ‘자주와 창조’를 상실한 기계적 인간만이 생존할 수 있는 사회로 전락시켰다. 김정일이 등장한 1970년대초 이후 북한의 인권탄압정책이 인

시기 인민혁명군 대원들 속에서 발현된 조국과 인민에 대한 열렬한 사랑과 적에 대한 불타는 증오심 ... 상하일치, 군민일치의 전통적기풍, 혁명적 동지애와 인민적 사업작풍 등을 계승하여...”, 위의 책, p. 265.

85) 최은희·신상욱, 「조국은 저하늘 저멀리(하)」(C. A.: Pacific Artist Cooperation, 1988), pp. 227~29.

86) 위의 책, p. 116.

87) 북한에서의 ‘전투’, ‘투쟁’ 등의 구호는 위기감조성을 통한 대중동원정책이라 할 수 있다. 이것은 1974년 김정일에 의해 주도된 「70일 전투」가 시발점이었다.

88) 陳性桂, 「金正日」(서울: 同和研究所, 1990) 참조.

89) 金甲喆·高性俊, 「主體思想과 北韓社會主義」(서울: 文佑社, 1988), p. 214.

간개조라는 명분으로 사상탄압에 보다 많은 비중이 주어진 것도 이러한 맥락의 소산이라 할 수 있다.⁹⁰⁾

3. 家父長制的 政治文化

유교사상은 한국 고대사회가 중국문화와 교류하는 과정에서 신라·고려때부터 유입되기 시작하였다. 유교사상은 한반도에 전래된 이래 삼국시대에는 충·효·의·용의 도덕정신으로 전화되었고 고려 전반기를 통해 사회제도 및 교육제도로 발전되었다. 또한 유교사상은 충성과 효도를 공동체규범으로 제시하였고 禮를 중시하였다. 그리고 이것은 통치원리로 채택되었다. 특히 조선왕조시대에는 상명하복을 요체로 하는 엄격한 위계질서가 배태되었고 왕은 부모와 동일시됨으로써 왕의 권위는 절대시되고 국민은 이에 복종해야하는 가부장제적 정치문화가 형성되었다.⁹¹⁾

결국 이러한 정치문화는 상하간 의리와 위계질서의 중시, 관준민비사상, 순종의 미화, 국가와 지도자의 동일시, 가족주의의 중시, 사대주의 등의 부작용을 양산하였다. 이러한 정치문화적 속성은 구한말 개화파들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근본적 변화를 거치지 못한 채 천황제를 통치근간으로 한 일본제국주의에 의해 더욱 정교화

90) 김정일이 1982년 「주체사상에 대하여」를 발간함으로써 완성되었다고 하는 주체사상의 핵심내용들이 인간의 정신개조에 역점을 두고 있다는 데에서도 이러한 사실들이 증명된다.

91) 金浩鎭, 「韓國政治體制論」(서울: 博英社, 1990), pp. 247~48.

되었다. 일본 군국주의는 식민통치에 유리한 복종문화를 계승하여 자유주의와 민주주의의 맹아를 철저히 파괴하였다. 특히 일제는 한국민을 열등민족으로 비하시켰고 ‘우등한’ 천황의 지도에 의해서만 가치가 실현될 수 있다는 우민화교육을 반복함으로써 한국민들의 자율능력을 상실케 하였다.⁹²⁾

한편 해방후 북한에는 남한과는 달리 맑스-레닌주의에 근거한 프롤레타리아 독재체제가 수립되었다. 김일성은 프롤레타리아 독재를 스탈린식 독재로 변형시켜 반대자를 억압하고 인민을 탄압하는 도구로 사용하였다. 또한 그는 권력유지를 위해 프롤레타리아 독재를 국민의 복종적 정치문화와 접목시켰다. 그는 가정의 부모를 상징하는 아버지 용어를 원용하여 그를 ‘국가의 아버지’로 섬기도록 하였다. 또한 그는 사상개조를 통해 충성과 효성을 강조하여 ‘충성동이,’ ‘효성동이’를 중요시 하였다. 그는 정치적 통치행위까지도 부모와 자식간에만 형성될 수 있는 ‘육친적 배려’를 강조함으로써 인민들로 하여금 자신과 부모를 동일시 하도록 하였다. 육체적 생명을 준 아버지와 사회정치적 생명을 준 수령을 동일시 하도록 의식화함으로써 부모의 책망을 감수하듯이 수령의 책망을 감수하도록 하고, 부모의 약점을 비난할 수 없듯이 수령의 약점을 비난할 수 없도록 만들었다.

92) 김운태는 일제의 폐해에 대해 ① 민족성의 마비 ② 불신·부정심리의 배양 ③ 형식적 법규만능주의 ④ 특별권력관계이론 ⑤ 권위주의 ⑥ 폭력주의 등을 들고 있다. 金雲泰, 「日本帝國主義의 韓國統治」(서울: 博英社, 1986), p. 506.

또한 김일성은 가부장적 정치문화를 이용하여 세습까지 정당화하고 있다. 그는 조선조 사대부들의 지배윤리였던 ‘혁명적 의리’를 매우 중시하고 있고 ‘사회주의 대가정’론을 주장하여 국가를 하나의 대가정으로 규정하고 있다.⁹³⁾ 이것은 가장인 김일성이 장남인 김정일에게 가업을 물려주는 것은 당연한 것으로 합리화하는 기제로 사용되어지고 있다.⁹⁴⁾ 물론 인민들은 순응적 태도를 미덕으로하고 있고 따라서 지도자에 대한 반항을 죄악시함으로써 김일성 체제를 정당화시키는 역할을 하고 있다.

4. 分斷構造

북한은 자본주의 체제인 남한과 경쟁하여 사회주의 체제 우월성을 입증함으로써 한반도내의 정통성을 획득하려고 노력해 왔다. 즉 북한의 국가목표중 하나는 전한반도를 공산화하는데 두어져 왔다.⁹⁵⁾

93) 북한은 북한사회를 “위대한 수령을 아버지로 모신 하나의 혁명적 대가정”이라고 규정하면서 전체인민들이 혁명적 동지애와 의리를 발휘, “화목한 사회주의 대가정”을 이룩하자고 촉구하였다. 「로동신문」, 1993.7.1. 사설.

94) 북한은 “오늘 우리인민은 김정일동지를 아버지로 모시고 있기에 그 어떤 공세에도 끄떡없이 사회주의 위업은 승승장구하고 인민의 행복은 활짝 꽃피나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조선중앙방송」, 1993.6.29.

95) 북한 조선노동당 규약 전문에는 “조선로동당의 당면목적은 공화국 북반부에서 사회주의의 완전한 승리를 이룩하며 전국적 범위에서 민족해방과 인민민주주의혁명과업을 완수하는데 있으며 최

결국 북한의 정치·경제·군사·외교 목표는 남한을 고립화하고 그것을 점령 내지는 자체붕괴하도록 유인하는데 있었다.⁹⁶⁾ 이러한 맥락에서 김일성을 중심으로한 북한지도자들은 어느 일부분에서라도 남한보다 낙후되면 한반도에서의 정통성을 상실할지도 모른다고 판단하여 동원체제, ‘철통’체제, ‘냉동’체제를 통한 대남한 우위를 확보하려한 것으로 생각된다.⁹⁷⁾ 대남 군사·경제·외교적 우위의 확보는 김일성 정권의 최대 현안이었고 이를 위해 김일성은 남한과의 경쟁에서 ‘완전’ 승리할 때까지 정치적 부자유와 경제적 궁핍을 인내하도록 인민들에게 사상교양을 실시하여 왔다.

한편 역대 남한정부의 군사문화적 성향도 북한 인권통제정책을 상승시켜주는 요인이 되었다고 볼 수 있다. 남한정권은 북한정권

종목적은 온사회의 주체사상화와 공산주의사회를 건설하는데 있다.”고 명시되어 있다. 당규약 전문은 李相禹 外, 「북한40년」(서울: 乙酉文化社, 1988), p. 626 참조.

96) 당규약전문에는 “조선로동당은 남조선에서 미제국주의 침략군대를 몰아내고 식민지통치를 청산하며 ... 남조선인민들의 사회민주화와 생존권투쟁을 적극 지원하고 ...”로 규정되어 있다. 위의 책, p. 627.

97) 북한은 남한에 대한 우월성을 부각하고 있다. 즉 김일성은 노동당 4차대회에서 “오늘 공화국 북반부에서의 사회주의 력량의 장성과 사회주의제도하에서의 북반부인민들이 자유롭고 행복한 생활은 남조선의 로동자와 농민은 물론 민족부르조아까지 포함하는 모든 애국적 력량에 거대한 혁명적 영향을 미치고 있으며 ...”라고 말하여 대남 우월감을 표출하였다. 김일성, “조선로동당 제4차대회에서 한 중앙위원회 사업총화 보고,” 「김일성 저작집 15」(평양: 조선로동당출판사, 1981), p. 173.

성격과는 반대되는 자본주의적인 것이었기 때문에 북한은 ‘해방’의 대상이었고 따라서 남한정부의 기본적 대북정책은 북한해방론과 붕괴론에 근거한 것이었던 것이 사실이다. 이승만·박정희·전두환·노태우 정권의 대북인식은 동반자보다도 타도 내지는 극복 대상이었던 것이다. 즉 노태우 정권 이후 북방정책을 통해 북한에 대한 인식의 전환이 전개된 것도 사실이지만⁹⁸⁾ 이것 또한 모스크바와 북경을 통한 북한 ‘고사’정책이었던 것이다. 이러한 대북태도는 북한이 ‘남한의 위협’에 대해 사활적 대응을 하도록 만든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최근 북한은 ‘붕괴 콤플렉스’에 걸려 있는 것으로 보인다. 어쨌든 북한의 대남인식태도는 북한인권을 유보시키는 주요 요인이 되었다고 볼 수 있다.

또한 남한사회 성격도 북한의 인권탄압을 정당화시켜주는 하나의 요인이 되었다. 즉 북한은 남한과 미국과의 관계를 ‘신식민지’ 관계로 규정하고 동포인 한국이 ‘철천지 원수’인 미국의 후원하에 대화가 아닌 무력으로 통일하려 한다는 인식을 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⁹⁹⁾ 따라서 북한은 남한을 자주국가로 인정치 않고 미국의

98) 대표적인 것은 「7·7선언」이다.

99) 김일성은 “미제국주의자들과 그리고 일본군국주의자들의 비호밑에 남조선괴뢰들은 조선의 통일은 오직 ‘승공통일’이어야 하며 이를 위해서는 힘을 키워야 한다고 ... 떠들어 대고 있습니다. 이것은 남조선 혁명을 말살하고 나아가서는 공화국북반부를 무력으로 침공하려는 침략적 야망을 가리우기 위한 연막에 지나지 않습니다”고 강조하였다. 김일성, “조선로동당 제5차대회에서 한 중앙위원회사업총화보고,” 「김일성 저작집 25」 (평양: 조선로동당출판사, 1983), p. 313.

속국으로 규정,¹⁰⁰⁾ ‘남반부 해방’시기까지 모든 자유와 권리를 유보하는 명분으로 삼고 있다.¹⁰¹⁾ 최근 핵개발문제와 관련한 남한의 피동적 태도는 북한의 신식민지적 대남관에 정당성을 부여해주고 인권탄압정책의 정당성을 증대시켜주는 구실이 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남한의 국내 정치·경제적 상황 또한 북한 인권탄압의 원인이 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자본주의 이념을 발전이데올로기로 채택하고 있는 남한은 각종 사회악을 내포하고 있고 이러한 역기능적 요소들은 남한이 ‘악의 소굴’인 것처럼 북한 지배자들에 의해 과대 선전되고 이것은 북한 인민들에게 실상으로 각인되어 진다. 즉 북한인민들은 남한을 기아와 범죄, 부패, 부자유 국가의 표본처럼 인식하고 있고¹⁰²⁾ 남한인민들의 ‘구원’을 위해 인권유보를 감수해야

100) 「평양방송」, 1993.4.27. 여기에서 북한은 “남조선에서 모든 권력을 틀어 쥐고 있는 실제적 통치자는 바로 다름아닌 미제입니다”고 주장하고 있다.

101) 북한 인민학교 4학년 국어 교과서에는 다음과 같이 기술되어 있다. “지금도 우리나라 남녘땅에는 지주놈들이 판을 치고 있습니다. ... 사람들의 피를 빨아 제배를 채우는 악독한 원쑤놈들을 모조리 때려부시지 않고서는 우리들이 절대로 행복하게 살수 없습니다.” 평양교육도서출판사, 「국어(4학년용)」(1985), 제28과 “순이를 생각하며,” p. 85.

102) 란코프, 「평양의 지붕밑」(서울: 연합통신, 1991), pp. 117~18. 김일성은 해방 15주년 기념연설에서 “남조선의 수백만 실업자들과 벌어먹는 어린이들의 비참한 처지를 우려하며 ...”라고 말하였다. 김일성, “조선인민의 민족적 명절 8.15해방 15돐경축대회에서 한 보고,” 「김일성 저작집 14」(평양: 조선로동당출판사, 1981), p.

한다고 생각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¹⁰³⁾ 중요한 것은 이러한 대남 인식이 북한인민들에게 남한에 대한 상대적 우월감을 갖게 함으로써 정치적 나르시즘에 몰입되도록 하여 독재에 대한 항거의식을 마비시키게 한다는 점이다.

246.

- 103) 김일성은 북한인민들이 ‘영웅적투쟁과 헌신적 로동으로’ 강력한 중공업기지를 건설하였으며 자립적 민족경제의 토대를 닦아 놓았다고 말함으로써 북한인민들의 인권유보를 간접적으로 시인하였다. 김일성, “조선인민의 민족적 명절 8.15해방 15돛경축대회에서 한 보고,” 「김일성 저작집 14」, pp. 223~24.

第 IV 章 北韓 人權統制의 實相

1. 法的 統制와 抑壓機構의 發達

가. 社會主義 國家에서의 法機能

프롤레타리아 독재하의 사회주의 법은 단순히 경제적 하부구조의 반영으로만 인식되는 것이 아니고 그 자체가 하부구조를 개조·발전시킬 수 있는 질적으로 새로운 창조적 기능을 가진다고 할 수 있다. 이러한 주장에서부터 사회주의 법은 사회적 관계와 경제적 생산력을 법에 의하여 조정·계획하고 나아가서 인간의 사상과 감정까지도 계획적으로 개조하는 역할을 담당해야 한다는 논리가 나오게 된 것이다.¹⁰⁴⁾

레닌에 의하면 半國家의 법은 세가지 기능을 가진다. 첫째, 이미 타도된 유산계급의 반항을 억압, 제거하는 진압기능을 가지며 둘째, 새로운 공산주의적 경제질서의 확립을 위한 경제조직자로서의 기능을 가지며 셋째, 공산주의 사회에서 하등의 법적 강제를 받지 않고서도 자율적으로 생활할 수 있는 새로운 형의 인간을 만들어 내는 인간개조의 기능을 가진다는 것이다.¹⁰⁵⁾ 이러한 기능중 법분야가 담당하는 것은 셋째의 기능이라고 볼 수 있다. 레닌은 사회

104) 張明奉, “共產主義 憲法の 概觀,” p. 100.

105) 위의 글, p. 98.

주의 단계에서 국가의 강제력을 통한 법집행에 의하여 인간을 공산주의 사회에 적합하게 만들려고 하였다. 즉 그는 공산주의적 인간의 '위로부터의' 주조를 도모하였다.¹⁰⁶⁾

법은 국가형태와 관계없이 특정 계급에 의해 주도되는 정치공동체의 질서확립 기능을 하는 측면이 있다.¹⁰⁷⁾ 일반적으로 헌법은 국민의 정치적 통일을 이루고 일체감을 조성하는데 기여한다. 즉 헌법에 보장된 기본권 규정은 시민들로 하여금 그들이 정치권력행사에 참여하며 국가가 그들을 보호하고 그들은 자유롭다는 것을 믿게 한다. 특히 헌법은 상위법으로서 정치적 공동체의 근본질서에 속하는 사항을 규정하는 임무를 지닌다. 따라서 사회주의 헌법도 예외는 아니어서 사회주의 체제유지를 위해 기능할 것인 바, 그 기능은 형식적 기능과 실제적 기능으로 구분해 볼 수 있다. 우선 형식적 기능은 국가권력의 조직, 개인의 법적 지위 규정, 사회생활에서의 정치적·도덕적 가치 확립 등 세가지를 들 수 있다.

첫째, 기본적으로 사회주의 헌법은 자유주의 헌법처럼 국가권력을 제한하고 권력의 남용을 방지하는 목표를 추구하지 않는다. 민

106) 국가와 법에 관한 맑스-레닌주의 교의의 특징은 V. Chirkin, Yu. Yudin, O. Zhidkov, *Fundamentals of the Socialist Theory of the State and Law*, 송주명 역, 「맑스주의 국가와 법 이론」(서울: 새날, 1990), p. 18 참조.

107) 위의 책, pp. 224~25. 이러한 관점은 일종의 '법의 계급도구주의'라 할 수 있다. 법의 계급도구주의에 대해서는 Hugh Collins, *Marxism and Law* (London: Oxford University Press, 1982), 홍준형 역, 「마르크스주의와 법」(서울: 한울, 1990), pp. 32~45 참조.

주집중제 원칙에 의하여 모든 국가권력은 소위 최고 주권기관 또는 최고권력기관에 집중됨으로써 권력분립주의는 배제되어 있다. 모든 정치권력의 실제적 원천은 공산당이다.¹⁰⁸⁾

둘째, 사회주의 헌법도 국가내 개인의 법적 지위를 규정하고 있는데 이것은 기본권을 다루는 부분에서 취급되고 있다. 그러나 사회주의 헌법에 있어서의 기본권은 ‘인권’으로서가 아니라 ‘시민(공민)의 권리’로서 인정되고 있다. 왜냐하면 법자체가 근본적으로 개인주의가 아닌 집단주의에서 출발하고 있기 때문이다.¹⁰⁹⁾ 즉 그것은 개인이익과 집단이익의 일치라든가 권리와 의무의 결합 등과 같은 관념에서 출발하고 있어 자유민주주의적 헌법상의 기본권 개념과는 근본적으로 다르다.

셋째, 사회주의 헌법은 사회생활에서의 정치적·도덕적 가치를 규정하고 있다. 사회주의 국가에서 공민의 기본권은 4가지로 구분된다. 즉 사회·경제적 권리, 정치적 자유(liberty), 인격적 자유(freedom), 공민의 평등 등이다.¹¹⁰⁾ 구소련에서도 1936년 헌법에 비해 1977년 헌법이 ‘국가의 헌법’으로 보다는 ‘전체사회의 헌법’으로 인식되고 있고, 북한의 1972년 헌법도 1948년 헌법과 비교하였을 때 전체사회적 성격을 보유했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이러한 헌

108) 張明奉, “共產主義 憲法の 概觀,” p. 112.

109) Chirkin, Yudin, Zhidkov, *Fundamentals of the Socialist Theory of the State and Law*, 송주명 역, 「맑스주의 국가와 법 이론」 pp. 316~17.

110) 위의 책, p. 322.

법상 권리는 수사적 귀질에 불과하다. 즉 항상 국가체제유지 범위 내에서만 국민의 권리가 보장되었기 때문에 '새장안의 자유'일 수밖에 없었다.

다음으로 사회주의 헌법의 실제적 기능은 자유민주적 헌법과는 달리 이데올로기적-선전적 기능을 수행한다. 사회주의 헌법은 정치권력의 일반적이고 목적론적인 정당성 관계를 수립하는데 이바지 한다. 사회주의 통치자들은 그들 사회가 최종목적지인 공산사회에 좀 더 접근하고 있다는 선전을 계속해야 한다. 따라서 새로운 헌법의 채택은 사회발전에 있어서 더 높은 단계, 즉 '발전된 사회주의'가 성취되었음을 표시하는 하나의 상징으로 이해되고 있다. 그것은 사회주의·공산주의가 우월함을 과시하는 역할을 한다.¹¹¹⁾ 따라서 사회주의 헌법은 통합을 위한 선전기능을 수행한다. 즉 사회주의 헌법은 의식형성을 통하여 공동체의 정치적 통일체 구성에 영향을 미치는 '내적인 선전적 통합기능'을 수행한다.

다음으로 사회주의 헌법은 '외적인 선전적 허위기능'을 수행한다. 사회주의 헌법은 서구적 의미의 헌법과 용어상 동일성하다는 점을 이용하여 대외적 선전도구로 사용되어진다. 즉 사회주의 국가와 서구의 헌법이 어의상 동일하다는 점에서 사회주의 헌법은 법적 인권이 보장된 국가라는 인식을 갖게 하고 서방 국가들의 공격에 대한 방어기제 역할을 함으로써 결국 자유민주주의 사회를 기만하는

111) 梁承斗, “東歐諸國의 統治組織과 基本權 條項에 관한 考察,” 延世大學校 東西問題研究院, 「共產國家에 있어서 政策 및 政策過程의 比較研究」, 제2집 (1979), p. 49.

역할을 한다.¹¹²⁾ 물론 이러한 이데올로기적-선전적 주요 기능외에도 공산권 헌법은 한정된 범위내에서 ‘정보적 기능’과 ‘규범적 질서 기능’을 수행한다.¹¹³⁾

나.北韓法の 非人道性

북한헌법(1992년 4월 9일 개정헌법) 제11조는 “조선민주주의 인민공화국은 조선로동당의 령도밑에 모든 활동을 진행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어서 노동당의 결정이 「공화국」에 우선하는 상위규범임을 알 수 있다. 또한 조선노동당규약 전문에는 “조선로동당은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혁명사상, 주체사상을 유일한 지도적 지침으로 삼는다”라고 규정하여 노동당은 김일성의 교시에 절대 복종하여야 함을 분명히 하고 있다. 따라서 북한의 법체제는 「김일성교시」를 최고 상위규범으로 하고 다음으로 「노동당의 결정」이 있으며 헌법은 노동당결정보다 하위규범으로 되어 있다고 할 수 있다.¹¹⁴⁾ 이러한 이유로 북한형법 등 일반법률은 물론 헌법까지도 프롤레타리아 독재체제 나아가 김일성 1인독재체제 유지를 위한 도구에 지나지 않는다고 볼 수 있다.¹¹⁵⁾ 여기에서는 북한 헌법조문

112) 張明奉, “共產主義 憲法の 概觀,” pp. 113~16.

113) 梁承斗, “東歐諸國의 統治組織과 基本權 條項에 관한 考察,” pp. 49~50.

114) 崔宗고, 「북한법」(서울: 博英社, 1993), pp. 18~20.

115) 북한연구소, 「북한형법의 실상」(서울: 북한연구소, 1990), pp. 25~26.

규정과 실제내용을 비교함으로써 법의 2중성을 규명해보려 한다.

북한은 여타 사회주의 국가들과 마찬가지로 인권이라는 개념 대신에 공민권이라는 개념을 사용한다. 이것은 정치적 개념으로서 일정한 체제를 인정하고 생활하는 인간만이 인권이 있음을 의미한다. 그리고 북한은 공민의 권리와 의무를 동시에 규정하고 있고 그것도 철저히 집단주의에 입각하고 있다. 즉 헌법 제63조는 “공민의 의무와 권리는 <하나를 전체를 위하여, 전체는 하나를 위하여>라는 집단주의원칙에 기초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헌법에 규정된 모든 권리는 개인 이익이 아닌 집단 내지는 집단의 대표 즉 김일성·김정일의 이익에 부합된 범위내에서만 보장받을 수 있다고 볼 수 있다. 즉 ‘전체는 하나를 위하여’의 측면보다는 ‘하나를 전체를 위하여’의 측면이 더 강조되고 있다.

헌법 제65조는 ‘공민은 국가생활의 모든 분야에서 누구나 다같은 권리를 가진다’라고 규정하고 있는데 북한은 이 평등은 헌법상 규정된 권리의 실현에 있어서의 평등을 의미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북한은 해방 이후 여러 차례에 걸쳐 성분조사사업을 실시하여 주민들을 출신성분과 사회성분별로 엄격히 구분하고 있다. 성분에 따라 핵심계층, 기본계층, 적대계층별로 구분하여 직종과 직위를 맡기고 있으며 이 계층을 51계층으로 더욱 세분화하여 일종의 신분제도와 같은 양상을 띄고 있다.¹¹⁶⁾

116) 북한은 20여종의 김일성배지를 제작, 신분에 따라 차등적으로 패용케 함으로써 공론화시키고 있는 것으로 보여진다. 「內外通信」 제8531호, 1993.8.11.

선거권과 피선거권은 형식적으로는 만 17세 이상의 모든 국민에게 주어지고 선거의 민주적 4원칙도 명문화되어 있다(제66조). 그러나 연좌제에 의한 선거권의 박탈이나 후보자 추천과 등록·투표방법 등에서 보면 북한에서의 선거는 대내적으로 노동당에 대한 인민의 신임을 확신시키고 일당독재를 정당화하며 대외적으로는 민주주의를 실시하였다는 사실을 입증·고시하기 위한 선전적 제도로 활용되고 있다. 이것은 후보는 노동당 조직지도부에 의해 지명되고 거의 100% 투표에 100% 찬성표가 나온다는 사실에서 증명된다.¹¹⁷⁾

또한 언론·출판·집회·결사 및 시위의 자유가 보장된다고 하지만(제67조) 표현의 자유는 당의 영도와 국가의 통제하에서만 실질적으로 보장된다. 즉 언론은 노동당 대변자로서 대중선동, 대중조직, 대중비판 및 폭로 기능을 가진다. 또한 각종 출판물 역시 김일성·김정일의 치적홍보나 정부선전용에 불과하다. 물론 집회는 당정책 합리화수단으로 이용되고 있고 그것도 허가된 시간에 허가된 장소에서만 허용된다. 이와 함께 결사체는 대부분 노동당 외곽단체로서 누구나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한다.¹¹⁸⁾

신앙의 자유 역시 헌법에 명문으로 인정되어 있다(제68조). 그

117) 북한은 각 지역별로 투표경쟁을 붙여 대체로 12시 이전에 100% 투표를 마친다. 남북문제연구소, 「북한인권의 虛와 實」(서울: 남북문제연구소, 연도미상), p. 51.

118) 拙稿, “朝鮮勞動黨의 外廓團體,” 「北韓研究」, 제2권 3호 (1991 가을), pp. 106~25.

러나 ‘종교는 인민의 아편’이라고 언명한 맑스의 주장을 받아 들여 북한은 종교탄압을 꾸준히 실시하여 왔다. 북한은 종교를 계급사회에서 지배계급의 착취를 옹호하는 도구로 설명하고 있다. 따라서 무계급사회인 북한에서는 종교는 무의미하고 더구나 주체사상이라는 ‘완벽한 종교’가 존재하는 상황에서 종교는 존재의의가 없다는 태도이다.¹¹⁹⁾ 최근 대외선전 및 대남전략의 일환으로 종교활동을 일부 허용하고는 있으나(봉수교회, 장충성당, 보현사 등)이것은 대외 홍보용 차원에 그치고 있다.¹²⁰⁾

이밖에 ‘신소와 청원권’을 인정하고 있는데(제69조) 신소란 국민들이 국가기관·기업소·사회협동단체 및 개별적 일꾼들의 사업상 부족한 점과 관련하여 해당기관이나 단체에 제기하는 의견을 말한다. 또한 청원이란 국가기관·기업소·협동단체·정무원의 사업을 개선·발전시키기 위하여 국민이 제기하는 창의적인 의견을 의미한다고 풀이하고 있다. 물론 북한에서는 ‘비판과 자기비판’ 방식이 활성화되어 있는 것은 사실이다.¹²¹⁾ 그러나 이러한 방식은 형식논리에 불과하고 사전 각본에 의한 연출에 불과한 것일 뿐만 아니라 생산성 향상을 위한 실질적 내용보다는 ‘수령의 충실한 혁명전사’로 보이기 위한 集團儀式에 불과하다고 할 수 있다. 문제는 신소

119) 고태우, 「북한의 종교」(서울: 민족문화사, 1989), pp. 226~28.

120) 물론 북한에도 「천도교 청우당」을 비롯하여 「조선기독교도 연맹」, 「조선불교도 연맹」 등의 단체가 있으나 모두 조선노동당 외곽단체이다.

121) “비판과 자기비판은 일꾼들을 혁명화하는 위력한 무기,” 「근로자」(1974.4), pp. 60~64.

와 청원을 할 경우 국가보위부나 사회안전부가 필적 감정을 통해 신소자를 색출·고문하고 강제이주시킨다는 데 있다.¹²²⁾

노동에 대한 권리가 인정되는 것(제70조)은 ‘근로인민대중이 주인’이라는 북한에서는 당연한 논리이다. 그러나 이 권리는 인민경제의 계획적 발전에 의하여 보장된다고 하는데 이는 권리가 아니라 강제임을 나타내고 있다. 즉 ‘일하지 않은 자는 먹지도 말라’는 원칙하에서 국가가 예외로 정하지 않은 무노동자는 제반 권리가 박탈된다.

또한 이 권리내에는 직업선택의 자유와 취업의 완전한 보장 및 동일노동·동일임금의 원칙을 내포하고 있는 것으로 볼 수 있겠으나 직장배치가 전적으로 당의 지시에 ‘무리배치’가 이루어지고 취업대상자는 시·도 행정위원회의 노동부 또는 간부부를 통하여 배치장 혹은 소개장을 발부받아야 취업이 가능하도록 되어 있다는 점에서 개인의 직업선택권은 보장되어 있지 않다고 할 수 있다.¹²³⁾

휴식에 대한 권리도 헌법에 명문으로 보장되어 있다(제71조). 그러나 개인이 여가시간을 마음대로 활용할 수 있는 시설이 갖추어져 있지 못한 상태이며 영화나 연극도 주체사상교양의 도구로서 기능하고 있고 스포츠 활동은 국가체육(state sports)의 일환으로서 국가적 관리와 통제하에 계획·운영되고 있다. 물론 최근 골프장이나 장기모임 등이 등장하기도 하였으나 이러한 기구 역시 체제

122) 평화문제연구소, 「북한의 인권백서」, p. 113.

123) 이문웅, 「歸順者の證言을 통해 본 北韓體制 變化實態 研究」(서울: 國土統一院, 1989), p. 58.

고수를 위한 단결력 강화에 목적이 있는 것으로 사료된다.

또한 북한은 무상으로 치료를 받을 권리(제72조)에 기초하여 의료보호제, 사회보험제 및 사회보장제를 채택하고 있으며 1980년에는 「인민보건법」을 채택하기도 하였다.¹²⁴⁾ 그러나 북한이 의료기관수의 확보나 의료전달체계의 우수성을 주장하고는 있으나 의학수준과 의료기술 및 보건부문 투자부족으로 인한 제약산업의 낙후로¹²⁵⁾ 무상치료의 권리보장은 형식적인 숫자논리에 불과하다고 볼 수 밖에 없을 것이다. 또한 문제는 의술발전 목적이 인민들의 조기사망으로 인한 노동력 감소방지에 있다는 데 있다. 아울러 의약품의 절대부족은 각종 질병의 조기치료를 방해하고 부정부패의 원인을 제공하고 있다.¹²⁶⁾

교육을 받을 권리(제73조)는 사회주의적 세계관의 확립, 노동당이 부과하는 임무를 수행하는데 필요한 지식과 기술의 소유 및 노동당의 이념을 실현하는데 필요한 체력을 함양하는데 두고 있다. 즉 북한은 사회주의 건설을 위해 ‘사상적 요새’ 점령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이를 위한 방안으로 ‘전인민의 인테리화’를 교육의 당면 과제로 설정, 투자를 강화하여 왔다. 따라서 1973년부터 실시하고 있는 「11년 무료의무교육제」¹²⁷⁾나 1977년에 제정된 「사회주의 교육

124) 김일성, “인민보건법을 철저히 관철하자,” 「김일성 저작집 35」(평양: 조선로동당출판사, 1987), pp. 95~110.

125) 김일성 자신도 북한 의학수준을 높게 평가하지는 않았다. 김일성, “인민보건법을 철저히 관철하자,” 「김일성 저작집 35」, p. 98.

126) 북한은 김일성의 강조에 의해 예방의학과 동의학이 발전되어 있다. 「世界日報」, 1993.6.16.

에 관한 테제」는 공산주의적 인간교육을 위한 목적에서 설치되었다고 분석할 수 있다.¹²⁸⁾ 결국 이것은 ‘참교육’을 위한 제도는 아니고 구조화된 ‘주체인간’ 양성을 위한 김일성 유일사상 주입에 중점이 있다고 할 수 있다.¹²⁹⁾

다음으로 체제유지의 근간이 되는 북한헌법¹³⁰⁾(1987년 2월 개정 헌법)을 중심으로 법적 인권탄압 실태를 분석해 보기로 한다. 북한에서는 헌법을 사회주의 체제발전을 저해하는 제반요소에 대하여 강력한 제재를 가함으로써 인민대중의 자주적 권리와 이익을 옹호하기 위한 「프롤레타리아 독재의 예리한 무기」¹³¹⁾라고 규정하고 있다. 아울러 북한은 헌법의 노동계급적 성질을 강조하고 있다.¹³²⁾ 즉 김일성은 “우리의 법은 사회주의 사회의 법이며 프롤레

127) 여기에서 김일성은 의무교육의 목적은 사회주의의 완전한 승리에 있음을 분명히 하였다. 김일성, “전반적10년제고중의무교육과 1년제학교전의무교육을 실시할데 대하여,” 조선중앙통신사 편, 「조선중앙년감 1974」(평양: 조선로동당출판사, 1974), pp. 105~08.

128) 김일성, “사회주의교육에 관한 테제,” 「김일성 저작집 32」(평양: 조선로동당출판사, 1986), p. 372.

129) 전인영 편, 「북한의 정치」(서울: 을유문화사, 1990), p. 356.

130) 북한 헌법은 1950년 3월 3일에 제정된 후 1974년 12월 19일, 1987년 2월 5일에 각각 개정되었다.

131) 「정치사전」(평양: 사회과학출판사, 1973), p. 1249.

132) 김일성은 “나는 오늘 이 기회를 빌어 다시한번 우리 사법기관이 프롤레타리아독재의 기능을 수행하는 무기라는 것을 강조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라고 강조하였다. 김일성, “우리 당 사법정책을 관철하기 위하여,” 「김일성 저작집 12」(평양: 조선로동당출판사,

타리아독재의 기능을 수행하는 우리 국가주권의 범입니다”¹³³⁾라고 말하여 법의 계급성을 명확히 하였다.

이러한 북한 형법의 계급적 본질과 임무에 따라 형법은 사회주의 제도를 부정하는 ‘계급적 원썩’들에 대해서는 무자비한 탄압을 실시하고 김일성 부자의 권위와 위신을 훼손하는 행위는 사소한 요소에 대해서도 가장 단호한 징벌을 가하여야 함을 강조하고 있다. 또한 ‘형법의 해석 및 적용도 정치와 분리될 수 없는 것으로 높은 정치사상성이 요구됨으로 형법을 올바르게 적용하기 위해서는 계급적 입장이 철저히 지켜져야 하며 당의 지도를 받아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김일성은 “법은 전적으로 당의 정책을 실현하며 당의 정책을 옹호하기 위하여 만들어진 것이기 때문에 당의령도를 받지 않고서는 법을 옳게 집행할 수 없습니다”¹³⁴⁾고 하였다.

결국 북한 형법은 프롤레타리아 계급독재의 수단이자 김일성 부자를 보위하고 조선노동당의 정책을 뒷받침하는 도구에 지나지 않는다고 하여야 할 것이다.

일반적으로 법치국가에서는 죄형법정주의가 채택되고 있다. 그

1981), p. 211; 이러한 논리는 프롤레타리아독재를 기본논리로 삼고 있는 맑스주의적 사회주의 국가들에 있어서는 매우 보편적인 것이다. Chirkin, Yudin, Zhidkov, *Fundamentals of the Socialist Theory of the State and Law*, 송주명 역, 「맑스주의 국가와 법 이론」, p. 293.

133) 김일성, “우리 당 사법정책을 관철하기 위하여,” 「김일성 저작집 12」, p. 219.

134) 위의 책, p. 222.

러나 북한 형법 제10조는 ‘형사법에 직접 그에 해당하는 조항이 없는 범죄행위에 대하여는 그 종류와 사회적 위험성으로 보아 가장 비슷한 행위를 규정한 조항에 따라 그 책임의 기초와 범위 및 형벌을 정한다’라고 규정하여 죄형법정주의를 부정하면서 유추해석을 인정하고 있다. 또한 북한 형법 제9조에서는 범죄를 ‘국가주권과 법질서를 고의 또는 과실로 침해하는 형벌을 중 정도의 위험한 행위’로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위험성이 있다’고 인정되는 행위는 범죄가 된다.

따라서 북한 형법에 있어서 개개의 형법조문은 범죄의 예시에 불과하여 사실상 형법조문으로서의 의미가 없으며 사회주의 제도나 노동당의 정책을 반대하는 모든 행위가 범죄로 되게 될 가능성이 있다. 결국 북한은 사회주의 체제수호를 위하여 국가적 이익이나 사회의 집단적 이익을 중시하면서 개인의 권리를 경시하고 있다. 또한 북한 형법에서는 범죄를 ‘위험성이 있는 행위’라고 하면서 범죄를 전체주의적 관점에서 규정함으로써 개인의 권리보다는 집단 즉 사회주의 체제를 더욱 중시하고 있다.

북한 형법 제21조에는 형벌의 종류를 첫째, 사형, 둘째, 노동교화형, 셋째, 선거권박탈형, 넷째, 재산몰수형, 다섯째, 자격박탈 및 자격정지형 등으로 구분하고 있다. 여기에서 발견할 수 있는 북한 형벌의 특징은 반국가범죄의 경우 ‘**년 이상의 노동교화형에 처한다’식으로 규정되어 있어서 한국의 ‘**년 이하의 형에 처한다’는 식과는 대조되는 중벌위주의 형벌규정을 적용하고 있다는 점이다. 이것은 곧 일단 형을 선고 받은 자는 무한정 노동교화소를 벗어날

수 없는 인권무시적 형벌체제라 할 수 있다.¹³⁵⁾

다. 抑壓的 黨機構와 國家機關

체제유지를 위한 억압기구는 일반적으로 이념과 체제를 초월하여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 그러나 북한의 그것들은 어느 체제보다도 견고하고 방대하다는 점에서 북한 인권통제정책의 주역일 것이라는 유추가 가능하다. 여기에서는 인권탄압 기구인 당기구 및 국가보위부와 사회안전부, 수용소에 대해 고찰해 본다.

(1) 黨機構

공산주의 국가의 기본원칙은 프롤레타리아독재를 표방하여 공산당이 국가기관 및 모든 단체에 대한 지도적 위치를 점유한다는 것이다. 즉 공산당은 공산국가의 모든 권력의 원천이 되고 있고 국가기관은 공산당의 권력과 주도에 의해서 채택된 정책을 당의 지도와 감독하에서 집행할 뿐이다. 따라서 북한에서는 민주사회에서 발견할 수 있는 다양하고 경쟁적인 이익집단들의 자기의 집단이익 확보를 위한 정치과정에서의 자유로운 참여는 상정키 어렵다.

북한인민의 정치참여는 당의 직접적 통제하에 있는 외곽단체를 통한 간접적 참여방법으로 이루어진다. 즉 북한의 사회단체는 서

135) 북한 형법 제44조부터 제53조 참조. 북한 형법 전문은 최종고, 「북한법」, pp. 213~29 참조.

구적 의미의 이익단체나 압력단체가 아니라 조선노동당의 강령을 성실히 수행하는 외곽단체로서 ‘당과 인민을 연결해주는 인전대’인 것이다.¹³⁶⁾

북한에서는 주로 당세포가 당정책 수행여부를 감시·통제한다. 당세포는 공장, 기업소, 협동조합, 각급기관단체에 3명이상만 있으면 조직이 가능하다.¹³⁷⁾ 그리고 당세포는 생산단위에 입각하여 조직되는 바, 당세포조직은 초급당조직, 부문당조직, 시군당조직, 도당조직, 중앙당조직에까지 확대·발전되어 있다. 즉 당세포조직은 주로 통제 및 능률의 극대화와 신속성에 중점을 둔 생산단위조직에 맞춰 조직되어 있다. 따라서 세포핵의 확산과정과 유사한 공산당조직 방법은 철저한 하향식이기 때문에 당중앙의 결정을 무조건적으로 추종하여야 한다.¹³⁸⁾

당조직은 당원 상호간은 물론 일반인민들을 감시·통제한다. 당규약 제6장 45조에는 당기층조직의 임무를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다. 즉 ‘당원들과 근로대중속에서 당의 유일사상체계를 철저히 확립하며 그들을 당의 유일사상으로 튼튼히 무장시키며 그들이 당의 로선과 정책을 무조건 접수하여 끝까지 옹호관철하도록 하며 당의 유일사상에 어긋나는 자본주의 사상, 봉건적 유교사상, 수정주의, 교조주의, 맹종주의, 종파주의, 지방주의 및 가족주의에 대해

136) 당규약 제9장 56조.

137) 당규약 제6장 42조.

138) 당규약 제2장 11조에 의하면 하급당 조직은 상급당 조직의 결정을 무조건 따르도록 되어 있다.

견결히 투쟁하며 주체사상에 기초한 당의 통일과 단결을 끊임없이 강화한다'¹³⁹⁾고 되어 있다.

한편 당기구중 당간부와 당원들을 감시·통제하는 기구는 당비서국 조직지도부이다. 당비서국 전문부서는 27개로 구성되어 있는 바, 그 중에서도 '조직지도부'는 실질적인 최고 권력기관이다.¹⁴⁰⁾ 김정일이 직접 부장을 맡고 있는 데 조직은 1~13과까지로 되어 있으며 담당 부부장이 25명이 있다.¹⁴¹⁾ 이 부는 국가 전기관과 해당분야의 당조직을 「3線(당조직계통·행정계통·보위부계통)·3日報告統制體制」를 통해 지휘·통제하는 바, 구체적인 임무는 당생활 지도와 간부들의 인사를 관장하며 간부들의 私生活을 파악하는 등 2가지이다.¹⁴²⁾

즉 조직지도부는 김정일의 직접 관장하에 관료들에 대한 물리적 감시와 통제 및 「비준제도」에 의한 인사관리를 통해 충성과 효성을 도출시키는 역할을 한다. 따라서 그들의 권한은 초월적으로 되고 결국 관료주의가 생성되게 된다. 결국 김일성·김정일은 관료주의의 병폐가 「우리식 사회주의」를 붕괴시키는 원인이라는 진단

139) 당규약 제6장 45조.

140) 김일성은 “당사업이 잘되고 안되고 하는 문제는 당위원장, 당위원회에 많이 달려있으며 특히 당조직부의 역할에 크게 달려 있습니다”고 강조하였다. 김일성, “당조직사업과 사상사업을 개선강화할데 대하여,” 「김일성 저작집 16」(평양: 조선로동당출판사, 1982), p. 145.

141) 중앙당 조직지도부 조직표는 「世界日報」, 1993.1.6 참조.

142) 申敬完, “金正日體制의 強點과 弱點 그리고 人民항거,” 「月刊中央」(1991.7), p. 442.

을 하게 되어 「인민대중중심의 우리식 사회주의」를 표방하고 관료주의에 대한 강도 높은 비난을 하게 되었다.¹⁴³⁾ 그럼에도 불구하고 당조직에 의한 인민들의 피해는 증가추세에 있는 것으로 보인다.

(2) 國家保衛部

국가보위부는 1947년 2월 북조선인민위원회 보안국으로 출발하여 1948년 9월 북한정권 수립시에는 내무성 특수정보처, 1949년 6월에는 내무성 정치보위국, 1951년 3월에는 내무성과 분리되어 사회안전성으로 독립되었다. 1952년 10월 내무성 사회안전국으로 흡수된후 또다시 1962년 10월 사회안전성으로 업무가 이관되었다. 이후 1972년 12월 신헌법 채택과 함께 사회안전부 정치보위국으로 유지되다가 1973년 2월에는 국가정치보위부로 독립되었고 1982년에 현재의 국가보위부로 명칭이 바뀌었다.¹⁴⁴⁾

국가보위부는 반당, 반체제음모자 색출, 검거 및 특정지역내에 잠입한 간첩의 색출과 간부들과 인민들의 동태감시, 국내외 정보

143) 김정일은 “로동계급의 당이 정권을 잡으면 일부 일꾼들 속에서 세도와 관료주의를 부리면서 권력에 의거하여 모든 문제를 해결 하려는 경향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고 말하였다. 1991.5.5,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책임일꾼들과 담화,” 「중앙방송」, 1991.5.27.

144)北韓研究所, 「北韓總覽」(서울:北韓研究所, 1983), pp. 262~63. 1993년에 그 명칭이 「국가안전보위부」로 바뀌었다는 주장이 있음.北韓問題研究所, 「最近北韓實相」(서울:北韓問題研究所, 1993.10), p. 14.

수집·분석, 남한정보수집·분석, 국경경비와 치외법권 지역 감찰, 정치범 동태파악 등을 통해 체제유지를 그 주요임무로 하고 있다. 이러한 특수임무로 인해 당도 이 기구의 업무를 직접 간여하지 못할 정도이다. 사회안전부는 치안유지를 주임무로 하면서 수사 및 인원동원에 있어서 국가보위부의 업무수행을 전적으로 협조하여야 한다. 즉 간첩이나 반당, 반체제행위자를 검거하였을 때 보위부에 즉시 이관하여야 한다.

국가보위부는 주석의 직속기관이면서 김정일이 부장직을 겸하고 있는 당조직지도부의 통제하에 있다.¹⁴⁵⁾ 이 기관의 업무 성격상 조직은 거의 파악되지 않고 있으나 중앙에는 국가보위부가 있고 각 시·도·군에 당해 보위부가 지역단위로 설치되어 있으며 군부내에도 중대단위까지 보위지도원이 파견되어 있고 이들 조직은 군부대식의 위장명칭을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¹⁴⁶⁾ 북한인민들은 보위부들의 감시로 인한 공포심에서 체제비판은 물론 생활상의 불평조차 표출하지 못하고 묵시적 복종을 하고 있다.¹⁴⁷⁾ 국가보위부는 교화소도 독립적으로 설치·운영하도록 되어 있다.

한편 국가보위부는 김일성과 김정일에 대한 정치적 반대자들을 암살하기 위해 훈련된 15~20명으로 구성된 특수팀이 1천여개정도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이 특수팀에 의해 행해진 암살에 관

145) 김정일이 위원장인 국방위원회 산하라는 주장도 있음. 위의 책, p. 14.

146) 위의 책, p. 263. 자세한 조직표는 「世界日報」, 1993.3.10 참조.

147) 1992년 6월 30일 귀순자 김영성씨의 증언.

한 미확인보도가 있었는 바, 그 중에는 1975년 10월 의문의 교통 사고로 죽은 전 부수상 남일의 죽음도 이들에게 책임이 있다는 주장이 포함된다. 미확인보도에 의하면 각도마다 사회안전부가 특수 처형소를 운영하고 있다고 한다. 김일성·김정일을 비방한 자 즉 유일사상 위반자들은 쇠몽둥이로 머리를 쳐서 죽인다는 소문도 있다.¹⁴⁸⁾

(3) 社會安全部

사회안전부는 일반치안유지를 담당하는 기관이다. 1948년 9월 북한정권수립 당시에는 내무성산하의 局 형태로 존속하다가 1951년 3월 사회안전성으로 분리·독립한 후 1952년 10월 다시 내무성으로 흡수되었다. 이후 1962년 10월 사회안전성으로 재분리된 후 1972년 신헌법 채택과 함께 국가정치보위부로부터 분리되어 사회안전부로 개칭된 후 현재에 이르고 있다.¹⁴⁹⁾

사회안전부의 주요임무는 프롤레타리아독재를 강화하고 사회건설에 방해가 되는 일체의 반체제적 요소를 적발·제거하고 전인민을 김일성 유일체제하로 동원하는 임무를 맡고 있다. 구체적인 임무는 다음과 같다. ㉠ 반국가행위 감시와 적발·처벌, ㉡ 반혁명행위의 감시와 적발·처벌, ㉢ 회색분자·불평분자·종파분자·지방

148) 아시아감시위원회·미네소타변호사 인권위원회, 송철복 외역, 「북한의 인권」(서울: 고려원, 1990), pp. 94~95.

149) 위의 책, p. 113.

주의자 등 일체의 반주체주의자의 적발·처벌, ㉔ 배경 및 신원조사, ㉕ 출입국자 신원조사, ㉖ 외국방문객의 감시, ㉗ 지방치안유지, ㉘ 각종범죄단속, ㉙ 국가기관과 고위간부의 경비 및 지역경비담당, ㉚ 교통질서 및 방화대책, ㉛ 인구조사(유동인구, 실종자 파악), ㉜ 감시인사찰, ㉝ 신분등록사업(출생, 사망, 결혼신고, 거주이동업무), ㉞ 비밀문서보관 관리, ㉟ 교화소 및 노동교양소 운영관리, ㊱ 철도경비, ㊲ 국가 및 공동재산·개인재산 보호, ㊳ 선박출입관리, ㊴ 반항공조직 운영 등이다.¹⁵⁰⁾ 그러나 무엇보다 중요한 사회안전부의 임무는 방대한 조직을 통해 김일성의 유일독재체제를 유지하기 위한 인민들의 감시·통제임에 틀림없다.

사회안전부 중앙기구로는 사회안전부와 부직속기관, 도에는 사회안전국과 도직속기관, 시·군에는 사회안전부, 각리단위에는 리분주소 체계로 조직되어 있다. 공장, 기업소, 군에도 안전지도원이 파견되어 있다. 그리고 각급 기관에는 안전, 보안, 경비, 후방, 국토 등의 부부장급들이 있으며 분재소에는 3~5명의 안전원이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¹⁵¹⁾

150) 北韓研究所, 「北韓總覽」, p. 263. 이외에도 사회안전부는 지하갱도 등 특수공사, 공병공사, 지하철관리 운영, 지진연구소 운영, 국토관리 등의 업무도 관장하고 있다.

151) 1993. 8. 15일 귀순자 북한 사회안전부 전직 고위간부 김정민씨와의 대담.

(4) 收容所制度

북한정부는 북한에 감옥이 있다는 사실을 부인할 뿐만 아니라 「교도소」란 명칭을 공식적으로 사용하지도 않는다. 그들은 정치범 수용소를 「통제구역」이라고 부르며 대내용어로는 「농장관리소」라고 한다. 그러나 여기서는 편의상 정치범 수용소를 「특별독재대상구역」이라는 용어를 사용한다. 「독재대상구역」이라는 용어는 ‘발전된 사회주의’에 필요한 인간양성을 위해 수용자들에게 교육독재를 실시할 필요가 있음을 의미하는 것이다.

한편 북한에는 여러가지 상이한 종류의 교도소 시설이 있는데 그 가운데는 구금소, 도시와 시골의 갱생원, 강제노동수용소, 청소년교화원, 보안교도소, 격리수용소 및 요양소 등이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¹⁵²⁾

(가) 特別獨裁對象區域

북한에는 정치사상범을 수용하기 위해 경비가 삼엄한 적어도 14개소의 특별독재대상구역이 설치되어 있는 것으로 믿어진다. 현재까지 알려진 소재지는 <표 1>과 같다. 한편 특별독재대상구역은 「혁명화구역」과 「완전통제구역」으로 대별되고 혁명화구역은 「가족구역」과 「독신자구역」으로 나뉜다.¹⁵³⁾ 특별독재대상구역 수용은

152) 아시아감시위원회·미네소타변호사 인권위원회, 송철복 외역, 「북한의 인권」, p. 112.

153) 강철환·안혁, 「대왕의 제전 1」 (서울: 香實, 1993), pp. 56~57.

〈표 1〉 특별독재대상구역 소재지

| 도 | 군 | 소재지 | 관리부서 |
|------|--------|-----------------------------|-------|
| 함경북도 | 은성 | 창평리, 풍천리, 동포리; 「제11호관리소」 | 국가보위부 |
| 함경북도 | 회령 | 굴산리, 낙생리 | 국가보위부 |
| 함경북도 | 경성 | 주을리 | 국가보위부 |
| 함경남도 | 요덕 | 요덕면 「제15호관리소」 | 국가보위부 |
| 함경남도 | 정평 | 미상 | 사회안전부 |
| 평안북도 | 용천 | 백마강 북쪽, 양시 북쪽; 「제9호관리소」 | 사회안전부 |
| 평안북도 | 영변 | 미상 | ? |
| 자강도 | 회천 | 미상 | ? |
| 함경남도 | 덕성 | 리망지리 「제23호관리소」 | 사회안전부 |
| 함경남도 | 개마고원지역 | 「제5호관리소」 | 국가보위부 |
| 평안남도 | 북창 | 석산리(광산지역); 「제18호관리소」 | 사회안전부 |
| 평안남도 | 개천 | 피호산(개천광산); 「제13호관리소」 | 사회안전부 |
| 황해북도 | 사리원 | | 사회안전부 |
| 강원도 | 원산 | | 사회안전부 |

출처: 아시아감시위원회·미네소타변호사 인권위원회, 송철복 외 역, 「북한의 인권」 (서울: 고려원, 1990), p. 115를 중심으로 재구성함.

노동당조직지도부 지도하에 실질적으로는 국가보위부 제9국 즉 농장지도국이 집행한다.

위의 교도소 중 적어도 4개소는 김정일이 자신의 비판자와 정적을 숙청하는 과정에서 체포된 6,000 내지 15,000명의 죄수들을 수용하기 위해 1982년에 설치된 것으로 알려져 있다.

특별독재대상구역 수용소에 갇힌 수감자의 규모는 여러 소식통

에 따라 각양각색이다. 한국정부는 월남자들의 증언과 위성사진을 토대로 북한에는 현재 약 15만명이 수감돼 있다고 추정하고 있다.¹⁵⁴⁾ 최근 북한을 탈출한 사람들도 특별독재대상구역의 규모나 수가 비슷한 것으로 드러났다. 「북한문제연구소」는 북한의 특별독재대상구역에는 약 105,000명이 수용돼 있는 것으로 보고 있다.¹⁵⁵⁾ 이렇게 추정이 다양한 이유는 북한 교도소에 대한 조사상의 난점뿐만 아니라 숙청의 강도나 시기에 따라 수감자의 수가 변하고 있다는 데에 있다. 후자와 같은 해석은 일부 북한 저명인사들이 투옥되었다가 나중에 다시 공직으로 복귀했다는 사실로 뒷받침되고 있다.¹⁵⁶⁾

특별독재대상구역에서 직접 생활한 경험이 있는 북한 탈출자들은 이들 특별독재대상구역에 수용된 수많은 수감자들은 <표 2>에서 처럼 과거 당원, 과거 영향력 있었던 정치인 및 그 가족, 김일성 일가에 비판적인 인사들이라고 시사한다. 다른 수감자들 가운데는 친일파, 반혁명적인 자본주의자, 과거의 지주계급 등이 포함돼 있다. 이들 수용자들 대부분은 재판이나 정식 기소없이 억류돼 있는 것으로 전해진다.

일본과 남한, 그리고 초기에는 북한의 언론매체들이 이런 수용

154) 통일원, 「92 북한개요」 (서울: 통일원, 1992), p. 275.

155) 北韓研究所, 「北韓總覽」, p. 319.

156) 대표적인 자는 이용무이다. 그는 1977년 인민군 총정치국장에서 해임된 후 1988년 당중앙위 후보위원으로 복귀하였다. 현재는 국가검열위원회 위원장이다.

〈표 2〉 요덕 수용소에 수용된 주요 인물 명단

| 성명 | 직책 |
|-----|------------------------------|
| 박성수 | 김일성군사대학 총장 |
| 방철갑 | 전 해군사령관 |
| 양승룡 | 이집트 참사. 전 리비아 대사 |
| 권성철 | 외교부 참사실장 |
| 홍순호 | 중앙당 군사부 과장. 김정일 동창생 |
| 김형락 | 김일성 1호 특별 전용 비행사(소장) |
| 정수산 | 중앙당 39호실장 |
| 전승일 | 이을설 호위사령관 운전수 |
| 황민희 | 이디오피아 서기관 |
| 민철기 | 자이르 1등 서기관 |
| 염철수 | UNDP 사무원 |
| 리만호 | 김일성대학 물리학 교수. 리종옥 부주석 막내아들 |
| 전승훈 | 김일성 1호 동시통역원. 전 중국대사 전명수 아들 |
| 장승호 | 국가보위부 지도원 |
| 한상일 | 주체사상연구소 통역원. 함경도당 조직비서 아들 |
| 리근혁 | 소련 까잔종합대학 유학 |
| 박원호 | 서흥군당 책임비서 |
| 자성호 | 4군단 보위부원 |
| 최덕환 | 만수대 창작사 과장 |
| 김성봉 | 영화대학 촬영과 학생 |
| 박우진 | 중앙당 연락부 소속 |
| 오희성 | 김일성대학 화학학부 교원. 건설건재대학 부학장 아들 |

출처: 강철환·안혁, 「대왕의 제전 2」(서울: 香實, 1993), p. 332.

소에 수용된 저명한 정치적 인물 가운데 상당수의 이름을 밝혔다. 그런 사람들 가운데는 김창봉, 김봉학, 김도만 등이 포함되어 있는데 이들은 1984년에 정부전복음모 혐의로 체포되어 당에서 숙청되

고 재판도 없이 야간에 은밀하게 개천광산 부근에 있는 정치범 수용소로 수송되어 억류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수감자들 가운데 다른 유명인사들로는 반혁명분자로 낙인 찍혀 1977년 10월에 억류된 전 북한로동당 정치국원 이용무, 1975년 10월에 숙청된 전 당중앙위 후보위원 유장식, 부수상 및 정치국원이었으나 1972년 숙청되어 가족과 함께 경성군의 교도소에 억류되어 있는 박금철, 과거 남한에 대해 비밀 공작기관의 책임자였으나 1969년 1월 숙청된 허봉학, 1967년 12월에 숙청된 당서기국 서기 김광협 등이 있다.¹⁵⁷⁾

증언에 의하면 김일성이나 김정일 후계체제에 반대하는 정치범이 벽지나 고립된 시골에 있는 특별독재대상구역에 보내진다. 대부분의 수용소들은 광산지역이나 중국과의 국경에 인접한 산악지대에 위치하고 있는 것 같다. 이런 수용소들은 엄격한 경비와 3~4미터 높이의 철조망으로 일반인의 접근은 불가능하다. 경비견과 무장 경비원이 끊임없이 순찰을 하고 주위에는 지뢰가 매설돼 있다. 증언에 의하면 수감자들은 비좁고 비위생적인 감방이나 초가집에 갇혀 있는 것으로 보인다.¹⁵⁸⁾

정치범의 가족도 이런 수용소에 함께 억류되어 있다는 보고들이 있다. 증언에 의하면 정치범과 그 가족이 함께 수감되면 그 가족의 재산은 몰수되고 가족의 공민증이 무효화 된다고 한다. 어린이들은 취학이 거부되고 그 가족에 대한 방문이나 편지 및 기타 통

157) 北韓研究所, 「北韓總覽」, p. 321~23.

158) 강철환·안혁, 「대왕의 제전 1」, pp. 57~58.

신수단도 금지된다. 수감자의 모든 권리는 박탈되는 것으로 전해진다. 수감자는 정부에서 제공하는 모든 혜택을 빼앗기게 되는데 생활필수품의 배급, 의료보장도 이에 포함된다. 그들은 자급자족을 해야 한다. 불만을 표시하거나 탈출을 기도한 자들은 구타당하거나 총살형, 교수형, 투석형 등의 공개 처형을 받게 된다.¹⁵⁹⁾

과거 감옥에 수감되었던 사람이나 교도소를 방문했던 사람들은 수감자들이 중노동을 강요당하고 있는데 그들은 주로 광산, 목재벌채장, 채석장, 관개 공사에 투입된다고 말한다. 일단 수용소에 갇히게 되면, 특별독재대상구역의 경우 그들의 복역기간에 대한 명백한 언질도 받지 못한 채 거의 무한정 억류되어 있는 것으로 믿어진다. 처형, 고문, 질병, 기아 등으로 죽는 사람이 많은 것으로 알려져 있다.¹⁶⁰⁾ 또한 수감자들은 육류섭취 부족으로 인해 발생하는 펠라그라(pellagra)병¹⁶¹⁾을 면하기 위해 쥐, 뱀, 지렁이 등을 잡아먹는 것으로 알려 졌다.¹⁶²⁾

(나) 勞動敎化所

북한 형법 제21조에는 ‘로동교화형’이 있는 바, 노동교화형은 6개월부터 15년까지로 규정되어 있고 노동 그 자체가 형벌로 되어

159) 위의 책, p. 105.

160) 강철환·안혁, 「대왕의 제전 1」; 강철환·안혁, 「대왕의 제전 2」 (서울: 香實, 1993) 참조.

161) 일종의 피부병으로서 자세한 내용은 강철환·안혁, 「대왕의 제전 1」, p. 84 참조.

162) 위의 책, pp. 162, 166, 273~77.

있다. 그러나 노동교화형은 반국가범죄로부터 일반행정질서 파괴죄에 이르기까지 다양하고 형량도 범죄유형에 따라 다양하다.¹⁶³⁾ 노동교화소는 노동교화형을 선고받은 자들중 비교적 경미한 형량을 받은 자들이 수용되어 있는 곳이다. 즉 이 노동교화소에는 태만·나태한 자 등 자유주의적인 사람과 사소한 범죄를 저지른 사람을 수용하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 문제는 혐의자들이 사회안전부에 의해 선정되고 아무런 공식기소나 재판없이 3개월 내지 1년간 강제노동할 수도 있다는 점이다. 모든 도시와 군에 「69노동교화소」¹⁶⁴⁾가 설치되어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고 각 교화원에는 약 100명 내지 200명의 수용자가 수감되는 것으로 믿어 진다.¹⁶⁵⁾

(다) 其他

구금소는 경미한 범죄로 체포된 사람들이 교도소에 넘겨질 때까지 구치되는 곳이다. 그리고 500명에서 2,500명을 수용하는 노동교양소가 약 12내지 16개소 설치되어 있다. 성인과 청소년들의 일부는 재판 후, 일부는 무재판으로 이 강제노동수용소에 수용되도록 결정된다. 개인이 노동교양소로 보내질 수 있는 범죄의 유형에는 절도, 강도, 살인미수, 강간, 정치범의 자녀, 중국이나 소련으로의 탈주자 등이 포함된다. 최근에 북한을 탈출해 나온 사람들은 당노

163) 최종고, 「북한법」, pp. 215~29.

164) 교화소 설치에 관한 정무원 명령 제69호를 의미하는 것 같다.

165) 아시아감시위원회·미네소타변호사 인권위원회, 송철복 외역, 「북한의 인권」, p. 114.

선에 대한 비판도 감화원에 수용되는 처벌대상이 된다고 시사했다.¹⁶⁶⁾

한편 파괴적 행동을 하거나 학업을 태만히 하는 학생들은 재판 없이 최고 6개월까지 청소년구금소에 보내지는 것으로 알려졌다. 수감자들은 철저한 사상교육과 육체노동을 마친 후 학교로 보내진다. 9개도에 각각 1개씩 정도의 이런 시설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 평양시는 인근에 3개의 청소년구금소를 두고 있는 것 같다.

수감후 이들에 대한 처우는 매우 열악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즉 비위생적 시설, 부족한 급식, 고문, 구타, 무원칙한 행형제도 등으로 인해 인간이하의 생활을 영위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¹⁶⁷⁾

2. 出身成分 區別에 의한 統制

가. 派閥에 대한 非人間的 刑罰

해방직후 김일성의 북한내 권력기반은 타파벌에 비해 상대적으로 미미하였다.¹⁶⁸⁾ 특히 조만식을 비롯한 북한내 토착세력들은 이미 대중적 지지를 획득하고 있었을 뿐만 아니라 질서회복을 위한

166) 평화문제연구소, 「북한의 인권백서」, pp. 51~52.

167) 신상옥은 사회안전부 구류소가 있음을 증언하고 있다. 자세한 내용은 최은희·신상옥, 「조국은 저하늘 저멀리(상)」(C. A.: Pacific Artist Cooperation, 1988), pp. 321~29 참조.

168) 梁性喆, 「北韓政治論」(서울: 博英社, 1991), pp. 73~74; 양성철, 「분단의 정치」, p. 178.

조직까지 보유하고 있었다.¹⁶⁹⁾ 그러나 김일성은 연령적으로 젊었을 뿐만 아니라 당시 해외파들의 공통된 약점이기도 하였지만 국내적 지지기반이 약하였다. 또한 해방과 함께 북한에는 다양한 이념과 노선의 소유자들이 혼재하면서 정권획득을 위한 각축을 벌이고 있었다.¹⁷⁰⁾ 따라서 권력에 대한 의지와 권모술수에 능한 김일성은 자신의 입지강화문제를 ‘유격전’으로 상정하였을 것이고 전투의 승리 즉 권력획득을 위해서 제반수단을 동원하였을 것은 당연하다고 할 수 있다.¹⁷¹⁾

‘적의 섬멸만이 생존’이라는 빨치산식 방식은 상대 인명의 존엄성에 대한 고려는 곧 자신들의 죽음을 의미하는 것으로서 빨치산 출신인 김일성도 이것을 터득하였을 것이다. 즉 김일성은 모든 문제를 ‘죽느냐 사느냐’는 전투식으로 해결하려 하였고 이에 따른 인명의 희생은 집단을 위해서는 불가피한 것으로 간주하였을 것이다.¹⁷²⁾ 아군의 안전을 위해서 적군은 재기불능상태가 되어야 한다는 군사문화적 인간관은 정치적 반대자까지도 적의 범주에 포함시

169) 중앙일보특별취재반,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상)」(서울: 중앙일보사, 1992), pp. 49, 91.

170) 林隱, 「金日成正傳」(서울: 沃村文化社, 1989), pp. 159~81.

171) 위의 책, pp. 239~43.

172) 김일성은 유년시절 아버지가 일경에 체포되자 “나는 무서운 분노와 적개심에 휩싸였다. 나는 아버지의 원수, 우리일가의 원수, 조선민족의 원수를 갚기 위하여 사생결단을 해야겠다는 결심을 다지고 떠날 차비를 하였다”고 「세기와 더불어」에서 고백하고 있다. 김일성, 「세기와 더불어」(평양: 조선로동당출판사, 1992), p. 92.

키는 경향이 있고 결국 그들을 제거하는 수단은 중요시 되지 않는다.¹⁷³⁾ 물론 김일성은 테러리즘의 직접 집행자는 아니었고 주로 빨치산동료들에게 대행시켰다. 김일성은 항일빨치산 시절부터 ‘종파’에 대해 과민한 거부반응을 보였고¹⁷⁴⁾ 1945년 8월부터 1956년에 걸쳐 타파벌에 대해 철저한 숙청을 단행하였다. 숙청된 자들을 파벌별로 열거해 보면 다음 <표 3>과 같다.¹⁷⁵⁾

한편 김일성은 1960~70년대에 들어서도 그의 빨치산동료를 비롯한 충성파들을 ‘반당·반김일성파’라는 죄명으로 장평산, 김창봉, 허봉학, 김광협, 박금철, 김도만, 김양춘, 전병립, 남일, 지경수, 지병학, 김동규, 유장식 등을 숙청하였다. 결국 정적에 대한 처절한 숙청은 북한내에 북종이 미덕이라는 소극적 순응적 정치문화, 즉 수성에 의한 북종문화를 정착시켰다.¹⁷⁶⁾ 그리고 1950년대 김일성에

173) 권력투쟁의 초기단계에서 김일성의 적은 계급적·분파적 적이라고 보다는 주로 민족적인 적이었다. 許東燾, 「金日成評傳(續)」(서울: 北韓研究所, 1988), p. 19; 양성철, 「분단의 정치」, p. 182.

174) 김일성의 종파주의에 대한 알레르기적 반응은 김일성, “종파주의를 청산하고 혁명대오의 통일단결을 강화하자,” 「김일성 저작집 1」, pp. 86~99 참조.

175) 물론 이러한 숙청작업은 단계별로 실시되었다. 林隱은 이것을 5단계로 분류하고 있다. 林隱, 「金日成正傳」, pp. 246~50. 한편 김일성이 ‘숙청’이라는 용어를 사용한 때는 1946년 8월 29일 “근로대중의 통일적당의 창건을 위하여,” 「김일성 저작집 2」, p. 378)에서였다.

176) 徐載鎭·金台鎰, 「北韓住民의 人性研究」(서울: 民族統一研究院, 1992), pp. 87~91.

〈표 3〉 파벌별 숙청자 명단

| 파 별 | 성 명 |
|---------|---|
| 연안파 | 무 정, 김두봉, 박일우, 최창익, 한 빈, 김 응, 김창만, 이상조 |
| 소련파 | 허가의, 박창옥, 박의완, 김승화, 박영빈, 기석복, 김재욱, 최종학 |
| 월북 남로당파 | 박헌영, 허 현, 이승엽, 이원조, 이강국, 조일명, 김원봉, 이 영, 이극로, 이 용, 허성택 |
| 재북 국내파 | 현준혁, 김용범, 오기섭, 장시우, 주녕하, 박정애 |

출처: 林隱, 「金日成正傳」(서울: 沃村文化社, 1989), pp. 161~65.

의해 숙청되어 해외로 망명한 박갑동·이상조 등 전직 북한 고위 관리들은 1992년 1월 29일 모스크바에서 반김일성 투쟁을 위한 「조선민주통일구국전선」을 결성하여 해외에서의 반체제 활동을 공식 선언하였다.¹⁷⁷⁾

나. 成分別 差別待遇

북한의 궁극적인 국가목표는 주체사상에 입각한 무계급사회의 건설에 있다. 이러한 목표달성을 위해서는 사회주의 혁명과 건설의 각단계에서 제기되는 혁명과제와 계급관계를 명확히 파악하여 당을 중심으로 혁명역량을 결집하는 것이 중요한 문제로 대두된다.

177) 「朝鮮日報」, 1992.2.25.

따라서 이러한 혁명역량강화를 위해서는 투철한 계급의식 소유자가 필요하게 되고 김일성은 이들을 계급정책을 통해 인위적으로 확보하여 갔다.¹⁷⁸⁾ 즉 계급정책에 대해 김일성은 “제국주의잔재세력과 봉건세력을 반대하고 민주주의혁명을 완수하려면 반드시 노동계급이 핵심이 되고 광범한 농민들과 애국적 지식인들, 심지어는 민족적 광심을 가진 민족자본가들까지 망라하는 민주주의 통일전선을 형성함으로써 노동계급이 령도하는 인민정권인 민주주의인민공화국을 건설”¹⁷⁹⁾해야한다고 기본원칙을 천명하였다. 이러한 논리에 입각하여 제1차적으로 친일파,¹⁸⁰⁾ 지주, 반동관료 등이 제거되었다.¹⁸¹⁾

178) 이 정책은 김일성의 권력기반 확보정도에 따라 변화되어 진다. 초기 정권창출과정에서는 반제반봉건 민주주의혁명전략에 따라 민주주의 민족통일전선정책이 철저히 사용되어 졌다. 김일성, “새조선건설과 공산주의자들의 당면과업,” 「김일성 저작집 1」, p. 279.

179) 위의 책, pp. 335~36.

180) 김일성은 친일파에 대한 범위를 다음과 같이 확실히 하고 있다. 즉 “일본제국주의자들을 의식적으로 적극 도와주고 그들과 손잡고 악질적으로 만행한자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자기의 생활을 유지하기 위하여 또는 일제의 강요에 못이겨 할 수 없이 일제기관에 복무하면서 피동적으로 활동한 사람들은 친일파라고 볼 수 없습니다”라고 말하였다. 김일성, “현시기 남조선청년운동의 과업,” 「김일성 저작집 1」, p. 435. 이러한 규정에 의해 1946년 3월 7일 「친일파, 민족반역자에 대한 규정」이 채택되었다. 구체적인 내용은 「김일성 저작집 2」, pp. 113~114 참조.

181) 김일성은 이에 대해 “우리가 조국과 민족을 사랑하는 애국적인 각계각층들과는 손잡고 나가야 하지만 결코 친일파, 민족반역자들과는 손잡고 나갈수 없습니다”고 하였다. 김일성, “진보적 민

그러나 김일성의 권력이 강화되어짐에 따라 계급정책은 변화되기 시작하였다. 전술한 바대로 노동자, 농민을 제외한 지식인, 민족자본가들의 타도는 물론이고 김일성의 ‘항일투쟁동지들’인 남로당파, 연안파, 소련파, 빨치산파 등까지도 숙청당하였다. 항일투쟁동지들이 숙청당한 근본적인 이유는 그들이 사회주의 기본원리에 입각하여 김일성 개인우상화에 반대하였기 때문이었다. 이러한 측면에서 보면 김일성의 계급정책은 매우 자의적이고 개인주의적·가족주의적인 것으로 분석할 수 있다.¹⁸²⁾

해방이후 인민민주주의 혁명기에는 혁명의 주도세력으로서 노동계급과 농민뿐만 아니라 애국적 지식인, 양심적인 민족자본가까지 포괄시켰으며 혁명의 타도대상은 친일파와 반민족주의자만을 설정하였다. 그리고 지주에 대한 처리는 토지개혁실시와 관련을 맺으며 진행되었는데 이는 토지개혁을 통해서만 반동계급인 지주계급을 청산할 수 있다는 판단에서 였다. 토지는 「무상몰수 무상분배」 원칙에 의해 초헌법적으로 이루어졌다.¹⁸³⁾ 이것은 지주에 대한 토

주주의에 대하여,” 「김일성 저작집 1」, p. 298.

182) 북한의 주체사상은 결국 ‘수령론’으로 귀결된다. 즉 주체사상에서 는 수령이 근로인민대중의 최고뇌수로서 통일단결의 중심을 이룬다고 주장함으로써 수령인 김일성을 절대화하고 수령과 인민과의 관계를 ‘혈연적인 관계’로 규정함으로써 가장 원초적 지배 방법인 혈연주의를 채택하고 있다. 사회과학출판사, 「위대한 주체사상총서 9: 령도체계」 (평양: 사회과학출판사, 1985), p. 29. 따라서 북한의 계급정책은 ‘전인민의 가족화’에 불과하다.

183) 구체적인 내용은 1946년 3월 5일에 발표된 “북조선토지개혁에 대한 법령” 「김일성 저작집 2」, pp. 101~04 참조. 이 토지개혁에

지 무상몰수로 그들의 경제적 기반을 박탈함으로써 전통적인 지주에 대한 농민의 원한을 풀어 주고 인민들의 지지를 통해 정치적 정통성을 확립하기 위해서였다. 이와같은 토지개혁에서 계급투쟁은 빈농·고농에 철저히 의거하며 중농과 동맹하고 부농을 고립시켜 지주의 반항을 분쇄하는 통일전선전술을 기본원칙으로 채용하였다. 결국 농민 이외에는 철저한 인권탄압을 받을 수 밖에 없었다.

이와 같은 계급정책의 시행 결과 북한의 계급구조는 큰 변화가 초래되었는 바, <표 4>와 <표 5>에서 처럼 지주·친일파·민족반역자는 청산되고 극소수의 개인상공업자와 부농이 존재하게 된 반면 당과 임시인민위원회의 정치적 기반인 노동계급 및 빈농과 고농을 중심으로 한 농민계급이 주된 사회계급으로 등장하였다.

〈표 4〉 북한 농촌 계급구성의 변화

| | 해 방 전 | 토지개혁 후 | 휴 전 직 후 |
|-----|-------|--------|---------|
| 빈 농 | 70 | 25 | 40 |
| 중 농 | 20 | 72 | 59 |
| 부 농 | 5 | 3 | 0.6 |
| 지 주 | 3~4 | — | — |

출처: 김남식 외, 「해방전후사의 인식 5」(서울: 한길사, 1989), p. 224에서 재인용.

의하여 100만 325정보에 달하는 일제의 소유토지 및 친일파, 민족반역자, 지주들의 소유토지가 몰수되었으며 72만 4522호에 달하는 토지 없는 또는 토지 적은 농민들에게 98만 1390정보의 토지가 분배되었다고 한다. 김일성, “토지개혁의 총결과 금후과업,” 「김일성 저작집 2」, p. 150.

한편 김일성은 계급은 청산하였으나 통치를 위해서는 계층분류의 필요성이 있음을 인식한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그는 1957년 5월 30일 당상무위원회를 개최하여 「반혁명분자와의 투쟁을 전당적·전인민적 운동으로 전개할데 대하여」라는 결정서를 채택하였다. 이 결정은 소위 「5.30 결정」이라고 명명되고 있는 바, 그 배경과 요인은 다음과 같다.

북한에서는 1956년 8월 종파사건 이후에도 무리한 사회주의 개혁운동과 경제적 궁핍으로 반김일성 풍조가 확산되어 갔다. 김일성은 이러한 인민들의 반항을 효율적으로 대처하기 위하여 「5.30 결정」을 채택하였다. 이 결정에 의한 사업은 도·시·군 당위원의 관장하에 진행되었다. 그러나 지방당조직에 의한 이 사업은 농업 집단화와 개인상공업 말살 등 사회주의 개혁과 인텔리 숙청 등 당면한 과업들과 겹쳐 성과가 나타나지 않았다. 여기에서 중앙당이 도단위로 집중적으로 이 사업을 지도할 필요가 발생하였다. 1958년 12월부터 시작된 지도정책은 전인민을 3계층으로 분류하는 것부터 시작하였다. 즉 그것은 김일성 정권에 무조건 호응하는 핵심계층을 비롯 중간계층, 반혁명분자 등이었다. 집중지도의 기본목표는 반혁명세력을 제거함으로써 김일성 체제를 공고화하는데 있었다. 집중지도를 통해 채택된 정책은 첫째, 관대정책, 둘째, 공개투쟁정책, 셋째, 소조투쟁정책 등이 사용되어 졌다.¹⁸⁴⁾

그러나 이 기간 동안 북한에서는 수많은 인권유린사태가 발생하

184) 北韓研究所, 「北韓總覽」, p. 302.

였고 중국에는 김일성이 문제수습에 나서지 않을 수 없게 되었다.

즉 김일성은

…그리고 하는 일은 밤낮 사상검토입니다. 중앙지도그루빠가 내려와 사상검토를 하지, 도당지도그루빠가 내려와 사상검토를 하지, 이렇게 검토만 하니 불평밖에 나올 것이 없습니다. 교양을 주어서 자기 잘못을 의식적으로 고치도록 하여야 그것이 옳은 검토가 되겠는데 교양도 주지 않고 당성으로 위협하면서 덮어놓고 나쁜짓을 한것을 대라고 억지로 내리누르니 이것도 잘못했소, 저것도 잘못했소 하는 식으로 자기 비판을 하게 됩니다. 이런 검토는 그만두어야 합니다.¹⁸⁵⁾

고 강조하여 사태수습에 부심하였다.

또한 북한은 1958년부터 60년까지 2년동안의 중앙당 집중지도사업으로 모든 주민들의 성분과 사상을 조사검토하고 반혁명적 요소들을 적발 처리했음에도 불구하고 1960년대에 들어와서 주민들의 성분을 다시 조사해야 할 필요를 느끼게 되었다.¹⁸⁶⁾ 1962년 12월 노동당 제4기 5차 전원회의에서 「4대군사노선」을 채택함에 따라 전민무장화정책을 실현하는데 있어서는 주민들 속에서 반혁명적 요소들을 더욱 철저히 가려내야 하는 현실적 요구에 직면하게 되었

185) 김일성, “당사업방법에 대하여,” 「김일성 저작집 13」(평양: 조선로동당출판사, 1981), pp. 146~47.

186) 김일성은 1962년 담화에서 계급은 청산되었으나 지주의 잔재가 아직도 남아 자기들 세상을 만들려고 하고 있다고 주장하였다. 김일성, “당 조직사업과 사상사업을 개선 강화할데 대하여,” 「김일성 저작집 16」(평양: 조선로동당출판사, 1981), p. 161.

다. 북한은 1964년 2월 당중앙위원회 4기 8차전원회의¹⁸⁷⁾에서 3대 혁명역량강화 방안과 함께 각계각층 군중과의 사업을 강화하기 위한 안건을 토의 결정하였다. 이후 김일성은 1964년 6월 20일 주민등록사업을 통해 인민들의 계급적 토대와 성분을 재분류하도록 하였는 바, 이 사업담당자들을 김일성이 지시한 날짜를 기념하여 「620 그루뻘」라 하였다. 북한은 김일성의 ‘교시’에 따라 북한주민을 모두 기본군중과 복잡군중으로 구분하고 기본군중을 다시 핵심군중과 기본군중으로 복잡군중은 계급적 토대, 6.25관계, 전직관계, 사회도덕적 측면 등으로 재분류, 그에 대한 처리원칙과 기준을 작성하게 되었다.¹⁸⁸⁾

북한은 주민등록사업이 끝나자 그 성분조사결과를 토대로 전주민들에 대한 계층별 성분분류에 착수했다. 그 이유는 첫째, 주민성분별 처리기준을 명확하게 해놓음으로써 현행 정치체제에 반대할 요소들을 사전에 봉쇄하고 반당적·반혁명적 행위를 철저히 예방하자는 데 있었다. 둘째, 당과 군대와 노농적위대 등 민간무장조직에 반당적대분자들이 잠입할 수 없게 제도적 조치를 마련하기 위해서였다.

1970년 9월에 종결된 주민성분 분류사업에서는 북한주민 전체를 3계계층 즉 핵심, 동요, 적대계층과 51개 성분으로 분류하고 각 성

187) 김일성, “조국통일 위업을 실현하기 위하여 혁명력량을 백방으로 강화하자,” 「김일성 저작집 18」 (평양: 조선로동당출판사, 1982), pp. 246~66.

188) 北韓研究所, 「北韓總覽」, pp. 246~66.

분에 대한 당의 시책을 구체화시켰다.¹⁸⁹⁾ 이후로 이러한 계층분류는 보다 체계화 되었고 현재는 일종의 신분제화 되었다고 볼 수 있다.

첫째로 핵심계층은 다시 3개의 소집단으로 분류하였다. 최고의 소집단은 김일성과 그의 가족 및 친척들을 포함한다. 김일성과 그의 가족 및 친·인척들은 최고의 권력·특권 및 부를 가지고 있다.¹⁹⁰⁾ 김일성과 그의 가족 및 친척들에게 주어지는 특권의 범위는 피지배자들에 대한 차별대우를 고려하여 볼 때 평등의 문제가 제기되지 않을 수 없다.

다음은 고위지도층으로서 그 숫자는 주로 평양과 직할시 등에 거주하는 인구 1%에 해당하는 약 20만명 정도로 추산된다. 평양에서 그들은 첨단수준의 보건시설, 호화욕실을 갖춘 주택, 특수학교, 중국·러시아·일본요리가 제공되는 레스토랑, 모피제품과 패션감각을 갖춘 의류를 파는 의상점 등을 이용할 수 있다.¹⁹¹⁾ 이러한 서비스 이용은 자본주의 국가와는 달리 소득수준과는 무관하며 정치적 지위와 관련이 있다. 또한 고위지도층 인사들에게는 개인소유의 전화, 외국 간행물의 구독, 외국방송 청취용 라디오의 보유, 해

189) 자세한 내용은 아시아감시위원회·미네소타변호사 인권위원회, 송철복 외역, 「북한의 인권」, pp. 216~21 참조.

190) 全賢俊·安仁海·李宇榮, 「北韓의 權力엘리트 研究」(서울: 民族統一研究院, 1992), pp. 71~75.

191) 북한에는 당·정·군 간부들만 이용할 수 있는 특별상점이 있다 한다. 한스 마레츠키 저, 정경섭 역, 「兵營國家 北韓」(서울: 동아일보사, 1991), p. 119.

의여행 등이 허용된다.¹⁹²⁾

마지막으로 충성주의자들이 중심이 된 소집단은 북한 김일성·김정일에게 헌신적으로 생각되는 사람들로 구성된 것 같다. 이 소집단은 전주민의 약 1/4, 즉 500만명 정도로 추산된다. 이 소집단의 성원은 전적으로 그렇지는 않겠지만 주로 대도시에서 살고 있다. 그들은 혜택받는 직업을 차지하고 있는 바, 당·정·군 고위직을 맡고 있는 것으로 믿어진다. 이들은 외교관, 대중조직·행정부·공장·농촌조직의 고위간부들, 엔지니어·의사·운동선수·배우 등과 같은 전문직업인, 그리고 혁명 또는 전쟁영웅의 후손으로서 특별히 지정된 사람들이다.

둘째로 동요계층은 간부로 등용되기에는 신뢰성이 부족한 사람들로 구성되어 있다. 이 계층에는 주민의 50%이상이 소속된다. 이 계층에 속한 사람들은 비상시에 충성에 대한 의문이 제기될 만한 배경을 소유한 자들일 것이다. 과거 상인계급이나 전문직 계층출신들이 이 부류에 속하는 것으로 보인다. 구체적인 직업은 대체로 하위조직의 간부, 기술자, 보통노동자, 농민, 사무직 노동자, 간호원이나 교사 등이다. 이들은 아주 제한된 수입과 배급식량으로 생활을 꾸려가고 있다. 이들은 통행에 제한을 받으며 국가보위부의 감시하에 있고 정치학습회의, 각종 총화 등을 통해 김일성·김정일 및 당에 대한 충성심 교양을 지속적으로 받는다.

셋째로 적대계층이다. 이들은 실제로 정부에 반대한 배경을 가

192) 1993.8.15, 앞의 귀순자 김정민씨와의 대담. 귀순자 김영성씨의 1992.6.30 증언.

진 사람들, 또는 정치·사회제도에 대한 불충이나 불평을 드러내 보일 속성을 가진 사람들로 구성되어 있다. 즉 지주, 자본가, 서구화된 지식인, 일제에 협력한 한국인 관료, 종교지도자들의 후손이나 남한으로 피난간 사람들의 친척들이 속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이 계층에 속하는 사람들은 위험하고 힘든 작업에 배정된다. 그들은 외국인 방문객들의 시야에서 벗어나 있고 북한매체에 보도되는 사례도 전무하기 때문에 그 수를 추정하기는 어렵다. 그러나 그들은 주민의 약 20%, 즉 약 400만명쯤 되는 것으로 보인다.

물론 사회안전부가 전주민을 분류한 이유는 반당 및 반혁명분자들이 당과 군부에 침투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였다. 이들 부류중 일부는 폐지된 것으로 보이며(14부류의 민족자본가와 15부류의 지주), 남아 있는 부류를 겨냥한 정책시행은 최근 몇년동안 많이 완화된 것으로 보인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부류는 여전히 이에 속한 사람들의 신분과 생활조건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믿어 진다. 일단 어느 사람이든 일정 부류에 속하게 되면 그 부류는 법적인 처우, 배급할당, 여행허가, 생활에 영향을 주는 다른 복합적인 요인 등에 영향을 미친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북한을 방문한 재일 한국인 또는 북한의 전직관리들에 따르면 김정일은 남한으로부터 북한으로 온 사람과 해외로부터 본국에 귀환한 사람들을 점검하기 위해 1980년 몇가지 계획을 새로 추진했다고 한다. 이러한 충성심 점검결과 때로는 중복되지만 13개의 새로운 부류가 추가되어 모두 64개 부류가 된 것으로 알려져 있다.¹⁹³⁾

북한인민들은 자신들의 계층이 핵심계층, 동요계층, 적대계층 중 어디에 속하는가를 알고 있는 것으로 믿어 진다. 그러나 사회안전부만이 인민들의 정확한 부류를 알고 있다고 할 수 있다. 물론 사회안전부는 이 부류를 임의로 변경시킬 수 있는 권한이 있다.

물론 1980년대 주체사상에 대한 해석권이 김정일에게 주어지면서 계급과 계층에 대한 해석에서 약간의 신축성이 보이기 시작했다. 즉 당 제6차 대회에서 김일성은 “복잡한 군중과의 사업에서 성분에 대한 옳은 인식으로 정확히 판단할 것”을 전제하고 “사람들을 지난날의 계급적 처지나 경력만 보고 평가할 것이 아니라 오늘의 사상형태를 기본으로 평가할 것”을 주장하면서 “지난날의 계급적 처지나 사회정치생활 경위가 복잡한 사람이라도 대담하게 포섭하여 당의 두리에 묶어 세워야 할 것”이라고 말하고 있다.

이것은 1990년대에 들어와 더욱 강조되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김정일은 1991년 5월 5일 「인민대중중심의 우리식 사회주의는 필승불패이다」라는 담화에서 “사람은 사상과 행동을 가지고 평가하여야 하며 사회적 진보와 혁명에 이바지 하는 사람에 대해서는 사회의 계급적 토대를 따지지 않고 그를 혁명의 주체의 한 성원으로 보고 믿어야 한다는 것이 각이한 계급과 계층의 사람에 대한 주체적인 관점과 립장입니다”¹⁹⁴⁾라고 말하여 신축적인 계층운영을 강조

193) 아시아감시위원회 · 미네소타변호사 인권위원회, 송철복 외역, 「북한의 인권」, pp. 68~73.

194) 김정일, “인민대중중심의 우리식 사회주의는 필승불패이다,” 「친애하는 지도자 김정일동지의 문헌집」, p. 341.

하였다.

이것은 결국 북한체제내에 당원과 비당원 지배층과 피지배층간의 격차현상이 날로 심화되어 갔으며 당일꾼과 행정일꾼, 노동자와 인테리간의 잠재적 갈등현상이 심각하다는 것을 의미한다.¹⁹⁵⁾

다. 「黨的 指導」

1966년에 시작된 주민등록사업을 통해 북한주민 전원에 대한 성분재조사가 진행되는 것과 병행해서 당원들에 대해서는 「당원실태조사사업」이 진행되고 있었다. 이 당원실태조사사업은 첫째, 당원이 될 수 없는 출신성분 불량자가 성분을 속이고 당에 잠입한 당원을 색출하고 둘째, 이미 ‘종파’나 간첩 등의 사건에서 반당분자로 숙청이 된 자와의 인맥관계를 밝혀내고 셋째, 당성을 재평가하여 당원자격에 관한 사항을 조사하는 사업이었다.

따라서 당원실태조사사업은 주민등록사업 결과 나타난 당원과의 관계자료들을 분석하는 것으로써 당원자격의 심사판정을 내리는데 필요한 최종적인 작업을 끝낼 수 있었다. 결국 북한은 전 당원을 대상으로 1973년초 당원증을 재교부하는 사업을 당원실태조사 결과를 토대로 집행할 수가 있었다. 1972년 10월 23일~26일에 열린 당중앙위 제5기 5차전원회의에서 당원증교환 문제가 토의·결정되었는데 이에 따라 모든 당원들에 대한 당원증교환이 실시되었다.

195) 都興烈, “朝鮮勞動黨의 充員과 政治社會化,” pp. 81~82.

북한에서의 당의 권위와 위력을 감안하면 당원증 재교부 심사에서 탈락한다는 것은 정치적 생명의 종말을 고하는 것이다.¹⁹⁶⁾ 당원증 재교부사업은 김일성의 후계자로 김정일이 당내실권자로 등장하면서 당원들의 세대교체를 위해 취해졌다고 할 수 있다. 즉 당증재교부를 계기로 10만여명의 당원이 성분불량자로 숙청이 되었지만 전체당원수는 급격히 증가하였음을 의미한다. 또한 5차당대회 이후 2년동안에 10만여명의 당원이 숙청되었음에도 당원총수가 160만에서 200만으로 늘어남으로써 加減하면 적어도 50만의 새로운 당원이 들어왔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후 당원은 지속적으로 증가하였고 현재는 약 3백 8십만명 정도로 추산되고 있다. 당원증가 추세는 <표 6>과 같다.

김정일 후계체제의 정치적 기반을 구축하기 위해 50만명의 새로운 당원을 투입함으로써 당내의 세대교체를 본격화시킨 것이다. 그러나 이것은 노동당내부를 긴장시켜 당내의 반목을 야기시킨 계기로 작용하였다. 이후 김정일 후계체제 구축을 위한 당내투쟁은 1973년 2월부터 시작된 3대혁명소조 운동에서 더욱 노골화되었다.¹⁹⁷⁾

196) 김일성은 문제있는 당원들에 대한 계속 비판을 강조하는 한편 당원으로서의 명예의 중요성을 감안 신중을 기할 것을 또한 강조하고 있다. 김일성,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제5기 제5차전원회의에서 한 연설,” 「김일성 저작집 27」 (평양: 조선로동당출판사, 1984), p. 503.

197) 3대혁명은 1973년 1월 31일 <경공업 월간>에 경공업공장들을 도와주기 위하여 동원되었던 대학교원, 학생들의 협의회에서 김일성이 강조하면서 본격화 되었다. 김일성, “경공업부문에서 사상혁명, 기술혁명, 문화혁명을 힘있게 벌리기 위하여,” 「김일성 저

〈표 6〉 당원 증가 추세

| 시 기 | 당원수(명) | 당세포수(명) |
|---|-------------|-----------|
| 조선공산당 북조선분국 3차확대 집행위원회(1945.12) | 4,530 | |
| 북조선로동당 창립대회(1946.8) | 366,000 | 12,000 |
| 북조선로동당 2차대회(1948.3) | 725,762 | 28,000 |
| 북조선로동당 중앙위 2기 5차전원 회의(1956.4) | 1,000,000 | 48,933 |
| 조선로동당 3차대회(1956.4) | 1,164,945 | 58,259 |
| 조선로동당 4차대회(1961.9) 전국대표자 1차대회 | 1,311,563 | 65,000 |
| 조선로동당 창건20주년(1965.10) ¹⁾ 전국대표자 2차대회 | 1,600,000 | |
| 조선로동당 창건25주년(1970.10) ²⁾ | 1,600,000 | |
| 1972.8 ³⁾ | 2,000,000 | |
| 1978.1 ⁴⁾ | 2,000,000 | 약 200,000 |
| 조선로동당 6차대회(1980.10) ⁵⁾ | 약 3,000,000 | 약 200,000 |
| 현 재 | 약 3,800,000 | 약 380,000 |

출처: 「'92 북한개요」, p. 61에서 재인용하여 보완.

주: 1) 「로동신문」, 1965.10.10. 2) 「로동신문」, 1970.10.10. 3) 「로동신문」, 1972.8.29. 4) 「로동신문」, 1978.1.29.

5) 당 제5기 19차 전원회의(1979.12.18) 당대표자 선출비율(당원 1,000명당 결의권자 1명)을 근거로 작성한 추계치.

김정일이 직접 지휘한 3대혁명소조는 북한정권의 모든 조직과 경제기관 생산단위들에 20~50명으로 조직된 소조가 파견되어 오랜 당원들과 간부들의 사업작풍을 규탄하는 임무를 수행하였다. 즉

이들은 사상·기술·문화의 3대혁명을 수행한다는 기치를 들고 기성 혁명지도층인 간부들과 고참당원들을 대상으로 탈권투쟁을 벌인 것이다. 기성세력을 몰아내고 김정일이 파견한 새로운 세력으로 모든 기간조직을 대체하였다.¹⁹⁸⁾ 따라서 3대혁명소조 운동은 수많은 고참당원들의 희생을 전제로 수행되어질 수 밖에 없었고 결국 인권은 유린될 수 밖에 없었다.

김일성 우상화정책을 통해 후계자 지위 공고화를 계획한 김정일은 1인독재체제 완성과 대내외의 조직화 역량확대를위하여 1974년 4월 14일 「유일사상체계확립의 10대원칙」¹⁹⁹⁾을 수립하였다. 수령론을 통해 김일성을 우상화하고 김일성·김정일 승계체제를 합리화하기 위해 고안된 북한판 ‘10계명’은 후계체제를 반대하는 관료들을 책벌하기 위한 기준이었다. 이 원칙은 매일 학습되도록 강요되었고 당세포를 통해 유일사상체계 10대원칙 재토의사업이라는 것을 실시하여 10대원칙 위반자들을 비판하여 책벌하였다.

이것은 많은 폐해를 양산하였는 바, 비판과 자기비판을 통해 상호불신을 조장하였고, 사소한 언동일지라도 유일사상체계 10대원칙 위반으로 당에 고발되어 「당적 지도」를 받은 후 출당·철직 등 책벌은 물론 산간벽지로 강제 이주당하였다. 유일사상, 주체사상

198) 양호민 외, 「북한사회의 재인식 1」 (서울: 한울, 1987), p. 177.

199) 이 원칙은 당관료들의 행동원칙으로서 외부로 공식화되지는 않았다. 이 원칙은 주체사상으로 발전·흡수되어 공식화 되었다. 자세한 10대원칙은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당의 유일사상체계 확립의 10대원칙」 (1974)을 참조.

확립을 통해 후계자로서의 지위를 공고히 하려했던 김정일은 우선 간부들의 확고한 지지를 필요로 하였고 특히 1960년대 산업화과정에서 두각을 나타낸 전문관료들을 견제하기 위한 수단으로 당관료에 의한 「당적 지도」의 중요성을 역설하지 않을 수 없었다.²⁰⁰⁾

그러나 1973년 2월 3대혁명소조 운동으로 노골화된 김정일 후계 체제 구축을 위한 「당적 지도」가 수십만명의 희생자를 내며 10년 동안이나 계속되었지만 종식되지 않았다. 한편 1980년 제6차 당대회를 통해 공식적인 후계자 지위를 획득한 김정일은 1981년 김일성사진이 들어있던 구당원증을 반납하고 김일성과 김정일 사진이 동시에 부착된 새당원증을 교부받도록 하였다. 이를 계기로 과거 3대혁명소조라는 정치폭력기구를 통해 숙청하던 방법을 지양하고 복권이 가능한 「당적 지도」 방식을 채택하였다.

이후 김정일은 당권을 장악한 입장에서 후계체제에 반대하는 요소들에 대해 「당적 지도」를 강화하였다. 이러한 「당적 지도」는 친·인척들에게도 예외는 아니었다. 그 대표자들이 현재는 복권된 김일성의 친제인 김영주, 김일성의 현재 처인 김성애와 그의 아들 김평일 등이다. 특히 1980년대 후반부터 90년대에는 정무원 총리들에 대한 경질·등용의 반복정책을 통해 전문관료들을 통제해 나갔다.²⁰¹⁾ 물론 어떤 관료가 「당적 지도」를 받게 되면 지연, 혈연, 학

200) 당관료가 경제를 모르면 경제관료들을 지도할 수 없음을 경계하고 있다. 김일성, “당사업을 더욱 강화할데 대하여,” 「김일성 저작집 29」 (평양: 조선로동당출판사, 1985), pp. 386~89.

201) 1992년 강성산의 총리 재기용과 이근모의 평안북도 인민위원장

연으로 연결되어 관련자들은 모두 불이익을 당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당적 지도」의 피해가 당원이나 당간부에 그치지 않고 인민생활 전반으로 확산되었다는 점이다.

3. 服從誘導를 위한 食·衣·住 統制

북한은 한국전쟁 이후 병기생산 중심의 중공업우선정책으로 일관해오면서 인민생활의 필수품을 생산하는 분야인 경공업은 소외시켜 왔다. 물론 전쟁패배의 원인을 군사력부족으로 평가한 북한으로서는 당연한 귀결이었을지도 모른다. 그러나 重軍政策 부작용의 피해자는 일반인민들이었다. 모든 생활필수품의 절대량이 부족하였을 뿐만 아니라 그 질도 저급하였다. 즉 성냥이나 비누조차 정상적으로 생산할 수 없을 정도로 경공업의 설비시설이 노후화되고 기술도 낙후되었다.

김일성은 1962년 10월 22일 최고인민회의 제3기 1차회의 보고에서 “3~4년이 지나면 ... 우리인민은 모두가 기와집에서 이밥에 고기국을 먹으며 비단옷을 입고 사는 부유한 생활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²⁰²⁾라고 장담하였다. 그러나 김일성의 「경제4대목표(기와집,

의 등용이 대표적인 예이다. Aidan Foster-Carter, *Korea's Coming Reunification* (London: The Economist Intelligence Unit, 1992), p. 14.

202) 김일성,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정부의 당면과업에 대하여,” 「김일성 저작집 16」(평양: 조선로동당출판사, 1982), p. 465.

고깃국, 비단옷, 쌀밥)」는 1993년 신년사에서도 강조될 정도로 인민들의 기본적 생활수준은 1960년대 상태에 정지해 있다고 볼 수 있다.

물론 북한은 인민들의 소비생활에 대한 욕구충족문제가 중요한 경제정책과제로 대두되자 경공업혁명, 인민봉사혁명, 「8·3인민소비품생산운동」²⁰³⁾ 등의 슬로건을 내걸고 경공업제품의 질·양적 증진에 당력을 집중하기도 하였다. 그러나 이와같은 경공업 활성화 대책은 적극적인 캠페인에도 불구하고 별무성으로 끝났다. 왜냐하면 중공업우선정책을 정책기조로 한 경공업정책은 시초부터 실패로 종결될 소지를 안고 있었기 때문이다. 다만 김정일이 인민들의 소비생활에 대한 욕구충족을 위해 최선을 다한다는 정치적 효과만을 거두었을 뿐이다.²⁰⁴⁾

여기에서는 북한의 식·의·주²⁰⁵⁾ 실태를 중심으로 북한인민들의 경제적·문화적 인권문제를 분석해 보기로 한다.

203) 김정일은 1984년 8월 3일 경공업제품전시장을 방문하여 인민들의 물질문화생활 향상을 위해 경공업혁명과 봉사혁명을 일으킬 것을 강조했다. 조선중앙통신사 편, 「조선중앙년감 1985」(평양: 조선중앙통신사, 1985), pp. 136~37.

204) 「로동신문」, 1992.6.9.

205) 북한은 1970년대 이후 식생활의 중요성을 강조하면서 「의·식·주」를 「식·의·주」로 그 순서를 바꾸었다.

가. 食糧配給制

북한은 1952년 3월 내각결정 제56호로 「국가식량배급에 관한 규정」을 제정하여 동년 5월부터 식량배급제를 실시하였다. 물론 이러한 정책결정주요배경은 식량부족 때문이었지만 북한이 협동농장원을 제외한 전인민을 대상으로 식량배급제를 실시한 정치·경제적 목적은 무엇이었던가? 첫째, 절대공급부족 상태의 식량을 효율적으로 통제, 분배하고 둘째, 식량통제를 통한 주민통제 즉 순응적 인간을 육성하고 셋째, 배급자에 대한 감사심 즉 지배자에 대한 충성심을 제고하며 넷째, ‘무노동 무임금’식으로 무위도식자를 배제하고 노동의 신성함을 양양시키는데 목적이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²⁰⁶⁾

현재 북한의 식생활 정도는 절대빈곤을 벗어난 수준인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식량은 연간 100만톤 이상이 부족한 형편이다.²⁰⁷⁾ 물론 김일성은 식량부족의 심각성을 느끼고 1956년부터 식량증산에 관한 ‘교시’ 즉 「쌀은 곧 사회주의이다」²⁰⁸⁾를 내리고 강냉이 재배를 장려하였으나 상황은 더욱 악화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즉 이러한 비현실적 「주체농법」은 결국 식량감산의 주원인이 되었다.²⁰⁹⁾ 이

206) 북한연구소, 「북한의 식량사정」 (서울: 북한연구소, 1992), p. 49.

207) 「서울신문」, 1993.8.22일자에서는 KOTRA 자료를 인용, 식량부족분이 113만톤이라고 주장하였다.

208) 김일성, “쌀은 곧 사회주의이다,” 「김일성 저작집 10」 (평양: 조선로동당출판사, 1980), pp. 28~29.

209) 李佑泓, 「가난의 共和國」 (서울: 統一日報社, 1990), pp. 143~66.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북한은 식량을 엄격한 배급제도에 의해 공급하고 더구나 지정된 배급량의 50%를 감자, 옥수수, 밀가루, 조 등으로 대체하고 있으나 그것마저도 개인소비의 절대공급량이 부족한 실정이다.²¹⁰⁾ 따라서 인민들은 항상 적당히 허기진 상태에 있게 되고 이러한 약점을 이용하여 김일성·김정일은 개인기념일에는 환갑상, 진갑상, 생일상 등을 마련해 주는 등 파격적인 선물을 함으로써 감사심과 충성심을 일으키게 한다.²¹¹⁾

한편 노동자에게 취득이 허용된 식량 분량은 적어도 두가지 요인에 의해 결정되는 것으로 보인다. 첫째로 노동자의 작업이 과다한 체력소모를 필요로 하거나 중요한 업무일 경우 800그램 또는 그 이상의 양곡을 배급받을 수 있는 것으로 믿어 진다. 둘째로 배급은 12개 등급으로 나뉘어 성분분류에 따라 차등이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즉 북한의 다른 모든 생활영역에서와 마찬가지로 개인이 배급이나 또는 구매를 통해서 입수할 수 있는 식품의 양은 그 사람의 정치적 지위등급과 직업에 의해서 결정된다. 물론 북한 당국은 이러한 등급구분을 공개적으로 발표하지는 않고 있다. 다음 <표 7>은 북한의 직업별 곡물 배급표이다.

또한 대부분의 인민에게는 15일마다 식량배급을 하게 되어 있다.

210) 실제로는 이보다 더 열악한 '지계미죽'으로 연명하는 것으로 전해진다. 위의 책, p. 25.

211) 북한은 1993년 6월 중 김정일이 80세와 100세 생일을 맞은 노인들에게 「8갑상」과 「10갑상」을 각각 보냈다고 선전하고 있다. 「평양방송」, 1993.6.30.

〈표 7〉 북한인민의 직업별 곡물 배급표

| 수 량 | 대 상 |
|----------|--|
| 900g | 광부, 특수중공업 노동자, 방위 종사자, 공업 노동자, 원양어로 종사자 |
| 850g | 군사정전위원회에 소속된 군사요원, 기타 고위 장교 |
| 800g | 공군 조종사, 특수 장교 |
| 700g | 기타 모든 장교, 경공업 노동자, 사무직 종사자, 엔지니어, 교사, 정부관리, 대학생, 평양 시민 대부분 |
| 700g 이하 | 평양 이외의 주민 |
| 400g | 고교생, 장애인, 55세 이상의 부녀자, 61세 이상 남자 |
| 200~300g | 취학전 아동 |
| 200g | 죄수 |

출처 : 아시아감시위원회·미네소타변호사 인권위원회, 송철복 외역, 「북한의 인권」(서울: 고려원, 1990), pp. 185~86.

그러나 북한은 만성적인 식량부족 타개책으로 감량배급, 절약운동, 애국미헌납운동 등을 실시하고 있다. 북한은 1973년부터 '전쟁비축용' 식량이란 명목으로 전인민들로부터 매월 4일 분량의 양곡을 공제하고 있다. 이로 인해 일반근로자들의 실제 배급량은 700그램에서 600그램으로 축소되었다. 그 결과 가족이 많은 경우 월말에는 식량이 고갈되고 이를 보충하기 위해 시장보다 약 10배정도의 가격으로 농민시장이나 암시장에서 식량이나 생필품을 구입하기는 하지만 이것 역시 절대량이 부족할 뿐만 아니라 지배계층을 제외하고는 철저히 감시·통제되고 있기 때문에 인민들이 그들의 식생

활에 대한 불만정도는 매우 높다. 최근 식량난에서 기인한 것으로 보이는 폭동과 중국으로의 탈주 보도가 이를 증명해 준다.²¹²⁾ 또한 최상의 곡물과 기타 식품은 흔히 해외에 팔기때문에 배급품은 질적으로나 양적으로 떨어질 수 밖에 없다.²¹³⁾

나. 集團主義的 衣服生活

의생활면에서 보면 규격화된 기본작업복과 내의정도는 계절에 따라 염가로 공급되고 있다. 그러나 노동에 기본적으로 필요한 의류이외의 일상복 등은 고위층이나 특수한 직업층에 속하지 않는 사람에게는 그들의 통제정책상 고가로 책정해 두었기 때문에 실용화가 어렵다. 이러한 의류에 대한 통제는 사실상 일반주민들의 의생활 획일화를 불가피하게 하였고 이를 통해 인민들을 효율적으로 통제해 가고 있다. 즉 각종 생산품의 양·질적 통제를 통해 주민들의 욕구수준을 계획적으로 관리하고 있다고 볼 수 있겠다.

또한 의복배정은 인민의 계층에 따라 의복의 질적 차이가 있다. 김일성의 가족과 친척은 의복을 구하는데 제약이 없다. 지배계층과 핵심계층에게는 특별히 지정된 상점에서 양복, 모직물 심지어 모피까지도 살 기회가 주어 진다. 동요계층과 적대계층에게는 의복이 부족하다. 특히 내의, 외투, 양말과 장갑 등이 부족하다. 하위

212) *International Herald Tribune*, Aug. 19, 1993.

213) 아시아감시위원회·미네소타변호사 인권위원회, 송철복 외역, 「북한의 인권」, pp. 189~90.

계층은 질이 낮고 종류도 다양하지 않은 레이온과 나일론 의복을 주로 입는다.

물론 의복은 국가로부터 배정도 받고 구입도 할 수 있다. 노동자들은 <표 8>에서 처럼 매년 국가로부터 한두벌의 의복을 무상으로 받는다고 한다. 농촌에서는 국가가 모든 의복을 제공한다. 상류계층의 개인은 2년마다 양복 한벌을 할인된 가격으로 받는다고 한다.

<표 8> 북한의 의류 공급 기준

| 대 상 | 회 수 | 품목 및 수량 | 비 고 |
|--------|---------|---------|-----|
| 노 동 자 | 연 1~2회 | 작업복 1착 | 무 상 |
| 학 생 | 연 2회 | 교복 1착 | 염 가 |
| 기사, 교원 | 3~4년 1회 | 양복지 1착 | " |
| 4호대상이상 | 2년 1회 | " | 반 액 |

출처: 통일원, 「'92 북한개요」, p. 278.

주: 4호대상은 시·구역·군 당비서, 시·구역·군 행정경제위 부위원장, 2급기업소이상 당 부비서·지배인·기사장급 등을 말한다.

그러나 의복이나 기타 소비재를 사려면 관청에서 발행하는 허가증이 필요하다. 이 허가증은 타인에게 양도도 안되고 팔 수도 없다. 이것은 모든 소비품의 구입이 정부가 부여하는 특권이라는 견해를 뒷받침해 준다. 따라서 북한의 의생활은 우리로서는 상상하기 어려울 정도로 열악하다. 속내의류의 절대부족으로 인민 대부분이 ‘팬티나 런닝은 여름철에만 입는 것’, ‘하절기에는 양말을 신지 않는 것’으로 인식하고 있다 한다. 북한은 섬유부족을 해결하기 위해 「의류생산에서 자투리 없애기운동」과 「옷감재단에서 1센티

절약운동」을 전개하고 있다. 신발류도 절대부족하여 노동자와 학생들은 2개월에 1켄레씩의 운동화와 노동화를, 사무원은 1년에 구두 1켄레씩을 공급하도록 되어 있는 규정과는 달리 노동자와 학생들은 1년에 운동화·노동화 1켄레씩 대학생이나 행정기관 관리들은 2년에 구두 1켄레를 지급받고 있는 실정이다.²¹⁴⁾

다. 非文化的 住居生活

주거생활면에 있어서 주민통제정책을 보면 북한에서는 건물의 개인소유도 또한 개인건축도 인정될 수 없는 것이며 이러한 조건하에서 개인의 취향이나 개성에 알맞는 설계는 존재하지 않는다. 다만 계층과 직위에 따라 규격화된 각등급의 독립가옥 또는 아파트를 임대형식으로 할당받는다. 따라서 북한의 주생활양식은 집단 거주중심의 아파트형 또는 연립주택형의 집단주의적인 생활양식만이 인정되고 있다.²¹⁵⁾

사유재산이 제한된 가운데 일반주택설계는 침식위주로 되어 있고 문화생활이란 고려되지 않고 있고 공간도 공동적일 수밖에 없다. 이것은 주민들을 집단적으로 수용함으로써 이들의 일거일동을 당에서 지휘·통제하는데 용이하도록 하며 도시풍경을 규격화하고 그러한 도시환경 생활을 통해 주민들의 사고를 규격화 하려는데

214) 「世界日報」, 1993.9.15.

215) 北韓研究所, 「北韓社會論」(서울: 北韓研究所, 1977), pp. 196~98.

의도가 있는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노동력의 집단적 수용과 이들에 대한 일상적 감시를 용이하게 하는 생활환경이 마련된 것이다.

한편 <표 9> <표 10>에서 보는 것처럼 계층과 신분에 따라 주거

<표 9> 계층별 주택구조(평양)

| 구분 | 주택형 | 가옥구조 | 입주대상자 |
|----|----------------|--|--|
| 특호 | 독립고급주택 | · 독립식 다층 또는 2층 주택 · 정원 · 수세식 변소 · 냉온방장치 | · 중앙당 부부장급 이상 · 정무원 부부장급 이상 · 인민군 소장급 이상 |
| 4호 | 신형고층아파트 | · 방 2개 이상 · 목욕탕 및 수세식 변소 · 베란다, 냉온수시설 | · 중앙당 과장급 이상 · 정무원 국장급 이상 · 대학교수 · 인민군 대좌 · 문예단체 간부 · 기업소 책임자 |
| 3호 | 중급단독주택 및 신형아파트 | · 방 2개 · 부엌 · 창고 | · 중앙기관 지도원 · 도단위 부부장급 · 기업소 부장 |
| 2호 | 일반아파트 | · 방 1~2개 · 마루방 1, 부엌 1 | · 인민학교 · 고등중학교장 · 일반 노동자 · 사무원 |
| 1호 | 집단공영주택 | · 방 1~2, 부엌 1 | · 말단근로자 및 사무원 |
| | 농촌문화주택 | · 단층 연립주택 · 방 2, 부엌 1, 창고 1 | · 협동농장원 |
| | 구옥 | · 방 2~3개의 농촌 기존 구옥 | · 변두리 농민 |

출처: 통일원, 「'92 북한개요」, p. 282.

〈표 10〉 신분별 거주지역 실태 (평양)

| 지 역 | 신 분 | |
|-----------|----------|---|
| 중 구 역 | 창광거리 | 중앙당 및 정무원 간부 |
| | 승리거리 | 예술·문화인, 체육부문 종사자 |
| | 안상택거리 | 국가에 거금을 헌납한 재일동포가족 |
| | 버드나무 거 리 | 호텔, 외화상점 등이 산재한 상가 ※ 외국인 접대시 관광코스임 |
| 동 대 원 구 역 | 문수거리 | 배우, 가수 등 연예인, 교육자, 과학부서 근무자 ※ 학교, 학원 등이 산재 |
| 대 동 강 구 역 | 낙원거리 | 중간층 일반 노동자 ※ 방직공장 및 각종 기계공장이 산재 |
| 만 경 대 구 역 | 광복거리 | 인민군 고위군관, 출판 및 보도부문 종사자, 언론인, 국가에 공헌한 재외 동포 가족·친지 등 |
| 서성구역 | 비파거리 | 일반서민층 (구가옥 지대임) |
| 낙랑구역 | 통일거리 | 현재 건설중 |

출처:北韓問題研究所, 「最近北韓實相」(서울:北韓問題研究所, 1993.10), p. 29.

지역과 주택규모가 차별화 된다. 즉 모든 주택배정은 실제로는 당이나 정부기관이 통제하며 주택배정은 배정받을 사람의 정치적 지위나 사회의 등급에 따라 좌우된다고 한다. 지배집단은 단독주택이나 또는 쾌적한 고급 대형 아파트에 산다.

전형적인 단독주택은 정원이 있는 단층이거나 2층으로 냉온수 설비와 수세식 변소가 딸려있다. 아파트 건물은 전형적으로 8내지 15층이며 침실 두개와 수세식 변소가 딸린 개인 욕실과 냉온수 설비가 되어 있다고 한다. 선발된 지도자 그룹에게는 전화가 가설되

어 있다. 대체로 고위지도자들은 아파트의 하층에 거주하는데 승강기가 있는 경우에도 전력부족으로 인해 정지나 고장이 잦기 때문이라 한다. 거주자의 신분은 정부 부처의 부부장, 당의 부부장, 대학교수와 여러 국영기업체의 장이다.

또한 지난 20년 동안 건설의 질은 향상되었지만 지배계층의 주택에 조차 결함이 있다. 즉 승강기의 결여, 정전사태, 온수부족 등의 문제가 있다.

김정일이 등장한 1970년대 이후 ‘살림집’ 건축량이 크게 증가되었음에도 평양을 포함한 전국에 여전히 주택이 부족하다. 특권층의 신혼부부까지도 1년동안 아파트 입주를 대기하면서 별거생활을 하지 않을 수 없다. 그러나 이것은 극히 예외적인 사례이고 대부분의 신혼부부는 부모의 아파트에서 무한정 살고 있다.²¹⁶⁾

또한 평양의 비핵심계층의 인민은 여전히 조잡한 주택에서 살고 있다. 그들이 사는 일부 건물은 「판잣집」으로 표현되어 왔다. 농촌 주택은 보통 방이 하나 내지 둘인 단독주택으로 2가구가 사는 것 같다. 대부분의 농촌 인민들은 우물물을 쓰고 가택외에 위치한 화장실을 사용한다.²¹⁷⁾

결국 북한은 모든 생활수단을 독점하여 엄격한 배급배정제도에 의한 분배체제를 채택함으로써 첫째, 사적·비공식적 유통과정을

216) 1992. 6. 30, 귀순자 김영성씨의 증언. 그는 일반 신혼부부는 7~8년 후에야 주택을 배정받는다고 증언하였다.

217) 아시아감시위원회·미네소타변호사 인권위원회, 송철복 외역, 「북한의 인권」, pp. 192~193.

최대한 억제하고 둘째, 생산품의 양·질을 획일화하여 당의 의도대로 통제하고 셋째, 일반주민들의 욕구수준과 기대체제를 관리하여 소비성을 최대한 억제함으로써 김일성·김정일에 대한 충성심을 극대화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²¹⁸⁾

북한당국자들은 북한을 무계급사회라고 규정하고 있다. 사회주의 체제의 완성을 통한 평등사회의 실현은 북한의 국가목표이다. 즉 「우리식 사회주의」의 근본목적을 ‘완전한 무계급’사회에 두고 있다. 그러나 현실은 구소련의 「노멘클라투라」나 중국의 「태자당」에서 발견되는 것과 유사한 질라스형의 「신계급」이 북한에도 존재할 가능성이 높다.²¹⁹⁾ 따라서 북한도 사회주의적 불평등사회라고 할 수 있다.

4. 人間改造와 情報·社會 統制

가. 人間改造 事業

주체사상의 기본원칙중의 하나가 인간개조의 문제이다. 즉 공산주의적 ‘품성’²²⁰⁾을 갖춘 ‘은실인간’²²¹⁾을 주조하기 위해 인위적으로

218) 北韓研究所, 「北韓社會論」, p. 198.

219) 평화문제연구소, 「북한의 인권백서」, pp. 142~43.

220) 이 품성은 첫째, 어머니다운 품성, 둘째, 겸손성과 소박성, 셋째, 풍부한 인간성과 문화성 등이다. 사회과학출판사, 「위대한 주체 사상총서 10: 령도예술」(평양: 사회과학출판사, 1985), p. 226.

221) 변진홍, 「평양에 부는 바람」(서울: 사람과 사람, 1993), p. 196.

인간의 성질을 개조하자는 것이다. 물론 사회주의 사회를 건설하기 위해서는 이타주의적·집단주의적 사고방식을 가진 인간이 필요하다. 왜냐하면 개인이나 특정계급의 이익을 추구하는 인간들로서는 평등사회인 공산국가를 만들지 못하기 때문이다. 이러한 인간개조정책은 개인의 행동양식을 획일화시키고 창의성과 자발성을 위축시키게 된다. 특히 주체사상이 「수령론」으로 귀결됨에 따라 주체사상에서 주장하는 ‘사람의 자주성, 창조성, 의식성’은 소멸되어지게 된다.²²²⁾ 한편 북한의 사회주의 발전전략인 사상혁명, 기술혁명, 문화혁명 등 3대혁명 중에서도 가장 중요시되는 것이 사상혁명이라는 점에서도 북한이 인민의 의식화에 얼마나 많은 비중을 두는가를 유추해 볼 수 있다.

북한에서는 우민화정책을 통해 피치자들이 정치적으로 무관심한 순응적 인간을 대량생산하고 있다. 즉 정치적 무관심 정책으로는 일반적으로 3S정책이 채택되고 있지만 북한에서는 피치자들이 정치적 관심을 갖지 못하도록 하기 위한 정책으로 이상화정책을 채택하고 있다. 오직 1인에게만 맹종하도록 선전·선동함으로써 탈정치화된 인간을 만들어 복종적 인간을 주조해 내고 있다.

북한은 연례적으로 만경대에서 「광복의 천리길 답사행군」을 실천하고 청소년·학생들에게 김일성에 대한 충성을 다짐하게 했다.

222) 실제로 북한에서는 김일성·김정일을 제외하고 주체사상을 재해석할 수 있는 사람은 없다. 또한 김일성 부자는 알파와 오메가라 할 수 있다. 알렉산더 제빈, 엄충섭 역, 「평양 서울 그리고 모스크바」 (서울: 동아일보사, 1991), pp. 143~47.

「충성의 편지 이어달리기」, 「김일성·김정일화 가꾸기」, 「쌍무지개 등장」 등 수많은 상징조작을 통해 단세포적 인간개조를 시도하고 있다. 특히 김일성의 생일과 관련하여 「로동신문」, 「평양방송」, 「중앙방송」 등 제반 언론매체에서는 김일성을 극찬하여 신격화하고 김일성과 혁명, 김일성과 당, 김일성과 인민과의 불가분리성을 강조하고 있다.

또한 김정일에 대해서는 「구호나무」를 통한 후계자 정당화작업을 하고 있다. 즉 북한은 1987년부터 ‘민족의 태양 김일성장군, 그 태양빛 이어갈 백두광명성’ 등 김정일을 후계자로 원하는 수많은 구호가 적힌 나무들이 백두산 일대를 비롯해 남쪽의 군사분계선, 동·서해안 등지에서 발견되었다고 선전하고 있다.²²³⁾

이상과 같은 일련의 우상화정책은 현재로서 북한이 주민조작을 위해 채택할 수 있는 최고의 방책인 동시에 선택의 여지가 없는 최후의 수단일지도 모른다. 왜냐하면 어떤 면에서는 지도자의 신격화를 필요로 한다고 하는 사실은 신격화하지 않고는 권력이 유지될 수 없고 효과적으로 주민을 통제할 수 없다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이다.

결국 북한은 인민의식을 개조하여 김일성·김정일이라는 용어만 나오면 자동반사적으로 찬양과 칭송을 하는 파블로프(Pavlov)류의 일차원적 인간들만 양성하고 있다.

223) 구체적인 김정일 찬양사례는 통일원, 「김정일우상화 사례집」(서울: 통일원, 1992) 참조.

나. 情報의 劃一化

언론의 자유는 인간의 가장 중요한 기본권 중의 하나이다. 인간은 삶의 질의 향상을 위해 필요한 정보를 교환하여야 한다. 그러나 북한의 언론은 이러한 정보제공의 기능은 도외시하고 주체사상에 입각한 김일성주의의 일방적 선전에만 주력하고 있다. 일반적으로 사회주의 국가들의 언론들이 지배이데올로기인 맑스-레닌주의를 피지배자들에게 선전·교육하는 기능을 하지만 북한의 그것은 특이하다고 할 수 있다. 김일성은 당 제3차대회에서 “출판물은 당과 대중을 련결시키는 중요한 수단이며 당이 내세운 정치, 경제, 문화건설의 과업실천에로 근로대중을 조직동원하는 힘있는 무기입니다”²²⁴⁾고 강조하여 언론의 동원적 기능을 분명히 하였다. 따라서 북한언론은 당성과 계급성, 인민성을 확보해야 하고 집단적 선전, 선동, 조직자로서 기능해야 하는 의무를 지고 있다.

「로동신문」을 필두로 북한신문은 정권초기부터 계급투쟁의 무기로 사용되어져 왔다. 따라서 북한 신문은 당과 조직속에서의 사업을 강조한다. 또한 모든 신문사업이 당의 정책에 철두철미 복종해야 하고 이것을 선전·선동해야 한다. 결국 북한 신문의 사회적 기능은 신문의 계급성에 의해 결정된다. 즉 이것은 북한 신문이 계급투쟁의 무기라는 것을 의미한다. 북한에서는 계급투쟁의 사상적 무기 중에서도 신문은 ‘가장 예리하고도 전투적이며 기동적인 무

224) 김일성, “조선로동당 제3차대회에서 한 중앙위원회사업총화보고,” 「김일성 저작집 10」(평양: 조선로동당출판사, 1980), p. 296.

기'이다.

방송도 신문과 같이 계급투쟁의 사상적 무기 가운데서도 '가장 예리하고도 전투적이며 기동적인 무기'로서 기능하게 된다. 김일성은 1956년 3월 1일 「문화선전사업을 개선강화하는데서 나서는 몇 가지 문제에 대하여」라는 담화에서 “방송은 우리 당의 노선과 정책을 대내외에 널리 해설선전하며 인민대중을 혁명과 건설에로 조직동원하는 위력한 선전선동수단의 하나입니다”²²⁵⁾라고 말하여 방송의 임무는 오로지 인민동원에 필요한 선동선동수단임을 분명히 했다. 이에 따라 방송은 당의 정책을 선전·선동하며 대중을 조직하게 되며 엄격한 정부의 통제를 받는다.

김일성은 방송이 당의 노선과 정책을 대내외에 널리 해설·선전하여야 일반대중을 혁명으로 조직·동원할 수 있으며 사회주의건설을 성공적으로 진행해 나갈 수 있다고 피력하였다. 특히 김일성은 전술한 「담화」에서 “현시기 방송사업에서 당면한 것은 문화교양자적 역할을 원활히 수행하기 위해 당원들과 근로자들에 대해 당정책 교양과 혁명전통교양, 계급교양과 사회주의교양을 강화하는데 주된 힘을 넣는 것”이라고 강조하였다.

김일성의 이러한 언급은 사회주의 건설을 위해 인민대중을 동원하고 이들에게 사회주의교양을 전달하는 것이 북한 방송의 주요한 역할임을 나타내 주고 있다. 이러한 김일성의 방송관은 주체사상의 강조와 함께 지속적인 영향력을 나타내고 있다.

225) 위의 책, p. 97.

북한 헌법 67조에도 분명히 언론의 자유가 명시되어 있지만 자유주의의 상업주의적 언론의 자유와는 분명히 다르다. 북한은 “언론·출판·집회·결사의 자유는 우리 당의 로선과 정책을 철저히 관철하고 프롤레타리아독재를 가일층 강화하며 인민들의 정치사상적 통일과 단결을 강화하여 그들을 당과 수령의 주위에 튼튼히 묶어세우는데 철저히 복무한다. … 조국과 인민의 원수에 대해서는 이러한 권위와 자유를 절대로 줄 수 없다”²²⁶⁾고 하여 언론의 계급성을 분명히 하였다.

따라서 김일성·김정일 체제유지에 불필요한 정보의 차단을 위해 텔레비전이나 라디오의 채널을 고정시키고 있다. 결국 북한 신문이나 방송은 개인생활의 질을 향상시킬 수 있는 정보제공기능, 개인보호기능, 정부감시기능, 문화전달자적 기능, 오락·광고기능을 수행하기 보다는 김일성·김정일 노선의 정당화 기능, 인민감시·고발 기능만을 수행함으로써 인권침해의 주역이 되고 있다.²²⁷⁾ 그러나 이로 인해 유언비어 즉 「비통(비밀통신)」이 실질적 언론 역할을 하고 있고 북한인민들은 이를 통해 북내부 사정, 남한의 경제발전, 사회주의의 몰락 등에 관한 소식은 접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226) 「정치용어사전」(평양: 사회과학출판사, 1970), p. 689.

227) 金永周, “言論政策과 言論構造,” 고현욱 외, 「북한사회의 구조와 변화」(서울: 경남대학교 극동문제연구소, 1990), pp. 371~73.

다. 社會生活 規制

북한은 인간의 자유로운 활동을 최대한 제한함으로써 정보교환으로 인한 체제부정적 일탈행위를 방지하고 있다. 따라서 북한인민들은 능력과 기호에 따른 주거지 선택의 자유가 없다. 즉 당국의 허가없이 인민들은 자의로 주거지를 이동할 수 없다. 만일 주거지를 허가없이 이동하였을 경우 주거등록을 할 수 없고 공민증이 없으면 어디에서도 직장을 구할 수가 없을 뿐만 아니라 식량배급도 받을 수 없다.²²⁸⁾

북한은 치안확보를 이유삼아 여행을 최대한으로 제한하고 있으며 여행시에는 소속 사회안전부에서 발행하는 통행증을 소지해야 한다. 증언에 의하면 인민들은 이 통행증을 신속히 받기 위해 뇌물을 바친다고 한다.²²⁹⁾ 이러한 여행 제한에는 그 이면에 담겨진 잠재적 의도가 있음을 알 수 있다. 그 이유는 첫째, 사회주의 사회에서는 생산과 노동을 강조하여 여행을 곧 노동력의 상실로 보고 있기 때문이고 둘째, 여행기간동안 심리적 해이를 수반한다고 보기 때문이며 셋째, 서로의 정보교환을 통해 정부정책에 대한 비판의 계기를 마련해 준다고 보고 있기 때문이다.²³⁰⁾

북한인민은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개인여행이 불가능하고²³¹⁾

228) 김현희, 「이제 여자가 되고 싶어요」 제2부 (서울: 고려원, 1991), pp. 141~42.

229) 위의 책, p. 142; 평화문제연구소, 「북한의 인권백서」, p. 119.

230)北韓研究所, 「北韓社會論」, p. 545

공무여행을 하는 경우에도 공민증, 신분증, 신임장, 출장증을 갖추어야 하며 비록 이러한 증명서류를 소지한다 할지라도 특수지역에의 여행은 크게 제한된다. 즉 휴전선 접경지역이나 해안선 그리고 군사시설지대에 대한 여행통제는 매우 심하다. 북한인민들은 여행중에도 심리적 압박이 매우 심하다. 왜냐하면 모든 직장성원에게 일정한 작업량이 정해져 있기 때문에 여행으로 그 작업량이 완수되지 못할 때에는 성적평정에 영향을 받기 때문이다. 성적평정이 나쁘면 태만자로 분류되고 그것은 배급, 자녀들의 진학 등에 영향을 미치게 된다.²³²⁾

또한 북한에서는 직업선택의 자유가 없다. 북한에서는 1958년말을 기하여 개인적인 상공업활동은 금지되었으며 개인의 사유재산제가 인정되지 않음으로써 일체의 생산공장, 경제기관, 문화, 후생, 의료, 서비스기관들은 모두가 국영 또는 협동단체 경영이라는 명목아래 당에 의해 장악되었다. 북한인민들의 취업은 개인선택에 의한 자유경쟁이 아니고 당의 직접적인 지시를 받고 소정의 엄격한 절차를 밟아 이루어지게 된다. 인민들은 각자의 능력, 관심, 업적을 통해 임의로 선택되는 것이 아니고 노동부와 간부부를 통해 정치적 신임도 즉 성분을 확인한 후 배치장 또는 소개장을 발부하여 해당 직장에 배속케 된다. 대체로 '무리배치'가 주를 이룬다고 한다.²³³⁾

231) 평화문제연구소, 「북한의 인권백서」, pp. 134~137.

232) 極東問題研究所, 「北韓全書(中)」(서울: 極東問題研究所, 1974), p. 209.

일단 취업을 한 후는 그 직장이 기호에 맞지 않는다고 하여 직장을 변경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그것은 계획경제를 시행함에 있어 사회주의 경제건설에 위배되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직장을 무단이탈하면 다른 직장을 얻을 수 없으며 직장없이 노동을 하지 않으면 식량을 위시한 모든 배급에서 제외된다. 북한은 이미 1953년 8월 31일 기업소 및 기관의 노동자, 사무원들이 임의로 직장을 이탈하는 행위를 일절 금지토록 하는 규정을 채택하였다.²³⁴⁾

이같은 조치는 노동력의 유동으로 인한 노동력 손실의 방지와 노동력의 완전장악을 통해 계획경제를 조직적으로 수행하려 하는데 있다. 뿐만 아니라 직장을 통한 이러한 주민들의 제도적 규제는 곧 심리적인 복종을 강요하는 것이며 그것은 또한 당에 대한 충성을 요구하는 방편이 될 수 있을 것이다. 즉 노동조직은 내적 사회체제에 깊이 연관되어 있으며 노동조직의 종류, 규모, 기계 및 시설의 배치 등은 노동집단의 인간적 상호관계를 규제하며 그것은 개인의 의식구조, 행위양식에 영향을 미칠뿐 아니라 전체사회의 내적결합과 귀속감을 형성하는데 깊이 관련된다고 보는 산업심리적 집단역학을 활용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²³⁵⁾

북한은 사회통제 효과를 극대화 시키기 위해 인민반, 5호담당제 등을 통해 상호감시하도록 하는 비인간적 정책을 시행하고 있다. 인민반조직은 동인민위원회 산하에 15~20세대 단위로 조직되어

233) 평화문제연구소, 「북한의 인권백서」, pp. 117~118.

234) 北韓研究所, 「北韓社會論」, p. 547.

235) 위의 책, p. 548.

있다. 이것은 행정의 가장 기층조직으로서 행정의 효율화에 우선적 목적이 있겠지만 이를 통해 인민의 전·출입 감시, 노력 및 행사동원, 인민의 사상교양 등을 실시함으로써 집단주의 강화와 체제보위를 실현하고 있다.²³⁶⁾

5호담당제는 1958년 7월 김일성이 “유급간부 한사람이 5호씩만 책임지고 교양사업과 경제과업 등 일체를 지도하도록해서 리사업을 추켜 세우며 리당위원회에서 그들을 모아 놓고 과업을 주고 그 집행정형을 총화하면 일이 잘된다”²³⁷⁾고 ‘교시’함으로서 전세대를 5호씩 나누워 열성당원 1명을 배치하면서 시작되었다. 결국 이 제도는 열성당원인 5호담당관이 타가정의 사상을 감시하고 교육함으로써 가정간의 인간관계를 파괴하였고 상호불신과 질투심을 높이는 부작용을 낳았다.²³⁸⁾ 특히 각종 「총화」를 통해 「비판과 자기비판」을 하도록 함으로써 비인간화를 더욱 촉진시켰다.

한편 북한은 ‘방충망’식 개방원칙에 입각하여 대외홍보용이긴 하지만 1988년부터 새로운 종교정책²³⁹⁾에 의하여 봉수교회, 장충성당 등을 설립하였고, 일부 외국인과 당간부를 위해 골프장, 가라오케,

236) 위의 책, p. 220.

237) 「로동신문」, 1967.9.13.

238) 北韓研究所, 「北韓社會論」, p. 221.

239) 북한은 주체사상을 종교화하기 위하여 종교의 실천적 측면을 강조하기 시작하였다. 즉 북한은 종교를 주체사상의 하위개념으로 해석하고 종교를 인정하기 시작하였다. 자세한 내용은 박승덕, “주체사상의 종교관” 북미주기독자회 1989-1992 연례대회 자료집, 「기독교와 주체사상」(서울: 신앙과 지성사, 1993), pp. 182~94 참조.

유료택시 등을 설립하였다. 그리고 국가재정 확충을 위해 양성된 ‘외화벌이꾼’, 선진학문습득을 위한 해외유학생, 김일성·김정일체제 지지용인 조총련계 및 기타 해외교포, 극소수의 외국관광객과 체제홍보를 위한 국제학술회의 및 국제체육행사 참가자 등의 증가는 해외정보의 유입원이 되고 있다. 따라서 이러한 요소들은 향후 ‘트로이의 목마’가 될 가능성도 있다.

第 V 章 北韓 人權問題와 體制變化

1. 北韓體制 變化要因으로서의 人權問題

북한은 역사적으로 대내적 통제와 대외적 폐쇄를 통해 국가체제를 유지해 왔다. 주체사상이라는 지배이데올로기는 지배자들의 지배연장을 위한 허위의식이었고 결국은 인민들의 사고와 행동을 제약하는 족쇄역할을 하였다. 그 결과 북한은 가장 열악한 인권상황에 처하게 되었다. 인민들은 자율적 사고를 하지 못하였고 지배자들의 무한정한 인권탄압에도 순응하여 왔다.

북한의 인권 피억압자들은 구소련, 동구에서처럼 인권통제에 대한 불만을 외부로 표출시키지 못하고 잠재화시키고 있는 이유는 무엇인가?

첫째, 북한은 단일민족일 뿐만 아니라 동구 사회주의 국가들처럼 구소련과의 민족갈등이나 '신계급'이라 할 수 있을 정도의 계급갈등이 심화된 상태는 아니라는 점이다. 즉 외국군 주둔, 외국에 의한 내정간섭 등 외국과의 직접적인 민족갈등 요인이나 절저한 계급청산정책으로 인해 심각한 정도의 계급갈등 요인이 노정되지 않았음으로써 지배자 즉 김일성·김정일 통치방식에 대한 조직적 저항이 부재한 것으로 볼 수 있다.

둘째, 철저한 폐쇄·통제정책이다. 북한에는 당기구, 국가보위부, 사회안전부 등 억압 및 정보통제기구가 발달되어 있다. 따라서 인

민들의 불만은 잠재화 될 수 밖에 없다. 또한 이로 인해 인권탄압 사례를 직접 목격·조사하기가 매우 어렵다. 현재까지 보도된 북한인권 상황은 최근 시베리아 별목장에서 인권탄압 사례가 있었기는 하지만²⁴⁰⁾ 실제적 관측이 아닌 대부분 귀순자들과의 인터뷰 내용을 종합한 결과인 사실에서도 유추할 수 있듯이 철저한 비밀속에 있다. 따라서 북한은 북한내 인권탄압 사례를 부정하고 있을 정도이다.²⁴¹⁾

셋째, 인권통제의 범위가 법률적·정치적·경제적·사회적·문화적 제분야에 걸쳐 총체적이라는 점이다. 대체로 자본주의 국가에서는 경제적 불평등으로 인한 인권문제가, 사회주의 사회에서는 정치적 부자유로 인한 인권문제가 발생하는 것으로 주장되고 있으나 북한에서는 양분야 모두에서 인권부재 상황이 노정되고 있다. 따라서 문학·종교활동 등 부분적 자유를 향유했던 동구 사회주의 국가들과는 달리 인권하위상태의 일상화로 인해 분야간 인권통제상태의 비교가 곤란하고 결국 인민들이 인권통제의 심각성을 자각하지 못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또한 수령에 대한 경외감, 운명론,

240) 최근 시베리아 별목장에서 사용되는 고문형구가 공개되었다. 「東亞日報」, 1993.8.17.

241) 북한은 「로동신문」 사설을 통해 ‘인민대중이 국가와 사회의 주인으로서 누구나 평등한 정치적 권리와 자유를 보장받고 있으며 아무런 근심걱정없이 살고 있다’고 주장하면서, 인권문제는 없다고 강조하였다. 「로동신문」, 1993.6.21. 김정일, “인민대중중심의 우리식 사회주의는 필승불패이다,” 「친애하는 지도자 김정일동지의 문헌집」, pp. 350~51.

선전선동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결과인 것으로 생각되는 ‘인권 불감증’이 팽배해 있다. 물론 이것은 유교적 가부장제적 유습일 수도 있다. 즉 신민형적 정치적 무관심층이 인민의 대다수일 가능성이 높다.

넷째, 지리적 특수성이다. ‘원쭉’관계인 남한, 사회주의 국가인 중국, 혼란중인 러시아 등은 북한인권에 대한 문제제기의 여력을 갖지 못함으로써 「헬싱키협정」과 같은 동구에 대한 서구의 정치적 지원 기대를 무망하게 만들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즉, 동구국가들이 자유주의인 서구와의 지리적 인접성으로 인해 정보 뿐만 아니라 정치적·경제적·문화적 지원을 받을 수 있었던 것과 달리 북한은 사회주의 국가였던 구소련, 중국과의 인접성 등과 같은 지정학적 조건으로 인해 외부영향을 거의 받지 않아 왔다.

구소련을 비롯한 동구 공산권에서 지식인 중심의 인권운동은 사실상 그들 체제에 대한 반대운동적인 성격보다는 인민의 기본권 확보에 보다 많은 관심과 비중을 두고 있었다는 점이 특징이라 할 수 있다.²⁴²⁾ 동구는 이미 공산화 이전에 부분적으로 민주주의 경험을 보유하고 있었고 따라서 사회주의 체제하에서도 자의식을 소유한 지식인들이 존재하였었다. 즉 미미하지만 ‘시민사회’가 발달했었다는 점에서 체제변화에 있어서 인민의 역할을 전적으로 부정할 수는 없을 것이다.

특히 1950~60년대의 구소련, 동구에서 발생한 인권운동은 위와

242) 趙政男, 「蘇聯反體制論」, p. 29.

같은 서구적 전통의 산물이라 할 수 있을 것이다. 이러한 인권운동은 1975년 「헬싱키협정」이 체결된 이후부터는 보다 활성화되었다. 즉 「헬싱키협정」은 구소련이 사회주의 체제와 블럭을 인정받는 대신 인권개선에 관한 조항삽입을 인정함으로써 구소련, 동구의 반체제 지식인들을 고무시켰다. 「헬싱키협정」을 기점으로 체코에서는 「77헌장」이 탄생하게 되었고 이 「77헌장」은 동구 각국의 인권운동에 영향을 미쳤다.

물론 「헬싱키협정」이 체결되게 된 배경은 당시 유럽이 자본주의와 사회주의로 블럭화되어 있어서 블럭사이의 이해관계가 일치되었을 뿐만 아니라, 유럽은 나폴레옹전쟁 이후 비인체제를 유지한 경험이 있었기 때문이라 할 수 있다. 또한 중요한 것은 사회주의 국가였던 구소련이 「유럽안보·협력회의(CSCE)」 결성을 강력히 희망했다는 점이다.

다섯째, 북한에서는 최고지도자의 교체경험이 없었고 이에 따른 노선변경이나 갈등이 부재하였다. 또한 공산화 이전시기에도 지배자에 대한 조직적 저항경험이 없었다.

위와 같은 이유로 북한 인권상황은 최악의 상태이고 인권개선을 위한 구체적 행동이 발견되고 있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의문은 과연 북한내에는 인권탄압에 대항할 수 있는 최소한의 세력마저도 부재할 것인가에 모아진다. 즉 우리는 향후 북한 변화와 관련하여 북한에서 상대적으로 인권을 억압받고 있는 세력들은 어떤 부류이며 이들은 인권개선을 위해 어떤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인가를 천착해 볼 필요가 있다.

앞 장에서 고찰한 바대로 북한 인권통제에 의해 불이익을 당한 부류는 첫째, 김일성과 권력투쟁에서 희생당한 해외망명자나 김정일과의 권력투쟁에서 소외된 친·인척, 둘째, 「당적 지도」를 당한 당·정·군에 걸친 소외엘리트 또는 비친·인척, 셋째, 대부분이 적대계층으로 분류된 약400만 인민과 「특별독재대상구역」 수감자 약 20만명 등으로 구분해 볼 수 있다. 물론 이들의 불만은 대체로 잠재되어 있다고 볼 수 있다. 즉 당기구, 국가보위부, 사회안전부 등의 강력한 통제에 의해 불만은 외부로 표출되지 못하고 있을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잠재적 불만은 체제유지 규제력이 약화되면 외부로 자연발생적으로 표출될 수밖에 없다. 즉 이러한 규제력은 첫째, 김일성·김정일, 둘째, 강압기구, 셋째, 외부정보통제 등을 들 수 있는 바, 규제력이 약화되면 인민들의 불만이 외부로 표출되어 북한도 변화될 수 밖에 없을 것이다.

2. 北韓 人權運動 活性化와 體制變化

위와 같은 이유에서 우리는 북한의 규제력을 약화시키고 인민의 불만을 표출시킬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 물론 보다 근본적으로는 다음과 같은 이유에서 북한 인권개선과 인권운동 활성화를 위해 최선을 다해야 한다. 즉, 도덕적 이유, 정치적 이유, 동포애적·민족주의적 이유가 그것들이다.

첫째, 도덕적 이유는 북한인민들도 우리와 같은 인간이기 때문에 인간다운 삶을 살 권리가 있다는 점이다. 현실적으로 북한인민

들은 같은 종족인 남한국민들과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의 정치적 억압과 경제적 궁핍속에서 생활하고 있다. 그동안 남북 양측은 체제경쟁을 계속하여 왔고 그 부산물로 남북 양체제는 양태는 달랐지만 독재적 권위주의체제가 생성되었다. 그러나 남한은 지속적인 민주화과정을 통해 권위주의체제를 청산하고 민주체제를 탄생시켰으나 북한은 현존 사회주의의 몰락에도 불구하고 권위주의체제 청산과는 반대로 「우리식 사회주의」를 더욱 강조하고 있고 인민일탈 방지를 위해 비인간적인 인간개조사업을 지속하고 있다.

둘째로 정치적 이유는 다음과 같다. 북한은 앙골라(Angola) 등과 함께 세계에서 「가장 부자유한 국가」 또는 인권최빈국으로 분류되고 있다. 오늘날 북한 인권상황이 최악에 이르게 된 이유는 전술한 바대로 해방후 열악한 지지기반을 무시한 김일성의 무리한 소비에트화 정책에서 기인한다. 김일성은 정권장악을 위해 테러와 각종 권모술수를 통한 정적제거 방법을 채택하였다.

당조직지도부, 국가보위부, 사회안전부 등 각종 강제기구를 통해 인민들을 억압하고 충성을 강요하고 있다. 그러나 권력엘리트들은 기득권 유지를 위해 체제 도전세력을 탄압하고 있고 인민들은 감시와 무관심으로 인해 무력화되어 있다. 따라서 외부에 의한 북한 인권개선을 통해 잠재해 있을 지도 모를 반정부나 반체제인사들의 활동을 보장해 주고 새로운 반체제인사들이 자생할 수 있는 근거를 제공해 줄 필요가 있다.

또한 북한의 급격한 붕괴에 의한 통일은 통독후처럼 그 후유증이 심각할 것으로 예측되는 바, 북한체제의 점진적 변화후 「유연

한 정권」과의 통일이 바람직할 것이다. 즉 북한의 민주화를 통해 민주적 정권이 탄생되면 그 정권과 남한정권이 대화를 통해 통일 국가를 이룩하여야 한다는 것이다. 통일의 당위성이 비용의 최소성을 능가하지 못한다는 의미이다. 그런 측면에서 북한 붕괴에 의한 흡수통일은 지양되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북한내에 야당이 생성되도록 하고 언론, 집회, 결사의 실질적 자유가 보장되도록 해야 한다. 따라서 우리는 북한인권에 대해 관심을 가져야하고 필요한 제도적 장치를 강구해야 한다.

구소련·동구에서는 최소한의 인권운동이 가능하였다. 구소련의 솔제니친이나 사하로프 등은 비록 그들이 탄압은 받았으나 반체제 활동이 가능하였고 이것이 서방에 알려져 인권문제가 심각하게 제기 되었다. 비록 ‘고르바초프 효과’에 의해 동구가 자유화 되었지만 동구의 「민주광장」, 「자유노조」, 「노이에스포럼」, 「77그룹」 등 인권운동집단은 민주화에 일역을 담당하였다. 따라서 비판활동을 할 수 있는 최소한의 자유가 북한에서도 보장되어야 한다.

셋째로 동포애적·민족주의적 이유로서 통일후 후유증을 최소화 하기 위해 북한인권은 개선되어야 한다. 최근 통독후 주로 동독지역에서 등장한 신나찌주의는 민족주의라는 명분으로 외국인을 공격하는 병리현상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현재의 북한 인권상황의 개선없이 통일이 된다면 독일과 형태는 다르겠지만 각종 병리현상이 나타날 가능성이 높을 것으로 보인다. 즉 북한의 자율성이 결여된 획일주의적이고 집단주의적인 ‘품성’은 개인주의와 자율을 바탕으로 남한과의 동화를 근본적으로 파괴할 지도 모른다.

통일후 정신적 상처를 입은 북한인민들이 파괴주의적 행동을 통해 인권탄압자들에 대한 보복적 테러공격을 감행하는 등 범죄집단화할 가능성도 있다. 전술한 바대로 우리의 통일목적은 「한민족복지공동체」형성에 있다. 따라서 통일후 정치적·경제적·정신적 동질성 회복의 실패와 그로 인한 혼란과 분열은 통일목적과는 상반된다.

결국 정치적·경제적 통합은 제도화를 통해 극복이 가능할 것이나 정신적 통합은 많은 시간과 비용을 필요로 할뿐만 아니라 일단 손상된 정신은 회복불능일 가능성도 있다. 따라서 통일을 위해서는 인권탄압으로 인해 육체적·정신적·정치적·경제적 고통을 받고 있는 북한인민들의 인권을 신장시켜야 하고 이를 통해 보다 유연한 정권의 탄생이 선결되어야 한다.

이러한 상황은 북한 인권개선을 위한 남한과 주변국가들의 의지에 따라서는 예상보다 빨리 반전될 수도 있을 것이다. 즉 상황은 다르지만 북한 인권개선을 위한 방안으로서 「헬싱키협정」과 유사한 협정이 동북아에서도 생성되면 이를 통해 북한 인권개선은 점진적이겠지만 가능할 것이다. 물론 현재 한반도를 위요한 동북아 정세는 남·북한을 제외하고는 냉전과 불력화가 청산되었고 남북관계가 지지부진함으로써 「헬싱키협정」체결 당시의 유럽정세와는 제 측면에서 다르다 할지라도 향후 북한 인권개선을 위해서는 유럽식 인권개선 방안을 적극 도입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第Ⅵ章 結 論

구소련 및 동구의 붕괴는 자유가 평등에 우선하는 가치라는 것을 증명해 주는 역사적 사건이라 할 수 있다. 역사적으로 인문·사회과학자들은 인간존엄성 실현의 기본가치로서 자유와 평등을 주장하여 왔으나 그들 가치의 우선순위에 대해서는 합의를 보지 못했던 것이 사실이다. 그러나 평등우선의 사회주의를 지배이념으로 채택한 사회주의 국가들의 연이은 붕괴는 가치 우선순위에 대한 ‘史實的’ 판결을 내렸다고 할 수 있다. 물론 자유와 평등은 동전의 양면으로서 불가분리 관계에 있기 때문에 자유에 대한 지나친 강조는 불평등의 심화를 낳고 이것 또한 정상적인 가치분포는 아닌 것이 사실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유에 의한 부의 축적이 전제되지 않는 평등은 가난의 평등, 강제적 평등을 결과한다는 사실이 동구 사회주의 국가들의 몰락으로 증명되었다.

이러한 논지에 입각하여 고찰해 본 북한의 인권실태는 구소련, 동구 등과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저급한 수준이었다. 김일성 정권 확립을 위한 수단으로 채택된 테러와 숙청은 그 방법에 있어서 비인간적이었고 대상선정면에 있어서도 부도덕하였다. 즉 숙청대상자들에 대한 처벌방법은 대부분 사고나 자살을 위장한 테러를 사용하였고 대상자도 소위 그들의 ‘빨치산 동료’ 뿐만 아니라 친·인척 까지 포함시킴으로써 비인간성을 노정하였다. 그 결과 구소련, 동구 등에서 보였던 최소한의 반체제 활동은 물론 그 징후조

차도 북한에서는 용납되지 않았다.

김일성·김정일이 인권통제를 실시한 결과는 다음과 같이 요약·정리될 수 있다.

첫째, 계층구성의 단일화이다. 북한은 한국전쟁을 기점으로 자유주의적·자본주의적 성분의 지식인들이 숙청 또는 망명(월남)을 통해 청산됨으로써 계급갈등 소지가 소멸되었다. 즉 '종파'의 청산은 김일성에 의한 '사회주의식 개발독재'에 대한 저항능력을 상실하게 하였다.

둘째, 강압기구의 발달이다. 북한정권은 유격대 정권이라 할 수 있을 정도로 김일성을 포함한 초기 간부들은 투쟁경력 소유자 일색이었다. 이들은 정책대신에 투쟁을 발전의 추동력으로 생각하였고 특히 발전노선에 대한 이견 소유자들에 대해서까지 전투적 사고 즉 '죽기 아니면 살기'식의 이분법을 적용·탄압하였다. 따라서 반대자 제거기법 또한 잔악하였고 당 조직지도부, 국가보위부, 사회안전부 등 탄압기구는 인원, 조직 양면에서 어떤 다른 기구보다도 중요시되고 강력한 권한을 보유하게 되었다.

셋째, 순응적 정치문화의 정착이다. 북한은 효성과 충성을 동일시하는 전통적 가부장제와 무조건 복종을 미덕으로 하는 일제의 천황제를 통한 지배자에 대한 복종의식이 존속되고 있었고 이것은 더구나 독특한 프롤레타리아 독재와 주체사상적 인간개조교육이 접목되어 순응이 미덕이라는 정치문화가 정착되었다.

넷째, 김일성·김정일 승계구조의 정착이다. 북한은 철저한 인권탄압을 통해 부자승계 체제에 대한 비판만큼은 어떤 죄보다 중형

위주로 차별함으로써 승계체제를 정착화시켰다.

다섯째, 정착화된 대외증오심이다. 김일성은 남한과 미국을 主敵으로 상정하고 전투, 해방, 투쟁 등 호전적 용어를 일상화하도록 만들어 김일성을 중심으로 한 북한체제 이외는 ‘악마’라는 허위의식을 각인시키고 ‘전인민의 자폐증 환자화’정책을 시도하였다. 따라서 인민들은 정부의 공식문건이나 성명 이외의 뉴스에 대해서는 심한 의심증을 보이고 정부성명 이외의 뉴스를 접했다는 사실 자체를 죄악시하고 은폐한다. 또한 그들의 가난과 인권제한의 원인이 미국을 비롯한 외세와 남한때문이라는 인식으로 인해 남한과 외국을 증오한다.

결국 이러한 특징들로 인해 북한 인권은 최악의 상태에 이르게 되었다. 즉 정치적 권리는 물론 경제적 권리 즉 의·식·주 권리조차도 보장받지 못하고 있다. 특히 정치적 권리는 전무한 상태로 체제유지에 필요한 집회 이외에는 집회·결사의 자유는 물론 김일성·김정일에 대한 불평조차 허용되지 않는 암흑상태이다. 세습정권유지를 위한 ‘兩金(김일성·김정일)’의 노력은 다수의 「특별독재대상구역」을 비롯한 각종 교도소를 양산하였다. 특별독재대상구역의 인권상황은 쥐, 지렁이, 뱀 등으로 영양상태를 유지해야할 정도로 열악하다.

북한에는 인구의 약 1%에 해당하는 20여만명의 ‘죄인’이 수용되어져 있는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뿐만 아니라 시베리아 벌목장의 인권유린 사건에서 보는 바대로 일반인들의 노동여건, 생활여건 등도 매우 열악한 것으로 보인다. ‘하루 두끼먹기운동’을 벌여야 할

정도의 식량부족, 의약품부족, 주택부족, 각종 생필품부족 등은 인간으로서 누려야 할 최소한의 존엄성마저도 유지할 수 없을 정도라는 것이 귀순자들의 증언이다.

그러나 문제는 인권통제에 의해 침묵하고 있는 인권 피억압자들이 언제까지 침묵하고 있을 것인가이다. 당·정·군에 걸친 소의 엘리트와 감시 및 통제에 의해 불이익을 당하고 있는 적대계층 중심의 인민들은 어떤 계기가 주어지면 반체제 운동은 아니라 할지라도 인권개선 운동을 전개할 가능성이 있다. 그렇다면 어떤 계기는 무엇인가? 그것은 내부적으로는 김일성·김정일의 사망과 외부적으로는 자유세계의 압력이다.

결론적으로 북한 인권이 현재와 같이 열악한 상태로 지속되는 한 북한체제의 변화는 물론 남북통일도 불가능할 것이다. 따라서 우리는 인도적·정치적·민족주의적 차원에서 북한내 인권운동이 활성화되도록 하여야 하는 바, 제반수단을 동원하여 북한정부에 대해 인권개선을 촉구, 인권 피억압자들의 인권이 신장되도록 함으로써 중국에는 이들이 북한내 민주정부 수립과 점진적 통일의 주체가 되도록 하여야 할 것이다.

〈參考文獻〉

1. 單行本

- 강철환·안혁. 「대왕의 제전 1」. 서울: 香實, 1993.
- . 「대왕의 제전 2」. 서울: 香實, 1993.
- 고태우. 「북한의 종교」. 서울: 민족문화사, 1989.
- 極東問題研究所. 「北韓全書(中)」. 서울: 極東問題研究所, 1974.
- 金甲喆·高性俊. 「主體思想과 北韓社會主義」. 서울: 文佑社, 1988.
- 金達中 外. 「불가리아·알바니아: 政治·經濟·社會·文化構造와 政策」. 서울: 法文社, 1991.
- . 「폴란드·동독: 政治·經濟·社會·文化構造와 政策」. 서울: 法文社, 1989.
- 金達中 編. 「헝가리·유고슬라비아: 政治·經濟·社會·文化構造와 政策」. 서울: 法文社, 1988.
- 金雲泰. 「日本帝國主義의 韓國統治」. 서울: 博英社, 1986.
- 김일성. 「세기와 더불어 1」. 평양: 조선로동당출판사, 1992.
- 金河龍. 「中國政治論」. 서울: 博英社, 1990.
- 金學俊·全寅永 共著. 「蘇聯 및 東歐共產主義」. 서울: 서울大學校 出版部, 1984.
- 김현희. 「이제 여자가 되고 싶어요」 제2부. 서울: 고려원, 1991.
- 金浩鎭. 「韓國政治體制論」. 서울: 博英社, 1990.

- 남북문제연구소. 「북한인권의 虛와 實」. 서울: 남북문제연구소, 연
도미상.
- 란코프. 「평양의 지붕밑」. 서울: 연합통신, 1991.
- 변진홍. 「평양에 부는 바람」. 서울: 사람과 사람, 1993.
- 北韓問題研究所. 「最近北韓實相」. 서울: 北韓問題研究所, 1993.10.
- 北韓研究所. 「北韓社會論」. 서울: 北韓研究所, 1977.
- . 「北韓總覽」. 서울: 北韓研究所, 1983.
- 북한연구소. 「북한형법의 실상」. 서울: 북한연구소, 1990.
- . 「북한의 식량사정」. 서울: 북한연구소, 1992.
- 사회과학출판사. 「위대한 주체사상총서 9: 령도체계」. 평양: 사회
과학출판사, 1985.
- . 「위대한 주체사상총서 10: 령도예술」. 평양: 사회
과학출판사, 1985.
- 徐載鎭·金台鎰. 「北韓住民의 人性研究」. 서울: 民族統一研究院,
1992.
- 宋澤龜·趙範淳 共著. 「現代 蘇聯政治論」. 서울: 螢雪出版社, 1988.
- 申正鉉·李命植 共編. 「現代 共產體制的 比較分析」. 서울: 日新社,
1987.
- 아시아감시위원회·미네소타변호사 인권위원회. 송철복 외역. 「북
한의 인권」. 서울: 고려원, 1990.
- 安啓春 外. 「東歐諸國의 社會와 文化」. 서울: 法文社, 1988.
- 安澤源. 「新蘇聯政治論」. 서울: 博英社, 1987.
- 알렉산더 제빈. 엄충섭 역. 「평양 서울 그리고 모스크바」. 서울: 동

- 아일보사, 1991.
- 梁性喆. 「北韓政治論」. 서울: 博英社, 1991.
- . 「분단의 정치」. 서울: 한울, 1987.
- 梁好民 外. 「共產主義批判」. 서울: 極東問題研究所, 1981.
- . 「북한사회의 재인식 1」. 서울: 한울, 1987.
- 尹德熙 外. 「체코·루마니아: 政治·經濟·社會·文化構造와 政策」. 서울: 法文社, 1990.
- 이동희 역. 「현대정치이념」. 서울: 法文社, 1980.
- 이문웅. 「歸順者の 證言을 통해 본 北韓體制 變化實態 研究」. 서울: 國土統一院, 1989.
- 李常民. 「蘇聯官僚政治論」. 서울: 法文社, 1986.
- 李相禹 外. 「북한40년」. 서울: 乙酉文化社, 1988.
- 李容弼. 「共產主義 理論 批判」. 서울: 大旺社, 1980.
- 李佑泓. 「가난의 共和國」. 서울: 統一日報社, 1990.
- 林隱. 「金日成正傳」. 서울: 沃村文化社, 1989.
- 와다 하루끼. 이종석 역. 「김일성과 만주항일전쟁」. 서울: 창작과 비평사, 1992.
- 자유평론사 편집부. 「동구권국가의 변혁과 갈등」. 서울: 自由評論社, 1989.
- 전인영 편. 「북한의 정치」. 서울: 을유문화사, 1990.
- 全賢俊·安仁海·李宇榮. 「北韓의 權力엘리트 研究」. 서울: 民族統一研究院, 1992.
- 鄭銀淑. 「多者安保 및 協力の 한 事例로서 CSCE: 亞太地域 多者安

- 保協力 構想에 즈음하여」世宗分析 93-05. 서울: 世宗研究所, 1993.
- 「정치사전」. 평양: 사회과학출판사, 1973.
- 「정치용어사전」. 평양: 사회과학출판사, 1970.
- 趙政男. 「蘇聯反體制論」. 서울: 大旺社, 1983.
- 조선중앙통신사 편, 「조선중앙년감 1985」. 평양, 조선로동당출판사, 1985.
- 중앙일보특별취재반.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상)」. 서울: 중앙일보사, 1992.
- 陳性桂. 「金正日」. 서울: 同和研究所, 1990.
- 최은희·신상옥. 「조국은 저하늘 저멀리(상)」. C.A.: Pacific Artist Cooperation, 1988.
- . 「조국은 저하늘 저멀리(하)」. C.A.: Pacific Artist Cooperation, 1988.
- 최종고. 「북한법」. 서울: 博英社, 1993.
- 칼 맑스. 김태경 옮김. 「경제학-철학 수고」. 서울: 이론과 실천, 1987.
- 통일원. 「92 북한개요」. 서울: 통일원, 1992.
- . 「김정일우상화 사례집」. 서울: 통일원, 1992.
- 평화문제연구소. 「북한의 인권백서」. 서울: 평화문제연구소, 1991.
- 한상범. 「기존적 인권」. 서울: 정음사, 1985.
- 韓相範. 「人權」. 서울: 教育科學社, 1991.
- 한스 마레츠키 저. 정경섭 역. 「兵營國家 北韓」. 서울: 동아일보사,

1991.

한중모. 「주체의 인간학」. 평양: 사회과학출판사, 1987.

許東榮. 「金日成評傳(續)」. 서울:北韓研究所, 1988.

현원석. 「주체의 인간론」. 東京: 구월서방, 1992.

Abel, Elie. *The Shattered Bloc*. 이근달 역. 「동구의 붕괴」. 서울: 국제언론문화사, 1991.

Chirkin, V. Yudin, Yu. Zhidkov, O. *Fundamentals of the Socialist Theory of the State and Law*. 송주명 역. 「맑스주의 국가와 법 이론」. 서울: 새날, 1990.

Collins, Hugh. *Marxism and Law*. London: Oxford University Press, 1982. 홍준형 역. 「마르크스주의와 법」. 서울: 한울, 1990.

Lenin, V. I. *State and Revolution*. 김영철 역. 「국가와 혁명」. 서울: 논장, 1988.

Sargent, Lyman T. 鄭然植 譯. 「現代 政治이데올로기」. 서울: 以文出版社, 1985.

White, Stephen. Gardner, John. Schopflin, George. *Communist Political Systems: An Introduction*. New York: St. Martin's Press, 1987. 서규선·박재주 역. 「공산주의 정치체제」. 서울: 인간사랑, 1989.

Baradat, Leon P. *Political Ideologies*. N.J.: Prentice Hall, 1984.

Buergenthal, Thomas, ed. *Human Rights, International Law and the Helsinki Accord*. New York: Universe Books, 1977.

Foster-Carter, Aidan. *Korea's Coming Reunification*. London: The

- Economist Intelligence Unit, 1992.
- Lucas, Michael R. *The Conference on Security and Cooperation in Europe and the Post-Cold War Era*. Hamburg: Hamburg University, 1990.
- Mastny, Vojtech. *Helsinki, Human Rights and European Security*. Duke: Duke University Press, 1986.
- Rauch, George Von. *A History of Soviet Russia*. New York: Praeger Publishers, 1972.
- Staar, Richard F. *Communist Regimes in Eastern Europe*, 3rd ed. Stanford: Hoover Institution Press, 1977.
- Stokes, Gale, ed. *From Stalinism to Pluralism*. Oxford: Oxford University Press, 1991.
- Suh, Dae-Sook. *Kim Il Sung: The North Korean Leader*. New York: Columbia University Press, 1988.
- Vincent, R. J. *Human Rights and International Relations*. London: Cambridge University Press, 1986.
- Mark, Max. *Modern Ideologies*. New York: St. Martin's Press, 1973.

2. 論 文

- 金永周. “言論政策과 言論構造.” 고현욱 외. 「북한사회의 구조와 변화」. 서울: 경남대학교 극동문제연구소, 1990.
- 김일성. “경공업부문에서 사상혁명, 기술혁명, 문화혁명을 힘있게

- 별리기 위하여,” 「김일성 저작집 28」. 평양: 조선로동당출판사, 1984.
- . “근로대중의 통일적당의 창건을 위하여.” 「김일성 저작집 2」. 평양: 조선로동당출판사, 1979.
- . “당 조직사업과 사상사업을 개선 강화할데 대하여.” 「김일성 저작집 16」. 평양: 조선로동당출판사, 1982.
- . “당사업방법에 대하여.” 「김일성 저작집 13」. 평양: 조선로동당출판사, 1981.
- . “당사업을 더욱 강화할데 대하여.” 「김일성 저작집 29」. 평양: 조선로동당출판사, 1985.
- . “당중앙위원회사업에 대하여.” 「김일성 저작집 4」. 평양, 조선로동당출판사, 1979.
- . “대중지도방법을 개선하며 올해 인민경제계획수행을 성과적으로 보장할데 대하여.” 「김일성 저작집 3」. 평양: 조선로동당출판사, 1979.
- . “사상사업에서 교조주의와 형식주의를 퇴치하고 주체를 확립할데 대하여.” 「김일성 저작집 9」. 평양: 조선로동당출판사, 1980.
- . “사회주의교육에 관한 테제.” 「김일성 저작집 32」. 평양: 조선로동당출판사, 1986.
- . “새조선건설과 공산주의자들의 당면과업.” 「김일성 저작집 1」. 평양: 조선로동당출판사, 1979.

- . “짧은 곧 사회주의이다.” 「김일성 저작집 10」. 평양: 조선로동당출판사, 1980.
- . “우리 나라에서의 맑스-레닌주의 당건설과 당의 당면과업에 대하여.” 「김일성 저작집 1」. 평양: 조선로동당출판사, 1979.
- . “우리 당 사법정책을 관철하기 위하여.” 「김일성 저작집 12」. 평양: 조선로동당출판사, 1981.
- . “인민보건법을 철저히 관철하자.” 「김일성 저작집 35」. 평양: 조선로동당출판사, 1987.
- . “전반적10년제고중의무교육과 1년제학교전의무교육을 실시할데 대하여.” 조선중앙통신사 편. 「조선중앙년감 1974」. 평양: 조선로동당출판사, 1974.
- . “조국통일 위업을 실현하기 위하여 혁명력량을 백방으로 강화하자.” 「김일성 저작집 18」. 평양: 조선로동당출판사, 1982.
- . “조선로동당 제3차대회에서 한 중앙위원회사업총화보고.” 「김일성 저작집 10」. 평양: 조선로동당출판사, 1980.
- . “조선로동당 제4차대회에서 한 중앙위원회 사업총화 보고.” 「김일성 저작집 15」. 평양: 조선로동당출판사, 1981.
- . “조선로동당 제5차대회에서 한 중앙위원회사업총화보고.” 「김일성 저작집 25」. 평양: 조선로동당출판사, 1983.
- .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제5기 제5차전원회의에서 한 연설.” 「김일성 저작집 27」. 평양: 조선로동당출판사, 1984.

- . “조선인민의 민족적 명절 8.15해방 15돐경축대회에서 한 보고.” 「김일성 저작집 14」. 평양: 조선로동당출판사, 1981.
- . “종파주의를 청산하고 혁명대오의 통일단결을 강화하자.” 「김일성 저작집 1」. 평양: 조선로동당출판사, 1979.
- . “토지개혁의 총결과 금후과업.” 「김일성 저작집 2」. 평양: 조선로동당출판사, 1979.
- . “해방된 조국에서의 당, 국가 및 무력건설에 대하여.” 「김일성 저작집 1」. 평양: 조선로동당출판사, 1979.
- . “현시기 남조선청년운동의 과업.” 「김일성 저작집 1」. 평양: 조선로동당출판사, 1979.
- . “인민대중중심의 우리 식 사회주의는 필승불패이다.” 「친애하는 지도자 김정일동지의 문헌집」. 평양: 조선로동당출판사, 1992.
- . “주체사상교양에서 제기되는 몇가지 문제에 대하여.” 조선중앙통신사 편. 「조선중앙년감 1987」. 평양: 조선중앙통신사, 1987.
- 근로자사. “비판과 자기비판은 일군들을 혁명화하는 위력한 무기.” 「근로자」. (1974.4).
- 都興烈. “朝鮮勞動黨의 充員과 政治社會化.” 大陸研究所. 「北韓研究」, 제2권 제3호 (1991 가을).
- 박승덕. “주체사상의 종교관.” 북미주기독자회 1989~1992. 연례대회 자료집. 「기독교와 주체사상」. 서울: 신앙과 지성사, 1993.

- 朴漢植. “김일성시대 이후의 김일성 카리스마.” 朴漢植 編. 「北韓의 實相과 展望」. 서울: 동화연구소, 1991.
- 申敬完. “金正日體制의 強點과 弱點 그리고 人民항거.” 「月刊 中央」(1991.7).
- 申命淳. “소련에서의 정치적 저항분석.” 漢陽大學校 中蘇問題研究所. 「中蘇研究」, 제9권 3호 (1985 가을).
- 梁承斗. “東歐諸國의 統治組織과 基本權 條項에 관한 考察.” 延世大學校 東西問題研究院. 「共產國家에 있어서 政策 및 政策過程의 比較研究」, 제2집 (1979).
- 李長熙. “Helsinki 「人權協定」이 分斷國家에 주는 意味.” 國土統一院. 「統一問題研究」, 제1권 3호 (1989 가을).
- 張明奉. “共產主義 憲法의 概觀.” 漢陽大學校 中蘇問題研究所. 「中蘇研究」, 제9권 제3호 (1985 가을).
- 全賢俊. “朝鮮勞動黨의 外廓團體.” 大陸研究所. 「北韓研究」, 제2권 3호 (1991 가을).
- 崔禎鎬. “체코슬로바키아의 政治와 文化.” 尹德熙 外. 「체코·루마니아: 政治·經濟·社會·文化構造와 政策」. 서울: 法文社, 1990.
- 河龍出. “소련 國家論의 歷史的 展開.” 韓國政治學會 編. 「現代韓國政治와 國家」. 서울: 法文社, 1987.
- Baehr, Peter R. “Human Rights: A Change in Performance.” Hill, Ronald J. and Zielonka, Jan ed. *Restructuring Eastern Europe*. Vermont: Edward Elgar, 1990.

Plamenatz, John. "History as the realization of freedom." Pelczynski, I.
A. ed. *Hegel's Political Philosophy*. London: Cambridge
University press, 1971.

3. 其 他

「內外通信」.

「東亞日報」.

「世界日報」.

「朝鮮日報」

「로동신문」.

「서울신문」.

「조선중앙방송」

「평양방송」

「한겨레신문」.

International Herald Tribune.

◎ 發刊資料目錄 案內 ◎

〈세미나시리즈〉

- 91-01 轉換期的 東北亞 秩序와 南北韓 關係
- 91-02 岐路에 선 北韓의 經濟社會: 實相과 展望
- 91-03 北韓體制的 變化: 現況과 展望
- 92-01 南北和解·協力時代, 우리의 座標와 課題
- 92-02 북한의 權力構造와 金일성 이후 政策方向 전망
- 92-03 北韓의 核問題와 南北韓 關係
- 92-04 韓半島 周邊4國의 對北韓政策
- 92-05 轉換期的 南北韓關係 : 現況과 展望
- 93-01 統一理念으로서의 民族主義
- 93-02 北韓 核問題: 展望과 課題
- 93-03 中國의 改革·開放

〈研究報告書〉

- 91-01 第2次大戰後 新生國家의 聯邦制度 運營事例
- 91-02 北韓聯邦制案의 分析 및 評價
- 91-03 美國聯邦制 研究: 歷史的 發展過程을 中心으로

- 91-08 韓半島 非核地帶化 主張에 대한 對應方向
- 91-09 東西獨 事例를 통해 본 南北韓關係 改善方案: 정상회담
과 기본조약체결 사례 중심
- 91-10 國際的 平和保障 事例研究
- 91-11 在野統一案 研究
- 91-12 蘇聯의 東北亞政策 變化와 東北亞秩序 改編: 1990年代 東
北亞秩序 豫測(Ⅰ)
- 91-13 北韓體制的 實相과 變化展望
- 91-14 「한민족공동체」具體化方案 研究: 社會·文化·經濟 交
流·協力 中心
- 92-01 統一獨逸의 分野別 實態 研究
- 92-02 中國의 改革·開放 現況과 展望: 北韓의 中國式 改革·開
放모델 受容 可能性과 關聯
- 92-03 美國의 對韓半島政策: 韓國安保와 南北韓 統一問題를 중
심으로
- 92-04 日本의 國際的 役割增大와 東北亞秩序: 1990年代 東北亞
秩序 豫測(Ⅱ)
- 92-05 1992年度 統一問題 國民輿論調查 結果
- 92-06 軍備統制 檢證 研究: 理論 및 歷史와 事例를 中心으로
- 92-07 北韓住民의 人性研究
- 92-08 國際社會에서의 南北韓間 協力方案 研究
- 92-09 日本의 對韓半島政策

- 92-10 러시아聯邦의 對韓半島政策
- 92-11 東北亞 經濟協力の 發展方向
- 92-12 統一獨逸의 財政運用 實態研究: 統一關聯 財政政策 中心
- 92-13 南北韓 國力趨勢 比較研究
- 92-14 南北韓 社會·文化共同體 形成方案: 社會·文化的 同質性
增大方案 中心
- 92-15 北韓의 權力엘리트 研究
- 92-16 東北亞 新國際秩序下에서의 韓半島 統一基盤 造成方案
- 92-17 南北韓 經濟共同體 形成方案
- 93-01 1993年度 統一問題 國民輿論調查 結果
- 93-02 金日成著作 解題
- 93-03 日本의 對北韓政策
- 93-04 中國의 改革·開放 加速化와 東北亞秩序: 1990年代 東北
亞秩序 豫測(IV)
- 93-05 中·臺灣關係의 現況과 發展方向
- 93-06 美國 클린턴 行政府의 東北亞政策과 東北亞秩序 變化:
1990年代 東北亞秩序 豫測(III)
- 93-07 東北亞 地域에서의 多者間 安保協力體 形成展望과 對應策
- 93-08 獨逸統一後 東獨地域에서의 私有化政策 研究
- 93-09 對北 投資保護 및 紛爭解決方案 研究
- 93-10 脫冷戰期 北韓의 對中國·러시아 關係
- 93-11 北韓 軍事政策의 展開樣相과 核政策 展望

93-12 北韓의 人權實態 研究

〈統一情勢分析〉

91-01 韓·蘇, 日·蘇 頂上會談 結果 分析: 韓半島 周邊情勢 및
南北韓關係에 미칠 영향을 중심으로

91-02 고르바초프 權力的 現況과 展望

91-03 李鵬 中國總理의 訪北 結果 分析: 韓半島 周邊情勢 및 南
北韓關係에 미칠 영향을 중심으로

91-04 第85次 國際議會聯盟(IPU) 平壤總會 綜合分析

91-05 中·蘇 頂上會談 結果 分析

91-06 北·日, 北·美關係 變化展望과 對策

91-07 北韓의 유엔加入宣言의 影響과 政策變化展望

91-08 美國의 東北亞 安保政策 基調와 最近動向

91-09 유고슬라비아의 民族葛藤과 聯邦解體 危機

91-10 中國의 對韓政策 展望

91-11 엘친의 러시아大統領 當選이 蘇聯國內情勢에 미칠 影響
分析

91-12 美·蘇의 對 東北亞政策과 東北亞 軍事秩序 再編 可能性

91-13 美·蘇 頂上會談의 結果 分析

91-14 戰術核 관련 부시 美大統領 宣言이 東北亞 및 韓半島安
保에 미치는 影響

- 92-01 부시 美國大統領의 아시아4個國 巡訪結果 分析: 南·北韓
關係와 관련하여
- 92-02 豆滿江地域開發計劃 發展方向
- 92-03 中國의 改革·開放 深化가 北韓에 미치는 影響
- 92-04 러시아聯邦의 改革과 韓·러關係 展望
- 92-05 東北亞情勢와 統一環境: 1992年 上半期
- 92-06 북방정책 이후 동북아정세와 한반도 통일환경
- 92-07 豆滿江地域開發計劃의 現況과 展望: 開發代案 및 法制度
中心
- 93-01 最近 러시아聯邦의 政局推移: 國民投票 結果를 中心으로
- 93-02 北韓 核問題의 展開過程 分析 및 展望
- 93-03 北韓의 對南動向 分析(1993.1~6)
- 93-04 「조국통일을 위한 전민족대단결 10대강령」과 北韓의 對南
政策
- 93-05 東北亞 多者間 安保協力體 構成展望과 南北韓關係
- 93-06 北韓의 對南動向 分析(1993.7~9)

〈世界主要事件日誌〉

- 91-01 世界主要事件日誌(1991. 4. 1 ~ 1991. 6. 30)
- 91-02 世界主要事件日誌(1991. 7. 1 ~ 1991. 9. 30)

- 91-03 世界主要事件日誌(1991. 10. 1 ~ 1991. 12. 31)
- 92-01 世界主要事件日誌(1992. 1. 1 ~ 1992. 3. 31)
- 92-02 世界主要事件日誌(1992. 4. 1 ~ 1992. 6. 30)
- 92-03 世界主要事件日誌(1992. 7. 1 ~ 1992. 9. 30)
- 92-04 世界主要事件日誌(1992. 10. 1 ~ 1992. 12. 31)
- 93-01 世界主要事件日誌(1993. 1. 1 ~ 1993. 3. 31)
- 93-02 世界主要事件日誌(1993. 4. 1 ~ 1993. 6. 30)

〈年例情勢報告書〉

- 91 統一環境斗 南北韓 關係 : 1991~1992
- 92 統一環境斗 南北韓 關係 : 1992~1993

〈論 叢〉

- 統一研究論叢 創刊號(1992. 6)
- 統一研究論叢 第1卷 2號(1992. 12)
- 統一研究論叢 第2卷 1號(1993. 7)

THE KOREAN JOURNAL OF NATIONAL UNIFICATION
vol. 1(1992)

THE KOREAN JOURNAL OF NATIONAL UNIFICATION

vol. 2(1993)

〈資 料〉

92-01 統一 및北韓關聯 研究文獻目錄(國文篇)

92-02 統一 및北韓關聯 研究文獻目錄(外國語篇)

93-01 藏書目錄：單行本·研究報告書

93-02 藏書目錄：特殊資料

北韓의 人權實態 研究

研究報告書 93-12

發行處 民族統一研究院

編輯人 民族統一研究院 北韓研究室

서울 중구 장충동 2가 산 5-19

전화 : 237-9288, FAX : 232-5341

印刷處 오름시스템(주) 전화 : 273-7011

印刷日 1993년 10월 일

發行日 1993년 10월 일
